

---

#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

2014. 11.

관 세 청

# 목 차

## 제1장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과 그 의의

1.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 배경 및 경과	4
2.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특징	10
3.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의 의의	27
4.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조항과 그 의미	31
5. 협정타결의 기대효과	36

## 제II장 무역원활화협정 조문별 해설

1. 무역원활화협정에 대한 결정문	40
2. 무역원활화협정 전문	42 42
3. 제1절(SECTION I )	44
제1조 : 공표 및 정보의 이용가능성	44
제2조 : 의견제시 기회, 시행전 정보 및 협의	62
제3조 : 사전심사	72
제4조 :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	82
제5조 :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	89
제6조 : 수출입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규율	98
제7조 : 상품의 반출 및 통관	110
제8조 : 국경기관 협력	151
제9조 :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154
제10조 :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156
제11조 : 통과와 자유	188
제12조 : 세관협력	199
4. 제2절(SECTION II )	219
제13조 내지 제22조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규정	219
5. 제 3절(SECTION III)	256
제23조 : 기관협정	256
제24 조 : 최종규정	260
참고문헌	266

## 제1장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과 그 의의

## 제1장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과 그 의의

### 1.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 배경 및 경과

○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통상규율을 구축하였고, 농산품의 시장개방을 확대하였으며, 국제무역을 왜곡하고 있었던 다자간섬유협정(MFA : Multi-Fiber Arrangement)을 폐기하고 더욱 강화된 국제통상규율을 집행하기 위한 WTO를 설립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특히 농산품 수출보조금과 농산품 세이프가드 문제, 그리고 서비스 산업별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문제로 UR이 지연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당시까지 합의를 본 중요한 결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UR을 끝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차기 라운드(뉴라운드)에서 협상을 재개하자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문제들은 기설정과제(BIA: Built-in-Agenda)로 분류되었고, UR협정들이 발효된 5년 후에 BI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UR협정의 발효 5년 후인 2000년에 뉴라운드를 시작하자고 합의한 셈이었다.

○ 그러나 BIA에 포함된 문제들은 회원국들간 가장 논쟁이 많았던 문제들이었으며,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었던 분야들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호주 등 일부 회원국들은 뉴라운드에서는 이 BIA 문제들에만 집중하고 다른 분야들의 포함은 최소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EU, 일본과 우리나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뉴라운드에서 BIA 이슈들만 포함되는 경우 국내적으로 정치적 반대가 많은 주제들만 논의하게 되므로 협상에서 본격적인 give-and-take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지연될 뿐만이 아니라 큰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아 BIA외에 다른 분야들을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따라서 WTO회원국들은 뉴라운드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작업을 시작하였고, 1996년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4개의 새로운 이슈를 물품교역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4개 이슈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과 「무역절차의 간소화」 였는데, 「무역절차의 간소화」 이슈는 기존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연구와 연결되어 WTO내에서도 이 주제를 「무역원활화」 로 호칭하게 되었다. 제1차 각료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이후

이 4개의 이슈는 흔히 「싱가포르 이슈」라 불리기도 하였다.

○ 원래 무역원활화에 대한 민간의 연구는 1996년 이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졌다. GATT협정과 그 협정에 의해 실행된 8차례의 무역라운드로 세계 관세장벽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낮아졌고, 그에 따라 1990년대 말에는 관세로 인한 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이 다수 나타났다. UNCTAD에 의하면 2001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산업별 수입가중평균관세율은 3.1%, 개발도상국의 산업별 수입가중평균관세율은 11.0%에 불과한 반면, 국제교역에 따르는 각종 거래비용의 규모는 국제교역 총금액의 약 2-15%로 추정되고 있었다<sup>1)</sup>.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차별적인 무역관련 거래비용도 검토하고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다.

○ 기존 무역원활화 연구는 통관절차와 서류, 투명성 외에도 라이선스 절차, 관세평가, 기술적 기준과 표준(TBT), 보건 및 안전 기준(SPS), 등이 포함되고, 통관절차의 전산화와 전산망을 통한 정보의 전달도 무역원활화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의 범위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품무역위원회 관할 하에 협상을 할 수 있고, 여타 WTO협정과 혼선되지 않을 분야들에 협상을 집중하기로 하여 GATT 협정의 제V조(통과화물), 제VIII조(수출입과 관련된 수수료와 절차)와 제X조(무역규제의 출판과 운영)로 협상내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무역원활화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토의가 시작되었고, 여러 국가들이 자국경험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자기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들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당시에 통관절차의 전산화 및 자동화가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뉴라운드를 시작하기 위해 WTO 회원국들은 1999년 12월 미국 시애틀市에서 개최될 제3차 각료회의에서 BIA 외에 뉴라운드에 포함될 구체적인 이슈들을 논의하고 확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애틀에서 회의가 개최되자 미국과 EU간 농업 보조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들은 UR로 인한 부담은 크지만 이득은 적다고 주장하며 더욱 많은 개발도상국 혜택을 요구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마찰이 심하게 일어났다. 더욱기 호스트 국가인 미국이 무역과 노동기준 및 무역과 환경 등 두 주제에 대한 논의를 잘못 다루고, 회의장 밖에서는 뉴라운드 개최를 반대하는 민간 데모가 시애틀

---

1) 양준석(2005) p.54

市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시애틀 각료회의는 뉴라운드에 포함될 이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BIA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지만 별 진전은 없었고,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공식적인 논의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 때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는 세계관세기구(WCO)뿐만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은행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 국제기관들은 무역원활화가 바람직하고, 무역원활화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수의 리포트를 발표하고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는 등 무역원활화를 뉴라운드에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반면 개발도상국들도 자국의 행정적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였지만, 자신들에게 무리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을지, 그리고 자국 국민의 후생을 위한 자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역원활화를 위해서 많은 자국 자금의 투입이 요구되지 않을지에 대한 염려를 보였다. 따라서 비록 공식적인 협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무역원활화가 뉴라운드의 공식적 협상분야로 포함될 경우 협정이 요구하는 의무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암묵적으로 확정되었다.

○ 2001년 9월 미국에서 9.11테러사건이 일어난 후 11월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4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9.11사건 이후 첫째의 주요 국제회의였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들은 세계가 하나라는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일부 이슈들에 있어서는 선진국간 큰 견해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싱가포르 이슈가 협상분야로 포함되는 경우, 시장개방에 대한 자국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염려하여 싱가포르 이슈가 뉴라운드에 포함되기를 반대하였고, 도하 각료선언문에서는 4개의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 5차 각료회의 이후 명시적 합의(explicit consensus)하에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이 도하라운드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2년 후 결정하기로 합의한 셈이었다<sup>2)</sup>. 도하각료회의 이전부터 무역원활화 협상의 내용은 GATT협정 제V조, 제VIII조와 제X조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각료선언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고, 개발도상국들의 상황과 필요사항을 고려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도 각료선언문에서 확인되

2) 각료선언문의 문구에 대해서 협상이 제5차 각료회의 이후 의무적으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시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 및 논란이 있었지만, 대체로 각료회의에서 시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회원국들 간에 해석되었다.

었다.

○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당시 다수의 국가경험 리포트를 제출하고, 단독 또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 이슈들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야심찬 제안들을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는데, 여기에는 전세계 서류의 디자인을 통일시키자던지, 통관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소/재심 절차를 강화하고 여기에 확실한 시한을 두도록 하자던지 등 일부 회원국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되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계속 무역원활화 협정을 통하여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무리한 조건들을 부여할지 모른다는 점을 염려하고 무역원활화 협정과 이에 대한 지원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였다. 이 때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포함되기를 추진한 이슈들은 위험관리, 평균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와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우)이지만, 또한 단일 질의처(single enquiry point / single national focal point)와 전자서류 및 통관의 자유화에도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 2003년 8월 멕시코 칸쿤에서 5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지만, 각료들은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각료들에게 제출되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선언문과 선언문 부록의 초안<sup>3)</sup>을 보면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4개의 싱가포르 이슈 모두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선언문이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 시작여부는 다시 불투명하게 되었다. 도하라운드에 대한 추진력을 살리기 위해서 WTO 사무국과 선진국들은 다음 1년간 다양한 설득작업을 시도하고, 당시 WTO 사무국장이었던 스파차이를 중심으로 소수의 국가들끼리의 만남과 견해교류 및 설득작업이 다수 개최되었는데, 그 결과로 2004년 8월에 향후 도하라운드 협상의 틀이 마련되고, 작업계획결정을 WTO 문서 WT/L/549으로 발행하게 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4개의 싱가포르 이슈 중 오직 무역원활화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문서의 부록 D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sup>4)</sup>.

- 협상의 목적은 GATT 제V조, 제VIII조, X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데에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와 통관절차 준수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3) [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03\\_e/draft\\_decl\\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03_e/draft_decl_e.htm)

4) WTO(2004) Annex D, 번역문은 양준석(2005) pp.55-56에서 인용

국제협력도 다루도록 한다. (부록D 1조)

- 협상의 최종결과물에 대한 선입견은 없다<sup>5)</sup>. (부록D 각주 5)
-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특별대우는 전통적인 집행유예기간 부여의 수준을 넘어야 한다. 각 회원국의 집행여력에 따라 유예기간의 길이를 결정해야 하며, 각 회원국의 여력을 능가하는 인프라 투자를 의무화할 수 없다. (부록D 2조)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여력에 적합한 항목들만 의무화하도록 하며 (부록D 3조), 개발도상국들과 최빈개발도상국들이 필요한 항목, 우선순위의 파악, 그리고 제안된 조치들의 비용도 협상의 일부로 고려하도록 한다. (부록D 4조)
-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부록D 5조), 협상결과에 따른 개별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일부 회원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경우, 선진국들은 투자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하며,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집행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의 지원은 영구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 (부록D 6조) 또한 회원국들은 협상결과물의 집행능력과 효율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 협상 중 WCO나 세계은행 등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록D 8조), WCO 등 여타 국제기구들의 결과물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부록D 9조).
- 도하각료선언문의 45-51문단이 협상에 적용된다(작업계획 본문 1(g)조). 따라서 무역원활화는 다른 도하라운드 과제와 함께 통합과제(Single Undertaking)의 일부로 간주된다.

○ 이때 자료를 보면 무역원활화 협정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의무만 늘고 선진국들의 지원 약속은 협정 발효 이후 사라질 수 있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염려를

---

5)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의 결과로 구체적인 협정문을 작성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하여 Annex D는 개발도상국 인프라, 협정의 이행과 집행이나 항구시설을 포함한 통관절차 원활화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없으면 개발도상국들은 협상결과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부록D의 제3조와 제6조에 포함되었다. 이는 그 당시 개발도상국들의 의심과 염려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무역원활화 협정에 포함될 지원의무가 재정적으로 무리한 수준에 도달할 것을 염려하여 부록D에서 지원을 언급하지만 금융적이나 재정적 지원이라는 표현을 제거하여 아직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선진국과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개발도상국간 견해차가 심하였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sup>6)</sup>. 작업계획과 부록D는 2005년 홍콩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각료들의 승인을 받았다.

○ 2004년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회원국들은 공식적 제안서를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협상그룹이 공식적으로 구성되면서 제안서를 접수할 때 말레이시아의 누어(Noor)위원장은 비교적 합의가 쉬울 것으로 생각된 GATT 제X조에 관한 제안서를 먼저 다루고,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GATT 제VIII조를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V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하였다. 투명성관련 조항이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이러한 협상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다<sup>7)</sup>. 회원국들은 의외로 적극적으로 제안을 제출하였는데, 협상 첫 12개월 중 100개 이상의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1년 이상동안 각종 제안서를 접수되었다<sup>8)</sup>. 이 때 협상은 상당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룹 형태의 불투명한, 소수 국가주도의 협상은 대체로 회피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 2005년 홍콩 각료회의 이후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협상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지만, 도하라운드의 여타 분야에서는 각종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회원국들에게 협상입장을 재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협상을 동결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협상동결은 무역원활화에도 적용되었으므로 협상이 1년 반 동안 멈추는 경우도 있었다. 무역원활화 협상 그룹은 2009년 12월 첫 협상용 종합협정안(Draft Consolidated Negotiating Text)을 회원국들에게 배포하였다.

○ 종합협정안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들을 협정문 형태

6) Neufeld (2014) p.8-9

7) Neufeld (2014) p.9

8) Neufeld (2014) p.9

로 정리한 문서이다. 지지가 없었던 일부 이슈들은 협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회원국들간 합의가 없고 논쟁이 많은 부분들, 그리고 회원국들마다 제안이 틀린 부분들은 가로(bracket)안에 포함되었다. Neufeld(2014 p.10)에 의하면 첫 협정안은 1,700개의 가로가 있었고, 협상이 진행되면서 가로의 숫자는 2,200개까지 증가하였다. 이 때 위원장이 통관절차 전문가들에게 협정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고, 전문적 검토를 거치면서 가로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감소되면서 협정이 협정다운 형태를 취하게 되고, 회원국들의 지지도도 강화되었다.

○ 2013년 중 마지막 문제들(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지원 문제와 제VIII조에 관련된 일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어졌고, 일부 분야에서는 양자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경우도 있었다<sup>9)</sup>. 9월에는 이견이 있는 문항들은 거의 없어져 12월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막바지 협상을 통해 남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무역원활화 협정을 발리 패키지의 일부로 공포할 수 있었다. 2014년 5월 현재 WTO는 무역원활화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무역원활화협정을 위주로 도하라운드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

## 2.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특징

### 1) 무역원활화와 개정교토협약

○ 무역원활화에 대한 통일되고 정확한 정의는 없다. 기관마다, 그리고 자기의 관심에 따라 다소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루고 있는 문제들의 범위도 약간씩 틀리다. Staples(2002)에서는 무역원활화를 「국제무역의 기본인프라, 즉 통상과 무역관련 정책의 집행, 규제와 행정에 관련된 모든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sup>10)</sup> 이 정의에 따르면 무역원활화의 목적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교역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제거하여 관계당사자들의 상업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다.

---

9) Neufeld (2014) p.10

10) Staples, Brian Rankin, "Trade Facilitation: Improving the Invisible Infrastructure," in Bernard Hoekman, Aaditya Matto, and Philip English eds. (2002) *Development, Trade and the WTO: A Handbook*,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2, p.140.

○ 국제기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무역원활화의 개념

구 분	사용하는 개념
WTO	통관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에 대한 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조화
APEC	세관행정, 표준과 기술규정, 기업인의 이동, 전자상거래 등 무역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및 행정상 장애의 간소화
UNCTAD	법령과 규정의 조화, 절차와 문서의 단순화, 운송·정보·통신체제 등 무역인프라의 표준화를 통한 무역효율성 증대
OECD	국제무역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수집, 제출, 전달 및 처리와 관련된 활동, 관례, 형식의 단순화와 조화
종합적 개념	무역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및 인프라를 제거 또는 간소화, 조화, 자동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의 감소와 효율성 증대를 통해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및 활동

자료 : 이명헌 외 “WTO 무역원활화 규범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2002.12.) p.3 참조

○ <표 1>에서와 같이 WTO에서 사용하는 무역원활화의 정의는 「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이며, 여기서 「국제무역절차」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물품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발표, 전달, 또는 처리하는 활동, 관례와 절차」로 정의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는 GATT 제X조, 제VIII조와 제V조로만 제한된다. 무역원활화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다루기 쉽게 제한하고, 물품무역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주제로만 제한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 여기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먼저 GATT협정 제X조, 제VIII조와 제V조의 주요 내용과 의무를 살펴본 후, 무역원활화협정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항별 자세한 분석은 제2부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협정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제X조, 제VIII조와 제V조별로 협정의 원칙,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협정의 내용과 WCO 개정교토협약의 관계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1)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eol/e/wto02/wto2\\_69.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eol/e/wto02/wto2_69.htm) 15 Mar. 2004.  
 12) 일레로 서비스에 대한 무역원활화 논의는 WTO 무역원활화 논의에서 다루어질 수 없고, GATS 협상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 무역원활화 논의에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는 기관은 관세당국이며, 세계 각국 관세당국이 참여하는 국제협력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무역원활화를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WCO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를 위하여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을 1973년 공포하였고, 이를 1999년 개정한 바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개정교토협약이 통관절차와 가장 많이 관련된 국제협정이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개정교토협약<sup>13)</sup>과의 내용도 비교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 2) GATT협정 제X조, 제VIII조와 제V조의 내용

### □ GATT 제X조의 주요 내용 및 의무<sup>14)</sup>

○ GATT 제X조는 「무역규제의 출판과 운영」으로 국제 무역규율의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WTO/UR협정의 투명성 조치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있다. WTO(2005, p.4)에서는 GATT 제X조에 따른 기본적 요구사항을 다음 3가지로 정리하였다.

- 무역과 관련된 법령, 규제, 판정과 협약을 신속하게 접근이 유의한 방법을 통해 발표한다. (1항)
- 법령, 규제, 판정과 협약의 발표 이전 이를 집행하는 것을 삼가도록 한다. (2항)
- 법령, 규제, 판정과 협약을 균등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은 관세나 통관절차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나 재판소, 또는 재정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한다<sup>15)</sup>. (3항)

○ GATT 제X조는 각 회원국에게 단순한 법령과 규제의 공포만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매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접근이 유의한 방법이라는 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공포매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 매체를 다른

13) 여기에서 「개정교토협약」은 1999년 개정된 Revised Kyoto Convention을 의미한다.

14) 양준석(2005)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15) 즉, 행정집행에 있어서 당국이 실수를 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상소할 수 있는 절차를 설립해야 한다.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다. 1947년 GATT 협정이 체결된 때는 아직 IT 정보기술이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관보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공표했지만, 일부 국가는 신문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정보를 공표하여도 이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 또한, 회원국 정부는 법이나 규제를 발표 후에만 집행하도록하여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관세나 통관절차에 관련된 판정이나 결정을 항소 / 재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항소 / 재심 절차의 도입을 제외하고 피규제자들인 기업들이 법이나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의 도입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즉, 피규제자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필요없이 비용을 늘리는 법이나 규제가 도입되어도 이를 회원국 정부당국에 알리거나 항의할 수 있는 길은 막혀있는 셈이다. 국내기업은 그래도 자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통하여 법이나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만, 외국기업은 이러한 절차마저도 없는 셈이며, 이는 특히 작은 국가들의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 □ GATT 제VIII조의 주요내용 및 의무<sup>16)</sup>

○ GATT 제VIII조는 「수출입과 관련된 요금과 절차」로 무역에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조항이고, 무역원활화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 중 가장 기술적이고 까다로운 내용들이다. WTO(2002)는 GATT 제VIII조와 관련된 법적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요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17)</sup>.

- 제VIII조제1항에 의하면 수출입과 관련되는 비관세 수수료나 요금은 각 회원국이 수출입과 관련되는 규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과 대체로 합치해야 하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나 정부재정 충원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제VIII조제2항에 의하면 여타 회원국이나 WTO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국은 제8조의 의무와 비추어 국내법과 규제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16) 양준석(2004)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17) WTO, "Article VIII of the GATT 1994 Scope and Application," WTO 문서 G/C/W/391, 9 July 2002, p.6.

- 제VIII조제3항에 의하면 관세나 통관 규제나 절차에 있어서 사소한 위반의 경우 큰 벌금을 부여할 수 없으며, 특히 위반사항이 쉽게 수정될 수 있고 사기행위나 중과실의 경우가 아니면 큰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또한, 회원국들은 수수료와 요금의 종류와 숫자를 줄이고, 수출입 절차의 숫자와 복잡성을 최소화시키며, 수출입관련 서류의 요구사항을 줄이고 간소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를 실행할 의무는 없다.

○ GATT 제VIII조의 내용은 절차와 요금을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내용은 요금에 한정되어 있다. 절차와 요금 숫자를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허용하는 요금이나 서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므로 회원국이 간소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는 없다. 또한 무리한 절차에 대한 정의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그릇된 절차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절차인지에 대해서도 애매한 점이 많다. 선적전검사 협정, TBT협정과 SPS협정을 통하여 무리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 분야들에 대해서는 마련되었지만, 일반적 통관절차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는 셈이다. 특히 절차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 GATT 협정은 아무 언급이 없는 셈이다.

○ 수수료와 요금에 대해서는 취약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대체로 이러한 요금은 정부가 통관절차 업무를 수행하는<sup>18)</sup> 실비와 비슷해야 하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수수료나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회원국이 산업보호나 정부의 재정 이유로 무역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모두 관세로 부과해야 한다는 관세화 원칙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제VIII조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큰 벌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허용되는 수수료의 범위나 숫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 또한, 통관절차에 있어서 협력에 대한 사항, 특히 인접하는 국가들간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다.

## □ GATT 제V조의 주요내용 및 의무<sup>19)</sup>

○ GATT 제V조는 「화물통과의 자유」 인데, 화물통과란 물품이 생산국(수출국)

18) 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19) 양준석(2004)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이나 소비국(수입국)이 아닌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WTO(2002b)에서는 GATT V조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20)</sup>.

- 선박의 국적이나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나 최종 목적지 등 물품의 소유, 선박이나 운송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근거로 하는 차별적인 대우는 할 수 없다. (2항)
  - 통과하는 물품을 신고 있는 운송도구는 규정된 통관시설을 통해 입국해야 하며, 회원국은 여기에 불필요한 지체나 요구사항을 기피해야 한다. (3항)
  - 회원국이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수료나 규정은 3항~5항에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통과화물을 신고 있는 선박이나 운송도구는 관세대상으로부터 제외되며, 운송비나 통과와 관련된 행정적 비용과 유사한 수준의 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관요금이나 수수료로부터 제외된다. (3항)
  - 따라서 회원국 정부나 부처가 통과화물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은 두 종류로만 제한된다. 첫째는 운송비용이며, 둘째는 통과나 통과 자체, 또는 관련된 정부의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적 비용에 대한 수수료이다. 여기에서도 요금은 합리적(4항)이고 무차별적인 방법(5항)으로 징수해야 한다. 통과화물에 대한 요금을 정부의 재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각 회원국은 통과화물이 여타 회원국을 통과한 경우, 그 회원국을 통과하지 않은 화물과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 (6항)
- 무역원활화협상 중 내륙국가와 관세동맹 또는 지역별 무역협정에 속해 있는 회원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통과화물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많은 숫자의 제안이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X조와 제VIII조의 내용을 제V조에 대해서도 적용하려고 하는 내용들이었다. GATT 제V조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통과화물에 대해서는 출발지나 도착지 및 거쳐서 간 나라들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으며, 통과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최소화하고, 비용도 최소화하며 관세로부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할 것은 출발지, 도착지 및 거쳐서 간 국가나 수송수단에 대

20) WTO, "Article V of the GATT 1994 Scope and Application," WTO 문서 G/C/W/408, 10 September 2002, pp.7~8.

해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국가가 화물에 대해서 특정 국가를 통과하거나 특정 운송수단을 강요하는 행위를 막는 역할을 하며 화물 운송과 관련 운송로와 수단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이는 수출입업자들과 운송자들이 그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 운송로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간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조치이다. 따라서 무역원활화협정은 이러한 GATT 3개 조의 기본내용을 보충하고, 구체성을 부여하며, GATT협정이 체결된 1947년 후, 그리고 개정교토협정이 체결된 1999년 후 통관절차에 대해서 보완된 사항에 대한 국제규율을 마련해 주는 협정이다.

### 3) 무역원활화 협정의 주요 구조

○ 무역원활화 협정은 크게 전문(preamble), 제1절, 제2절과 제3절로 분류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협정의 법적 정당성, 범위와 무역원활화의 필요성 및 개발도상국 지원의 원칙을 표시하고 있고, 제1절에는 GATT 제X조, 제VIII조와 제V조와 관련된 기술적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역원활화협정의 핵심적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항의 내용이 제X조, 제VIII조, 제V조 순서로 나오는 이유는 무역원활화협상에서 이러한 순서로 회원국들의 제안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제2절의 내용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차별적 대우를 다루고 있고,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제3절은 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립과 협정의 발효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 가. GATT 제X조 관련 내용

○ 제1절에서 1조부터 5조까지의 내용은 GATT 제X조, 즉 투명성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GATT 제X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공표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정보를 공표하는 매체를 WTO 무역원활화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여타 회원국이나 수출입업자들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질의처를 설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로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투명성(regulatory transparency)과 각종 FTA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수렴(regulatory convergence)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OECD는 규제투명성을 「피규제기관이 규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이

를 인식함과 동시에 법규칙 하에서 이행해야 할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1)</sup>. 이러한 규제투명성을 통해서 규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여 규제준수율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가능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규제개혁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어, 정부가 제출하는 법이나 정부기관이 신설 또는 강화시키고자 하는 규제는 일정한 공표기간을 거쳐서 국민이나 기업의 의견을 받아야 하고, 규제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편익검토 및 규제대안조치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후, 비상 법이나 규제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새로 도입된 규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WTO 차원에서는 TBT협정에서 기술기준 및 표준과 관련된 법과 규제 그리고 SPS협정에서 위생에 관한 법과 규제에 대해서 규제투명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GATT협정에서는 규제투명성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투명성 원칙을 통관절차를 포함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WCO 개정교토협약은 세관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과 규제 통과에 대한 제안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규제투명성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 규제수렴은 간단하게 본다면 국내적인 개념인 규제투명성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국제협정을 통해서 이를 의무화시키는 조치라고 보면 될 것이다. APEC이 규제수렴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TPP협상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수렴은 아직 논의되고 변화되어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2011년 APEC 각료선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거기서는 비록 규제수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①국내 통상담당기관, 규제담당기관과 표준수립 담당기관간 협력체제의 강화 및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는 절차를 세우고, ②규제에 따르는 영향(긍정적 과 부정적, 실제영향과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비용이 더 적은 규제 대체 방법을 고려하는 절차를 설립하며, ③국내 규제제도가 APEC-OECD 규제개혁 통합점검표에 합치하도록 국내 규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통합점검표의 내용 중 종합분야와 시장개방 분야는 <표 2>에서 정리하고

21) OECD(2002)와 양준석(2005) 참고

있지만, 규제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러한 절차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게도 개방되어 있는지, 국내규제가 국제기준에 합치한지, 외국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조치가 무역원활화협정의 전부분에, 특히 정보 공표를 다루는 제2조에 녹아들어가 있으며, 이는 WCO 개정교토협약에는 반영되지 않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존 WTO 협정보다도 한발자국 나아간 내용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표 2> APEC-OECD 규제개혁 체크리스트 내용

분야	지침 번호	내용
종합분야	A1	규제, 경쟁, 시장개방 정책을 다 포함하는 규제개혁의 종합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A2	정치적 지도자와 고위관료층의 규제개혁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높은가? 이러한 지지가 개혁의 실제에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기업, 소비자, 이익집단의 반응을 얻었는가?
	A3	효과적인 규제 집행을 확보하는 책임 메커니즘이 있는가? 무엇인가?
	A4	규제 대상이 되는 재화, 서비스, 기업, 국가에 대한 차별화가 있는가? 만약 차별성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합당한 것인가?
	A5	규제개혁이 모든 차원의 정부들 간에 잘 조정되고 독려되고 있는가?
	A6	정책, 법, 규제, 관례, 절차와 의사결정 등이 투명하고 일관성 있으며, 정부내외 및 국내외 사용자에게 이해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한가?
	A7	규제개혁, 규제기관의 설립, 경쟁의 도입 등이 적절한 시기에 순서대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A8	규제관리시스템을 고려한 효과적인 부처간 규제개혁 관리 및 조정 절차가 존재하는가?
	A9	규제의 품질, 시장개방 등에 책임이 있는 각 규제기관들이 적기에 그들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적절한 인적 및 기술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A10	규제형성자와 규제자를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있는가?
	A11	규제와 관련된 항소/재심처리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가?
규제정책분야	B1	품질높은 규제를 원칙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여력이 존재하는가?
	B2	새 규제의 법적 근거 및 경제와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가? 여기에 사용되는 측정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B3	기존 규제의 법적 근거 및 경제와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측정기준을 사용하고 있는가?
	B4	규제관련 제도와 기관, 규칙과 운영체제는 정부내외 관찰자들에게 투명적이고 명확하고 예측가능한가?
	B5	효과적인 공공협의절차가 있는가? 사전통보제도가 피규제자와 여타 이해관계자들(외국 정부 포함)에게 개방되어 있는가?
	B6	새 규제나 기존 규제의 영향을 검토할 때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사용하고 있는가?
	B7	규제 대체 방안도 검토되는가?
	B8	규제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었는가?
시	D1	규제를 결정할 때 무역과 (국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나?

장 개 방 분 야	D2	정부는 무역호환적이고 경제주체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립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D3	통관절차와 국경통과절차에 있어서 물품흐름에 대한 불필요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관성, 예측가능성, 간결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서비스 공급 인력의 임시적 입출국관리에 있어서 약속한 투명성과 시장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D4	외국 이해관계자들을 포함, 정부가 효과적인 공공협의 절차(사전통보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가?
	D5	정부조달제도가 국내외 공급자들에게 투명적인가? 시장개방이 되어있는가?
	D6	규제가 외국인투자나 외국인소유 또는 외국인의 서비스 공급에 차별하는가? 만약 차별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규제를 제거하여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는가?
	D7	주요 및 보조 규제에 있어서 조화된 국제기준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D8	기술 인증절차가 투명하게 개발되고, 물품의 흐름이나 투자에 차별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자료> OECD-APEC (2005) <주> 경쟁정책과 관련된 C1-C12는 제외

○ 제3조는 사전판정을 다루고 있다. 이는 개정교토협약의 ‘구속된 사전판정’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WTO 차원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이미 원산지에 대한 사전판정은 WTO 원산지 협정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여기에 관세품목분류에 대한 사전판정 의무를 추가하고 있다. 특정한 사실에 따른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적절한 방법, 기준과 적용,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요건의 적용, 관세 할당과 쿼터에 대한 적용,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판정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 제4조는 재심/상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단순하게 이러한 절차를 설립하라는 GATT 제X조의 규정을 넘어, 구체적 시한을 법으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정보를 확실히 제공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세관뿐만이 아니라 통관절차에 관련된 다른 기관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교토협약의 내용보다 다소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만, 대체로 교토협약의 취지와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제5조는 SPS협정과 TBT협정에 관련된 통관절차 및 화물 유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조의 제1항은 SPS를 이유로 수입을 통제하는 경우, 이를 일부 항구에만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수입을 통제할 이유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한 빨리 통제를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개정교토협약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개정교토협약의 정신과 대체로 합치하는 내용이다. 제3항은 SPS와 TBT를 이유로 수입물품을 검사했는데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역시 개정교토협약에는 없지만 협약의 정신과 합치하는 내용이다. 2항은 세관이 수입품을 유지하는 경우, 이를 운수업자나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는 다소 기본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제5조, 특히 1항과 3항은 통관절차를 다루고 있지만, TBT협정과 SPS협정을 보완하는 면도 가지고 있다.

## 나. GATT 제VIII조 관련 내용

○ 제6조부터 제10조는 GATT 제VIII조, 즉 통관절차와 서류 및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GATT 조별로 분석한 경우<sup>22)</sup> GATT 제VIII조와 관련된 개선이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가장 많은 이득을 가지고 오고, 다소 내용이 추상적인 투명성 내용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다섯 개의 조항, 특히 이 중 제7조와 제10조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핵심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제6조에는 수수료와 요금 및 벌금을 다루고 있다. 제6조의 1-3항에서는 투명성의 원칙, 수수료와 요금에 대해서는 실비 적용의 원칙, 벌금에 대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 제7조는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7조의 제1항, 제4항과 제5항에서는 위험관리, 화물 도착전심사와 사후심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과 제7항은 반출과 관세 및 절차의 최종결과의 분리, 그리고 승인된 영업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WCO 개정교토협약과 WTO 무역원활화협정간 다소 기술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내용은 대체로 개정교토협약의 내용을 WTO로도 가지고 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7조의 2항은 전자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지급을 권장하는 개정교토협약을 현대 전자기술 경제환경에 업데이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항(반출기간의 측정과 공표), 제8항(특송화물)과 제9항(부패성 상품)은 개정교토협약에 없는 내용으로 개정교토협약 체결 후 등장한 문제들을 다루는 조항들이라고 볼 수 있다.

○ 제8조는 국경이 인접한 통관사무실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수입상품이 세관의 통제하에 국내 이동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내용 모두 개정교토협약에 포함되었지만, 무역원활화협정의 규정이

---

22) 이창수 외 (2004) 참고

개정교토협약보다 다소 구체적이고 협의적이라고 분석된다. 제10조는 수입, 수출 및 통과에 관한 규정으로 일부 내용은 GATT 제V조에도 적용된다. 제1항은 서류의 숫자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GATT 제VIII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서류와 절차에 국제기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제2항은 통관절차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사본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역외/역내가공을 위해 일시 반입되는 상품에 관련된 규정이다. 이 두 규정이 요구하는 바는 개정교토협약과 유사하다.

○ 제7항은 공동국경을 가진 국가들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단일형태의 서류절차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인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개정교토협약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정교토협약은 권장수준에서 멈추고, 무역원활화협정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개정교토협약의 내용을 WTO관할에 포함시키는 조항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제4항은 모든 서류를 한군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싱글윈도우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제8항은 반입이 거부된 물품을 자동적으로 폐기시키지 않고, 수출입업자나 운송업자가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교토협약에 없지만, 수출입업자들의 편의를 크게 고려해 주는 규정이다. 제5항은 선적전검사의 사용을 약간 제한시키는 규정으로 전반적으로 선적전검사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WTO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한 조항이다. 제6항은 관세사 사용에 대한 조항인데, 일반적으로 관세사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새로운 국내 규제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개정교토협약에 없는 내용이다.

#### 다. GATT V조 관련내용과 기타 내용

○ 제11조는 통과화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체로 통과화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나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통관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교토협약과 유사하지만,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첫째는 수출입업자나 수송업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통과노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보증금에 대한 자세한 원칙을 추가하였다는 것이다. 제12조는 세관협력에 대한 내용이다. 제1항에서는 모든 국제협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각 국가의 통관절차 수행기관 간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타 내용은 개인 또는 개별화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때 요청국과 피요청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WTO 협정이나 개정교토협약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세관은 통관절차를 실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러한 의무가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때 경찰과 유사하게 위반 여부를 조사·수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같이 무역상대국의 세관으로부터 개인이나 개별화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협정은 이러한 세관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또한 피요청국의 세관에게도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주고 있다.

○ 제14조부터 제22조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 특별대우와 지원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제7조와 제10조가 무역원활화협정의 핵심이라면, 개발도상국 특별대우와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무역원활화협정을 여타 WTO협정과 비교하는 경우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다. 무역원활화협정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협정의 각종 조치를 유형A, 유형B와 유형C로 분류할 권리를 주고 있다. 유형A는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적용될 조치, 유형B는 일정한 유예기간 후 적용될 조치, 그리고 유형C는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적합한 지원을 받아야만 적용될 조치이다. 다른 WTO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발도상국에게 즉시 적용될 조치와 유예기간 후 적용될 조치를 회원국의 사려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 또한, 여타 WTO협정에서는 지원과 조치의 적용을 묶은 경우가 없다. 따라서 향후 WTO협정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의 특별대우 조건이 하나의 모델로 될 것이고,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발도상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외로 무역원활화협정은 일정기간동안 회원국들의 분쟁해결절차(DSM) 사용을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원에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각종 정보를 WTO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타 WTO 협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여타 협정들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두 조항인 제23조와 제24조는 협정의 발효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의 운영을 위해서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고, 무역원활화협정도 DSM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와 GATT협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예외와 제외사항이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하고 있고, 관세동맹이나 지역경제협력체의 경우, 동맹이나 협력체의 차원에서 협정의 조항들을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

는 무역원활화협정의 기본구조를 표로 나타내고, 개정교토협약의 어느 부분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표 3> 무역원활화협정과 개정교토협약과의 비교

(GATT X조 관련 내용)

무역원활화협정	유사한 개정교토협약 내용	차이점
1조1항 (정보의 공표)	일반부록 9	
1조2항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표)	일반부록 일반표준 9.3	개정교토협약의 일반부록 7은 정보 공표보다는 서류 제출차원에서 정보기술을 규정하고 있음.
1조3항 (질의처)	없음	개정교토협약은 세관이 실질적으로 질의처라고 암묵적으로 간주하고 있음
1조4항(공표매체의 통보)	없음	여타 WTO 협정에서는 공표매체를 통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2조 (의견제시 기회, 시행 전 정보 및 협의)	없음	규제투명성과 규제수렴 원칙 하에 다수 OECD 합의 및 FTA에서 활용되고 있음
3조 (사전심사)	일반부록 일반표준 9.9	WCO는 개정교토협약의 “구속성있는 판정”과 WTO의 사전심사를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있음
4조 (불복/재심/항소절차)	일반부록 10장	무역원활화협정과 개정교토협약은 불복/재심/항소절차 유지의 의무를 세관의 결정에 한정. (여타 기관은 권장 수준), 무역원활화협정은 회원국의 모든 통관관련 기관에 적용 가능
5조1항 (제고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	없음	SPS협정의 2조와 5조를 보완하는 내용임. SPS협정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의 위생과 보건에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항구별로 선별적 도입하고 이유가 없다면 신속하게 철회하도록 규정함
5조2항 (유치)	없음	유치된 화물에 대해서 투명성 원칙을 도입함.
5조3항 (시험절차)	없음	TBT협정과 SPS협정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음

(GATT VIII조 관련 내용)

무역원활화협정	유사한 개정교토협약 내용	차이점
6조 1항과 2항 (수수료와 요금)	없음	GATT X조의 투명성원칙 및 GATT VIII조의 실비원칙을 수수료와 요금에게도 적용하고 있음.
6조 3항	특정부록 H	GATT X조의 투명성원칙을 수수료와 벌금에게도

(벌금)		적용하고 있음.
7조 1항 (도착전처리)	일반부록 3장	
7조 2항 (전자지급)	일반부록 표 준 4.6	개정교토협약은 전자지급의 연구를 권장하고 있지만 무역원활화협정은 의무화하고 있음.
7조 3항 (반출의 분리)	일반부록 표준 3.40 - 3.43	개정교토협약과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은 유사하나,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추가
7조 4항 (위험관리)	일반부록 표준 6.3-6.5	
7조 5항 (사후 검사)	일반부록 표준 6.6	개정교토협약은 사후검사를 사용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무역원활화협정은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함
7조 6항 (평균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없음	비록 개정교토협약에는 공표의 조건이 없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출시간 통계가 WCO의 통계인 만큼, WCO의 원칙과는 합치다하고 봄. 그러나 이 통계의 공표는 무역원활화에서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라고 볼 수 있음.
7조 7항 (승인된 영업 자)	일반부록 표준 3.32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승인된 영업자 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음.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승인된 영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반면,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다소 협소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일부 혜택은 의무화.
7조 8항 (특송화물)	없음	개정교토협약보다는 WCO 즉시반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특송화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원칙만 언급하고 있음.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은 훨씬 더 구체적이며 국제적 특송화물 회사들의 편의를 타겟하고 있음
7조 9항 (부패성 상품)	일반부록 표준 3.34	개정교토협약은 원칙만 제시하고 있는 반면, 무역원활화협정은 훨씬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8조(국경기관 협력)	일반 부록 3장 표준 3.3 - 3.5	두 협정 모두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교토협약이 더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만 표시하고 있는 반면, 무역원활화 협정은 두 기관이 협력해야 할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9조(수입상품의 세 관 통 제 하 이동)	특정부록 E 표준 1.2, 1.3	개정교토협약은 이동하는 화물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원활화협정은 이 조건을 제11조에서 다루고 있음.
10조 1항 (형식 및 서류 조건)	없음	일반적으로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서류의 형태 및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음
10조 2항 (사본의 수용)	없음 (단 일반표준	개정교토협약에는 서류 사본의 수용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개정교토협약의 서류 수용과 반출속도에

	3.13과 3.15 (참조)	대한 내용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사본의 수용은 개정교토협약의 취지와 합치한다고 볼 수 있음
10조 3항 (국제기준의 사용)	전문과 일반 부록 표준 3.11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전문에서 국제기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3.11에서는 UN Layout Key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반면 무역원활화협정은 국제기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정 기준을 기술하지 않음. 따라서 무역원활화협정보다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10조 4항 (싱글 윈도우)	없음	개정교토협약의 의무를 넘는 첨단 의무사항임.
10조 5항 (선적전검사)	없음	품목분류나 관세평가에 대한 선적전검사를 금지하여 선적전검사의 사용을 될 수 있으면 감소시키고자 하는 조항임.
10조 6항 (관세사 사용)	일반부록 표 준 8.1 - 8.7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관세사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취지에서 관세사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교토협약에서는 관세사의 의무와 통관절차에 있어서 관세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체로 규정하고 있음.
10조 7항 (공통국경, 통 일된 서류)	일반부록 전환적 표준 3.4	개정교토협약보다 더욱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10조 8항 (거부된 물품)	없음	개정교토협약의 의무를 넘는 첨단 의무사항임
10조 9항 (역외/역내 가 공을 위한 상 품의 일시반입)	특별부록 G와 특별부록 F의 1장과 2장	개정교토협약과 유사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정교토협약의 구체적 요구사항들은 포함되지 않음

(GATT V조 관련 내용 및 기타)

무역원활화협정	유사한 개정 교토협약 내용	차이점
11조 (통과의 자유)	특별부록 E 1 장(통과), 2장 (환적)	무역원활화 협정에는 환적에 대한 내용이 없음. 개정교토협약에서는 통과화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없는 대신 수수료나 요금을 통과 조건으로 하지 못하며, 수출입업자나 운송업자가 가장 편한 통과 노선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통과화물의 통관절차에 대한 조건은 두 협정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한층 더 구체적.
12조 (세관협력)	일반부록 표준 6.7	개정교토협약에는 세관협력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역원활화협정이 훨씬 더 구체적임. WCO 여타 협약이나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한 회원국이 여타 회원국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무역원활화협정은 WCO협약보다 피요청국에게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 즉, 피요청국의 권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

## 라.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논의되었지만 빠진 내용

○ 무역원활화협정의 협상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제안서에 포함되었던 내용이 최종 협정문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내용은 다수 회원국들이 내용을 제출하고 조치를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협정문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세력이 강했지만, 포함시키지 말자는 세력도 역시 강했기 때문이다. 지연되고 있는 도하라운드에서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의 상징적 중요성을 본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논리나 당위성보다는 정치적 편의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는 이렇게 제외된 일부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서류의 조화와 표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부 회원국들은 통관절차와 관련된 서류, 특히 신고서류는 국제기준에 따라 모든 국가들간 표준화시키자고 제안하였지만, 최종 협정문에서는 서류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제안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국제기준 및 표준의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뿐이었다.

○ 또 하나는 영사수수료(consular fee)에 대한 내용이다. 일부 회원국은 수출입업자가 자기 국가로 물품을 수출하기 전, 영사관을 들러서 서류 작성하거나 절차를 수행하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수출입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회원국은 이러한 영사수수료를 금지시키자는 제안을 제출하였고, 일부 회원국은 금지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영사수수료에 대해서 각종 투명성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그러나 최종 협정문에서는 영사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협정 앞부분의 투명성 조치가 영사수수료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거나 제한시키는 규정은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제외된 내용으로는 관세동맹이나 지역별 경제협력체에게 동일한 서류와 절차 및 공동 질의처를 요구하는 조항이다. 최종 협정문에서는 관세동맹이나 지역별 경제협력체는 협정의 요구사항들을 공동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최종규정에 포함되었지만, 관세동맹이나 경제협력체 차원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 정보기술과 전자통관의 사용 의무화도 협상 초기에 일부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과제 중 하나지만, 개도국들의 반대가 많았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개도국의 통관절차에 아직 정보통신기술이나 인터넷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았고, 이들은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전자통관이 의무화되는 경우, 특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전문인력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없이 의무화되는 경우, 개도국들은 엄청난 의무와 부담을 지게 될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원활화협정의 대부분 조항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는 있지만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의 공표나 싱글윈도우 같은 일부 의무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전자통관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비록 의무는 아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통관절차와 정보공표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활용 계획은 각 부처마다 독립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모든 부처가 협력하는 범정부적 계획으로 진행해야 하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인적자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리해야 한다. 효율성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또한 WTO무역원활화협정은 회원국의 모든 통관관련 부처가 준수해야 하는 협정인만큼 범정부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해야만 협정의 의무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도입 계획은 단기간 과제가 될 수 없고 수년간 착실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sup>23)</sup>.

### 3.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의 의의

○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의 의의는 먼저 도하라운드 차원에서, 또 범 WTO차원에서, 그리고 투명성과 수출입절차 및 통관절차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도하라운드 차원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이 발리패키지의 10개 성과물 중 가장 큰 성과물로<sup>24)</sup> 도하라운드가 전면 실패한 라운드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 하였고, 도하라운드도 계속될 수 있다는 불씨를 살려주었다는 의미도 있다. WTO와 일부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을 시점으로 하여 다른 분야의 협

23) WCO(2014) pp.I/1-I/2

24) 다른 성과물은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식량보안, 관세할당, 최빈개발도상국이 생산한 목화(면)에 대한 시장접근, 개발도상국 시장접근과 원산지 특혜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상들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무역원활화는 비교적 논란이 적었던 분야이었음을 고려하면 이것이 도하라운드 재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 범 WTO차원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UR 이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타결된 새 통상이슈이다. UR 이후 논의가 제시된 통상문제로는 싱가포르 이슈이었던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과 무역원활화가 있었고, 선진국은 무역과 노동기준 및 무역과 환경문제를 통상협상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복수간 협정으로 남아있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다자차원으로 확산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 UR 이후 WTO 회원국간 체결한 FTA를 검토해보면 많은 수의 FTA에 위의 이슈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역원활화를 제외한 여타 이슈들은 다자협상을 시작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즉, 범세계적인 관심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WTO 규율분야에 새로운 다자적 이슈를 포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이 적지 않았는데, 무역원활화가 여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이슈가 WTO 규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 또한, WTO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원과 특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WTO협정의 개발도상국 특혜는 유예기간의 부여와 기술 지원에 한정되어 있었다. 즉,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발도상국의 경우 협정을 발효하는 데에 더욱 많은 준비시간을 부여한다는 점,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에게는 기술지원(주로 교육)을 제공해 준다는 점 밖에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들이 자기들 환경에 맞게 주어진 유예기간에 따라 빨리 실행할 수 있는 조치(유형 A), 그리고 천천히 실행하는 조치(유형B)를 선별할 수 있는 옵션을 주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들은 적합한 지원을 받지 않으면 협정의 조치(유형C)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옵션을 주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적합한 지원의 제공도 간접적으로 협정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 이는 과거 WTO 협정과 비교할 때 상당히 혁신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 무역원활화협정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많은 배려를 제공한 협정이다. 협정의

모든 부분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를 명시하고 있고, 기술지원을 할 때 개발도상국들의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지원이나 지원이 없는 경우, 협정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까지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부여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고, 향후 WTO협상에서도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끼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UR 이후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발도상국들은 자기들의 입지가 너무 약해 시장개방에 대한 실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명해 왔는데, 비록 이러한 개발도상국 특혜조치들이 그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개발도상국들의 입지를 과거보다 훨씬 강화시켜 줌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WTO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제고시켰다고 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무역원활화는 기존 협상보다 더욱 투명적이고 회원국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협상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Neufeld(2014 p.11-12)는 무역원활화 협정의 의미를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새로운 협상 형식의 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원칙과 규율의 논의과정에서 이 규정들의 집행을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고려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과거 그린룸식의 불투명한 소수 주요국가간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다수의 국가가 공개된 협상을 유지하는 형식을 사용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 따라서 협상은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top-down 형식을 취하지 않고, 각 회원국의 필요성으로부터 비롯되는 bottom-up 형식을 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통관절차와 이러한 협상방식을 반영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다른 어느 WTO 협정보다 기술적이며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들의 실제적 입장을 고려하는 지원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WTO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상의 일부, 특히 개발도상국 지원 협상방법을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Neufeld는 평가하고 있다.

○ 무역원활화의 관점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을 평가한다면, 이는 다시 두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통관절차에 대하여 개정교토협약 등 여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의 구속력과 분쟁해결절차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과 TBT협정간의 관계와 유사

하다. 개정교토협약뿐만이 아니라 여타 WCO 협약, 그리고 해운 또는 항공운송 협회들의 가이드라인 등 통관절차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성과 신속함 및 국민의 안전을 추진하는 협약들이 다수 있지만, 이 협약들은 모두 관련 부처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협약을 준수하는 책임은 각 회원국의 실무부처에 있고, 만약 회원국이 협약의 조건을 어긴다고 하여도,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법은 없는 것이다. 반면, WTO 협정에서 준수의 책임은 회원국에 있으므로 회원국의 모든 부처에 적용된다. 또한 회원국이 협정을 어긴다면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가능성도 부여된다. 따라서 개정교토협약이나 기타 협약의 일부 주요 내용을 WTO 협정 산하로 포함시켜 책임과 구속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교토협약과 무역원활화협정을 비교한다면,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들이 많다.

○ 이를 살펴보면 먼저, 세관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규정들이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법과 규제의 공표를 규정하고, 법이나 규제 도입이나 개정과정에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관의 책임범위를 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정교토협약과 무역원활화협정을 비교하면, 개정교토협약의 일부 내용은 무역원활화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부 내용은 개정교토협약보다 약한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무역원활화협정의 구속력이 더욱 강하고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역원활화협정은 개정교토협약보다 20년 뒤에 협상하여 만들어진 협정이므로 최근 내용과 개정교토협약의 운영 중 나온 교훈들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 차원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은 개정교토협약의 연장선으로 더욱 발전된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무역원활화협정의 공표 및 투명성 의무는 단순한 공표의 의무를 떠나서 개정교토협약 협상이 끝난 후 중요성이 강조된 규제투명성과 규제수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승인된 영업자나 싱글윈도우에 대해서는 개정교토협약보다 더욱 발전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만약 개정교토협약이 업데이트되었다면 어차피 이 협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내용들이다. 따라서 일부 내용은 무역원활화협정이 개정교토협약 이후에 협상되어 교토협약 완료 이후 등장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이러한 면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의 일부 내용은 개정교토협약을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4.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조항과 그 의미

○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협정의 협상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 받는다.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소수의 비선진국 중 하나이었으며<sup>25)</sup>, 무역원활화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콜로라도 그룹에 참여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의 뉴라운드 포함과 협상완료에 큰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 협상 공식적인 시작 이전에 콜로라도 그룹 및 WTO 무역원활화 관련 회의에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다수의 제안을 발표하고,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후에는, 단독 또는 여타 회원국들과 함께 다수의 제안서를 무역원활화 협상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이미 통관절차와 서류의 간소화와 전자통관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일찍부터 통관절차를 평가하는 각종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우수한 결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상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큰 관심을 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까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가 심한 통관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매년 미국이나 EU의 비난을 받았지만, 1990년대 일련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청렴한 통관절차를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전세계 통관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경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안을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내 경험 보고서와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위험관리, 평균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그리고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우) 제안이다. 우리나라의 제안과 실제 협정의 조항을 비교평가해 보기로 한다.

○ 우리나라는 협상 전 우리나라의 통관절차 개선 및 전자통관에 대한 국내경험보고서를 물품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04년 워크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협상반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는 협상 초기에 제X조, 제VIII조와 제V조의 제안서를 단독으로 하나씩 제출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는 다른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각종 제안을 제출하였다. <표 4>는 우리나라가 무역원활화 협상 중 제출한 제안서들을 정리하고 있다.

---

25) Neufeld(2014) p.3

<표 4> 무역원활화협정 협상 중 우리나라가 제출한 제안서

	문서번호	배포일 (일/월/년)	내 용	공동제출국
1	TN/TF/W/7	01/27/05	X조: 핵심조치 관련 정보 출판과 사전 의견제시	단독
2	TN/TF/W/18	03/16/05	VIII조 행정적 부담의 감소	단독
3	TN/TF/W/34	04/28/05	V조: 통과와 환적화물에 대한 부담 최소화	단독
4	TN/TF/W/49	06/09/05	VIII조: 위험관리	중국
5	TN/TF/W/85	04/05/06	국제기준의 사용	칠레, 노르웨이, 스위스
6	TN/TF/W/92	04/05/06	상업적 정보의 인정	홍콩, 스위스
7	TN/TF/W/94	04/06/06	수출입 관련 수수료와 요금	EC, 대만, 스위스
8	TN/TF/W/98	05/10/06	화물도착전 처리	대만, EC 일본, 몽골, 뉴질랜드, 파키스탄, 스위스
9	TN/TF/W/99	05/10/06	위험관리	대만, 일본,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10	TN/TF/W/100	05/10/06	싱글윈도우(단일창구 서류접수)	칠레, EC, 일본, 몽골, 싱가포르
11	TN/TF/W/101	05/10/06	반출시간 발표 관련 제안	대만, EC, 일본, 몽골
12	TN/TF/W/102	05/10/06	사전 출판과 협의	코스타리카, EC, 일본,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13	TN/TF/W/112	06/06/06	상업적 정보의 인정	홍콩, 스위스
14	TN/TF/W/115	06/07/06	사전 출판과 협의	홍콩, 일본, 몽골, 스위스
15	TN/TF/W/117	06/07/06	화물도착전처리	일본, 몽골, 스위스
16	TN/TF/W/134	07/14/06	반출 후 감사	중국, 인도네시아
17	TN/TF/W/138	07/21/06	싱글윈도우	(후에 싱가포르, 태국 추가)
18	TN/TF/W/139	07/21/06	반출시간 발표	(후에 일본 추가)
19	TN/TF/W/140	07/21/06	위험관리	대만, 스위스
20	TN/TF/W/55	07/22/05	국내경험: 반출 후 감사	단독

<자료> WTO 웹사이트, WTO (2006), WTO (2009)

○ 우리나라가 처음 제출한 제안서는 TN/TF/W/7 (이하 W7)로 2005년 1월에 배포되었다. 이는 GATT 제X조 하에 각 회원국이 제출해야 하는 정보 및 정보 공표에 관한 의무를 제안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GATT 제X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순한 정보의 공표뿐만이 아니라 규제투명성 원칙을 도입하여

여타 회원국들의 기업들이 주요 법안이나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의 도입, 공표와 발효 사이 준비기간의 부여, 그리고 수출입업자의 질문을 책임지고 응답할 수 있는 단일질의처<sup>26)</sup>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국내 규제개혁을 진행하면서 규제투명성 원칙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고, 질의처에 대해서는 TBT협정이나 SPS협정에서 질의처가 상당히 유용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분야에 따라 질의처가 다르기 때문에 유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제시한 것이다. 어차피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단일질의처는 세관이 될 것이므로 부담이 낮고 유용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여타 회원국들도 정보의 공표와 관련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유사한 제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제안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고, 비교적 논란이 없어서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정보공표의 범위가 유사한 국가들과 이 분야에 관하여 향후 공동제안서(W102, W115)를 제출하였다. 최종 협정문을 보면, 우리나라가 사전공표와 관련 W7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거의 모두 반영되었다. 비록 우리나라가 제안한 단일질의처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질의처 설립의 의무는 반영되었다.

○ 우리나라의 두 번째 제안서는 2005년 3월 배포된 W18이다. 이는 제VIII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제안한 내용은 상업적 정보의 인정, 서류 형태의 조화와 표준화, 그리고 모든 서류 및 정보를 한 장소에 제출할 수 있는 싱글윈도우의 설립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평균반출시간을 측정하고 발표하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었고, 상업적 정보의 인정은 최종 협정에 의무로 포함되었다. 싱글윈도우는 강력한 권장사항으로 포함되고, 평균반출시간의 발표 또한 권장사항으로 포함되었다.

○ W18에서 우리나라는 화물도착전처리, 위험관리, 사후검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지만, 많은 회원국들은 이러한 선진적인 세관처리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권장하지만, 무역원활화협정에 포함시키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견해도 표시하였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위험관리에 대한 견해를 바꾸었는데, 6월에 중국과 발표한 W49를 보면 위험

---

26) 우리나라는 이를 Single National Focal Point로 표현하였으나, 이는 후에 Single Enquiry Point로 표현을 바꾸었다.

관리의 사용을 협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으며, 위험관리의 일부로 도착전 처리와 사후검사의 도입도 협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여기와 관련 공동제안서를 다수 제출하였고, 최종 협정문에는 위험관리, 도착전처리 및 사후심사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었다.

○ 우리나라가 여타 국가들과 공동제출한 W85에서는 통관절차와 서류 및 정보수집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사용하자는 제안이 들어 있었다. 이는 서류 형태의 조화와 표준화로부터 비롯된 공동제안으로 볼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수집하는 정보와 전자정보의 교류에 대해서는 UN EDIFACT의 기준, 그리고 서류에는 UN Layout Key나 UNeDocs의 기준을 쓰자고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통관개혁에서 우리나라의 세관서류를 UN Layout Key에 따라 개정하였고, 전자통관을 도입할 때 전자서류의 모양이 문서서류와 똑같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인 바 있다. 서류의 형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면 각 국가의 언어나 영어에 미숙해도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문서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기준의 사용은 권장사항으로 최종 협정문에 포함되었지만, 의무사항으로 포함되지는 않았고, 서류의 조화와 표준화는 최종 협정문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 우리나라는 W18에서 싱글윈도우를 협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고, W100과 W138에서 많은 회원국들과 싱글윈도우에 대한 공동제안을 제출하였다. W100에서는 싱글윈도우에 상당히 강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싱글윈도우는 국제기준을 사용하고, 각 회원국은 싱글윈도우 설립 후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하며, 싱글윈도우에게 화물의 반출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제안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W138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W100보다는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WTO 통보의무를 유지하였고, 싱글윈도우에 제출한 정보는 여타 정부부처가 요청할 수 없다는 조건과 전자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하였다. 또한 싱글윈도우는 WCO와 UN/CEFACT의 기준을 따르자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최종협상문에는 싱글윈도우 설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싱글윈도우를 WTO 무역원활화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싱글윈도우에 제출한 정보는 여타 정부부처가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은 포함되었지만, 국제기준을 사용하자는 내용은 최종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서류처리에 관한 과제들을 볼 때 싱글윈도우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정문에서 싱글윈도우의 설

립이 강력한 권장상태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를 제안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안이 성공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수수료 및 요금과 관련하여 W94를 공동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수수료와 요금은 수출입절차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징수되고 공표되어야 하며 공표 전 징수될 수 없고, 그 금액은 실비의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수입품의 가치에 따라 측정되면 안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영사관 수수료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종 협정문에서는 이 조건들의 대부분이 수용되었으나 영사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수용되지 않았다.

○ GATT 제V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W34를 제출하였다. 이 문서의 주요 제안은 통과화물에 대해서는 보통 화물보다 더 간소화된 절차를 사용하도록 각 회원국이 자국 통관절차를 검토하고, 환적하지 않는 통과화물에 대해서는 보통 화물보다 부담이 적은 절차를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에서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국가를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 신고시 일부 정보를 상업적 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서류와 수수료를 단일화하도록 권장하였으며, 환적하는 화물의 경우 회원국 세관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수출입업체나 운송업체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중 일부 내용은 최종 협정문에 반영되었지만, 환적화물에 대한 내용은 최종 협상문에 대체로 포함되지 않았다.

○ 개발도상국 차별대우 및 혜택과 지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각 제안 문서에서 포함된 제안과 관련된 차별대우와 지원을 언급하였지만, 전반적인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제안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최대한의 준비기간 및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필요한 경우 다자적 차원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개발도상국 차별대우와 지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일부 제안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역량에 따라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차별대우 및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 총괄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안과 최종 협정문의 결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부 분야(단일질의처, 문서의 조화 및 표준화, 위험관리, 사전처리와 사후심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심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제안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내용의 대부분은 기존 GATT협정이나 개정교토협약의 조항과 취지

를 계승하는 제안들로 대다수 WTO 회원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비교적 논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제안은 여타 회원국들의 제안과 유사하였고, 따라서 그 내용은 최종 협정문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

○ 우리나라의 야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싱글윈도우, 위험관리, 사전처리와 사후검사에 대한 내용이 최종협정문에 포함되었고, 서류의 조화와 표준화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류 및 통관절차에서 국제기준의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안들이 상당히 많이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제안한 후,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이 여기에 동의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협상력과 우리나라 제안의 논리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GATT협정의 3개조에 대하여 제안을 제출하였지만,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및 지원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우리나라가 WTO나 여타 국제통상 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간의 교량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5. 협정타결의 기대효과

○ 1947년 GATT협정의 발효 이후 8차례의 무역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GATT 회원국들은 관세율을 크게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1932년에는 세계의 평균(단순)관세율이 59%이었지만, 동경라운드가 완료되었을 때 공산품의 평균관세는 4.7%로 떨어졌고<sup>27)</sup>, 2001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산업별 수입가중평균관세율은 3.1%, 개발도상국의 산업별 수입가중평균관세율은 1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국제교역에 따르는 각종 거래비용의 규모는 국제교역 총금액의 약 2-15%로 추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DDA협상을 앞두고 추가적 관세인하보다는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무역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WTO 회원국들은 인식하기 시작하였다<sup>28)</sup>.

○ 무역원활화 관련 초기 연구들을 보면 여러 연구에서 행정적 또는 절차적 무역장벽을 제거할 때 관세인하보다 더욱 많은 혜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27) UNESCAP (2002) p.79-80

28) 양준석(2005) p.54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UN NCITD(1971)은 무역과 관련된 서류비용이 수입품 가치의 7.5%라고 계산하였고, 향후 서류비용을 수출입의 10-15%로 추정하였다. 스웨덴의 무역원활화 협력단체인 SWEPRO는 1980년대 초에 서류와 절차에 따르는 비용은 무역상품 가치의 8%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EC(1989)에서는 서류비용이 무역상품 가치의 3.5-7%라고 추정하였다<sup>29)</sup>. 김상겸·박인원(2001)은 우리나라기업들을 검토한 결과, 통관절차의 개선으로 거래비용이 5.2%-20.6% 감소하였다고 추정한 바 있다.

○ 1990년대부터는 무역원활화가 국제무역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결과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전세계 경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Е) 모델이나 거리와 GDP규모로 무역의 규모를 추정하는 중력모델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Mann, Otsuki and Wilson (2004)에 따르면 현재 무역원활화 수준이 국제평균보다 낮은 국가들이 그들의 수준과 국제평균간의 차이를 반으로 줄일 경우 전세계적으로 무역의 규모가 최대 3,770억 달러만큼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럽위원회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세계 무역액의 약 2%에 해당하는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6). 국내의 연구로는 김상겸 외(2006)에서 APEC회원국들의 무역원활화 조치로 APEC 회원국들의 거래비용이 5%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GDP는 2.07%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한 무역원활화의 개념은 WTO의 정의가 아닌 세계은행이나 APEC의 정의로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효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 반면, 이창수 외(2004)에서는 무역원활화의 내용을 WTO 정의로 한정시킨 후, 무역원활화 지수를 계산한 후, 이를 10% 개선한 경우를 중력모델로 분석하니 전세계 교역량이 3.8%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국가 그룹별 영향도 계산한 바, 무역원활화의 이득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컸다. 선진국은 이미 상당히 많은 무역원활화 조치를 도입하였으므로 10% 감소폭은 절대수치로 보았을 때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아직 무역원활화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 감소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 또한, GATT 제V조, 제VIII조와 제X조에 관련된 내용을 각각 따로 검토한 결과, 제VIII조에 대한 개선사항이 가장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

29) OECD(2001) p.10

○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이 무역원활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역의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세계 무역량과 GDP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무역원활화의 영향을 다소 과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먼저 선진국과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개정교토협약을 통해서, 또는 자국의 통관개혁을 통해서 이미 무역원활화 조치를 많이 도입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역원활화협정이 통관절차관련 거래비용을 줄일 것이지만, 실제로 비용을 얼마나 줄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서는 무역원활화 조치가 발효되면 거래비용이 일정한 비중의 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이 가정이 얼마나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 따라서 실제효과는 추정효과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는데, 무역원활화협상에서 부담이 큰 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는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일부 조치는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야 발효될 것임을 고려하면 실제효과는 추정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원활화협정은 WTO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협정이다. 관세나 쿼터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중요성은 감소되고 있으므로 행정적 규제에 따르는 무역장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WTO에서 다루지 못하면 WTO의 정당성은 약화될 것이고, 행정적 규제를 다룰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제무역 자유화는 한계에 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찰자들은 무역원활화협정으로 무역의 거래비용이 약 10%는 감소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sup>30)</sup>. WCO가 이러한 행정적 규제 제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WCO의 정책은 세관에 제한되고, 구속성이 WTO보다 약하므로 WCO의 정책 중 중요한 일부를 WTO 차원에 가지고 올 필요가 있었고, 세관뿐만 아니라 통관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에 확대 적용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협정은 향후 WTO 어젠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

30) Economist (2013)

## 제 II 장 무역원활화협정 조문별 해설

제2장의 조문별 분석은 양준석(2006b, 2006c), Yang(2009a, 2009b), 임혜준(2011) 등의 선행연구와 UNESCAP(2002)의 내용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과거 협상 토의는 이들 자료 외에 WTO(2006, 2009)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WTO 무역원활화협정과 WCO 개정교토협약의 비교에는 South Centre(2013)를 참고하였으나, 그 분석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전자통관과 정보통신기술에 관련된 사항은 WCO(2014)를 참조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인용한 내용을 일일이 지적하면 분량이 복잡할 주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각주는 생략하기로 한다.

## 1. 무역원활화협정에 대한 결정문

###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DRAFT MINISTERIAL DECISION

The Ministerial Conference,

Having regard to paragraph 1 of Article IX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WTO Agreement");

Decides as follows:

1. We hereby conclude the negotiation of an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the "Agreement"), which is annexed hereto, subject to legal review for rectifications of a purely formal character that do not affect the substance of the Agreement.

2. We hereby establish a Preparatory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the "Preparatory Committee") under the General Council, open to all Members, to perform such function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e expeditious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nd to prepare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Agreement upon its entry into force. In particular, the Preparatory Committee shall conduct the legal review of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receive notifications of Category A commitments, and draw up a Protocol of Amendment (the "Protocol") to insert the Agreement into Annex 1A of the WTO Agreement.

3. The General Council shall meet no later than 31 July 2014 to annex to the Agreement notifications of Category A commitments, to adopt the Protocol drawn up by the Preparatory Committee, and to open the Protocol for acceptance until 31 July 2015.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X:3 of the WTO Agreement.

□ 번역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 제9조 제1항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무역원활화 협정(“협정”) 협상을 타결하며, 협정은 실질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순수하게 형식적인 성격의 정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조건으로, 동 각료결정에 부속된다.

2. 우리는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협정 발효시 협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 무역원활화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를 일반이사회 산하에 설립한다. 특히, 준비위원회는 상기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법률 검토를 수행하고, A유형의 약속 통보를 접수하며, 동 협정을 WTO협정 부속서1A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의정서”)를 작성한다.

3. A유형 약속의 통보를 이 협정에 부속시키고, 준비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의정서를 채택하며, 그 의정서를 2015년 7월 31일까지 수락을 위해 개방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31일 이전에 일반이사회가 개최된다. 의정서는 WTO 협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발효한다.

## □ 취지

○ 이 결정문은 “순수하게 형식적인 성격의 정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조건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이 성립되었음과, 동 협정이 WTO 협정의 하나로 발효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즉, 무역원활화협정 자체가 아니라 동 협정의 타결을 선언하고 있는 문서로 협정의 일부는 아니다. 이 결정문에는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과 함께 협정의 법률 검토를 수행하고, 개발도상회원국들의 약속 통보를 접수하며, 동 협정을 WTO협정 부속서1A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협정발효시 협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원활화준비위원회를 설립함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준비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어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의정서는 2015년 7월 31일까지 수락을 위해 개방되며, 동 의정서는 WTO협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발효될 것임을 명시하였다.

## 2. 무역원활화협정

### 전문

####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 Preamble

*Members,*

*Having regard to* the negotiations launched under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Recalling and reaffirming* the mandate and principles contained in paragraph 27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and in Annex D of the Decision of the Doha Work Programm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as well as in paragraph 33 of and Annex E to th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5)/DEC);

*Desiring to* clarify and improve relevant aspects of Articles V, VIII and X of the GATT 1994 with a view to further expediting the movement,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cluding goods in transit;

*Recognizing* the particular needs of developing and especially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desiring to enhanc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Recognizing* the need for effective cooperation among Members on trade facilitation and customs compliance issues;

Hereby *agree* as follows:

## □ 번역

### 무역원활화협정

#### 전문

회원국들은,

다자무역협상인 도하 라운드와 관련하여, 도하 각료 선언 제27항과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도하 작업 계획 결정 부속서D 및 홍콩 각료선언 제33항과 부속서 E에 포함된 위임 및 원칙을 상기하고 재확인하며, 통과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더욱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GATT 1994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관련 사항을 명확화하고 개선하기를 희망하며,

개발도상회원국 및 특히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특정한 필요를 인정하고 이 분야의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무역원활화 및 세관 준수 문제에 관한 회원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 필요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 취지

○ 전문은 무역원활화협정이 다자무역협상인 도하 라운드와 관련하여 마련되었으며, 이는 통과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더욱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GATT 1994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관련 사항을 명확화하고, 또 개선하기를 희망하여 성립된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 전문에는 또한 개발도상회원국 및 특히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예외적 조치의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분야의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한다는 것과, 무역원활화 및 세관 준수 문제에 관한 회원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의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3. 제1절(SECTION I )

#### 제1조 : 공표 및 정보의 이용가능성

##### 1) 제1조제1항. 공표

#### SECTION I

#### ARTICLE 1: PUBLICATION AN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 1. Publication

1.1 Each Member shall promptly publish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a non-discriminatory and easily accessible manner in order to enable governments,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 (a) procedure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including port, airport, and other entry-point procedures), and required forms and documents;
- (b) applied rates of duties and tax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 (c) fees and charges imposed by or for governmental agencies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 (d) rules for the classification or valuation of products for customs purposes;
- (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ing to rules of origin;
- (f) import, export or transit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 (g) penalty provisions for breaches of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ities;
- (h)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 (i) agreements or parts thereof with any country or countries relating to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and
- (j) procedure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of tariff quotas.

1.2 Nothing in these provisions shall be construed as requiring the publication or provision of information other than in the language of the Member except as stated in paragraph 2.2.

## □ 번역

### 1. 공표

1.1 각 회원국은 다음의 정보를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가. (항구, 공항 및 그 밖의 반입 지점 절차를 포함하는)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 그리고 요구 형식 및 서류

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조세의 실행 세율

다.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 기관에 의해 또는 정부기관을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라. 관세 목적의 상품 분류 또는 평가 규칙

마.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 및 행정적 결정

바.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제한 또는 금지

사.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아. 불복청구 절차

자. 수입, 수출 또는 통과 관련 한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합의 또는 그 부분

차. 관세 쿼터 시행 관련 절차

1.2 제2.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의 어떤 것도 회원국의 언어 이외의 언어로 정보의 공표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무역원활화를 위해서는 수출 및 수입통관, 화물의 통과 등 국경 절차에 대한 주요 규정들의 공개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 내용을 각각 열거하여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일부 회원국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규정의 비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표시 사용하는 언어에 어떤 의무를 부여하지는 아니하였다.

## □ 내용요약

○ WTO 각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국경절차 즉, 수출통관, 수입통관, 반송통관, 환적화물, 통과화물 등과 관련한 각종 절차와 그에 따른 서류, 각종 조세와 부과금의 내용, 통관 또는 통과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정과 이러한 통관 또는 통과 과정에서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정부나 무역업자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게 신속하게 공포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공표는 회원국의 언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실행 가능할 경우 WTO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이를 공표하는 것을 권장한다.

## □ 해설

○ GATT<sup>31)</sup> 제10.1조에 의하면 모든 GATT/WTO 회원국은 “관세목적에 위한 상품의 분류 또는 평가,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의 율, 수입 또는 수출, 또는 이를 위한 지급이전에 대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이거나 상품의 판매, 유통, 운송, 보험, 창고보관, 검사, 전시, 가공, 혼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그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법률·규정·사법판결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을 “각 정부 및 무역업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공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간에 유효한, 국제무역정책에 영향을 주는 협정」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GATT 제10.1조에서는 최혜국대우(MFN)원칙과 비차별원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GATT 제1조에서 MFN원칙, 제4조에서 비차별원칙을 회원국들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제10.1조의 정보제공에서도 이 원칙들이 적용한다고 각종 GATT 및 WTO 판결문은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 제1.1조는 이러한 원칙을 모아놓고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공표를 의무화하는 각 정보는 GATT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들이다. 주목할 점은 가국이 체결한 FTA 등도 수출입 및 통관에 관련된 협정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 이 조항은 GATT 제10.1조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개정교토협약 제9조(관세

31) 여기에서 GATT란 1994년 GATT를 의미한다. 이하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동일한 의미다.

청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 결정과 판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좁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WCO 개정교토협약(이하에서 ‘개정교토협약’이라 한다.) 9.1에서는 표준(standard)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관세법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반면 개정교토협약은 각 회원국의 관세분야에만 적용되는 반면, 무역원활화협정은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따라서 각 회원국은 정보를 관리하는 부처를 확실히 정해야 하고, 각 부처가 맡은 업무 및 의무, 그리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주로 세관)의 역할을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 각 부처간 업무와 의무를 확실히 정리해야 책임성이 제고되어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이 정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WCO(2014)는 여러 부처들로부터 발행하는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통신 도구인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권장하며, 이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기관의 웹사이트 및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종합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Content Management System을 권장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의 공표나 고객의 응답절차 작업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2)</sup>. 또한 각 부처들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데에 대해서 WCO Recommendation on the Use of World Wide Web를 권장하고 있다.

○ 무역원활화의 초기협상시 어떤 종류와 범위의 정보 공개화를 의무화할지에 대해 회원국들은 상당히 다양한 견해를 표시한 바 있다. 일부 국가들은 무역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자는 의견이었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무역원활화협정이 분쟁의 대상이 될 경우 제소의 가능성을 염려하여 GATT협정에서 규정하는 내용만 의무화시키자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한편, 공표의 의무를 자국 언어를 원칙으로 하여 회원국 정부에 대한 행정적 부담과 법적 제소의 가능성을 제한시키고 있다. 법령이나 규제가 자국 언어로만 쓰여진 경우, 외국 무역업자들은 그 법을 이해하거나 실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시 일부 국가들은 무역과 관련된 주요 국내법을 영어 및 WTO 공식어로 번역할 의무를 부과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는 이러한 번역작업은 상당히 많은 고급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

32) WCO (2014) p.1/3-1/5

며, 이러한 번역문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GATT 제10.1조의 공표의무는 유지하였지만, 번역할 의무는 부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아래의 제2.2항에서는 이러한 번역작업을 권장하고 있다. 참고로 개정교토협약에서는 법 및 어떤 규제내용을 외국어로 번역할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 2000년대 초까지 미국은 그들의 NTE 보고서에서, 그리고 EU도 우리나라와 관련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법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을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주기를 바란 바 있다. 그 당시 일부 법이 영어로 번역되었지만 번역품질이 별로 좋지 않았고, 법적효력도 없어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한 면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제처 등에서 과거보다 높은 질의 영문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번역문에 법적 효력을 부과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협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번역문에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싶어 한 국가들은 국제어를 표준어로 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넓은 의미의 통관절차, 환적절차,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절차(관세법령, 관세법령 관련 각종 고시, 대외무역법 및 동법에 의해 고시된 통합공고에 규정된 각종 법령)<sup>33)</sup>
- 관세 및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과세(관세법 및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관련법)
- HS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HS 협약 및 관세법, WTO 관세평가협정)
- 비특혜 목적 및 특혜목적의 원산지규정(관세법, FTA 관세특례법)
- 관세형별 및 관세행정질서법(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행정심판제도 및 행정소송제도(관세법, 국세기본법 등)
-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FTA) 및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특혜무역협정, 우리나라와 외국간 체결한 양자간 협정
- 관세쿼터 운영제도(WTO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할당관세나 FTA 등에 의한 쿼터 등)

33)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되는 우리 제도는 넓게 볼 때 이와 같이 수출입과 관련되는 모든 국내법령에 규정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협정과 주로 관련되는 것은 좁은 의미의 통관 즉, 물품의 수출, 수입, 반송 및 통과와 관련된 세관절차이므로 이하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절차와 관련된 제도를 '관련되는 우리제도'로서 적시하기로 한다.

## □ 기대효과(활용방안)

○ GATT 제10조에서는 각 정부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지 다소 불확실한 점이 있었는데, 무역원활화협정 제1.1조에 의하여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열거된 내용들이 이미 충분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 관련 통관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도 대개 이러한 정보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이 규정은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그리고 적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는 어떤 정보들을 공개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개가 충분하지 아니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국가와의 세관협력회의, 혹은 FTA이행을 위한 협력회의 등에서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국으로 하여금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적정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할 것이다.

## 2) 제1조제2항.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

### 2.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Internet

2.1 Each Member shall make available, and update to the extent possible and as appropriate, the following through the internet:

- (a) a description<sup>34)</sup> of its procedure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including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that informs governments,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of the practical steps needed for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 (b) the forms and documents required for importation into, exportation from, or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 (c) contact information on its enquiry point(s).

2.2 Whenever practicable, the descrip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1(a) shall also be made available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WTO.

2.3 Members are encouraged to make available further trade-related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including relevant trade-related legislation and other items referred to in paragraph 1.1.

## □ 번역

### 2.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

2.1 각 회원국은 다음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적절한 경우, 이를 갱신한다.

가.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수입, 수출 및 통과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단계를 알려주는, 불복 절차를 포함한,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의 설명<sup>35)</sup>

나. 회원국 영역으로의 수입, 회원국 영역으로부터의 수출, 또는 회원국 영역을 통한 통과를 위해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다. 질의처에 관한 연락 정보

2.2 실행 가능한 경우, 제2.1항 가호에 언급된 설명은 WTO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3 회원국은 관련 무역관련 입법과 제1.1항에 언급된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한 추가적인 무역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장려된다.

## □ 취지

○ 이 조항은 각국 정부, 무역업자 및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무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

34) Each Member has the discretion to state on its website the legal limitations of this description.

35) 각 회원국은 이 설명의 법적 제한을 웹 사이트에 언급할 재량을 가진다.

어도 수출입 및 통과절차와 이에 필요한 서류, 불복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문의처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알려주도록 적극 권장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각 회원국은 정부, 무역업자 및 무역과 관련된 그 밖의 이해당사자들이 적어도 수출입통관 및 물품의 통과절차, 불복절차, 통관 및 통과에 필요한 각종 서식, 질의처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1항1호에 열거한 사항과 그 밖에 무역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장려된다.

○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가능한 한 최신 내용으로 이를 갱신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이러한 정보는 WTO 공식언어 중 하나로 공표하여야 한다.

## □ 해설

○ 우루과이라운드의 종료 이후 인터넷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모든 WTO 회원국들이 정부의 업무를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정보의 공표에 있어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역에서도 인터넷 사용은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는 인터넷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표나 전자서류 처리가 GATT/WTO 협정에 합치한지 애매한 점이 있었다. 이 조문은 인터넷 사용을 허용할 뿐이 아니라 효율적인 정보 공표 방법으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 GATT/WTO 협정을 보면 정보전달방법 중 일부는 사용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정보전달방법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복수간협정인 WTO 정부조달협정의 1997년판 제13조 1(a)항을 예로서 보면 텔렉스, 전보 및 팩스로 들어오는 입찰은 허용하지만 전화로 들어오는 입찰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이나 전자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일부 회원국들은 인터넷 전자입찰이 협정에 합치한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고, 2014년 4월 발효된 개정 협정문을 보면 인터넷과 전자입찰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조항도 역시 인터넷을 통한 공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인터넷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조항이다.

○ 본 조항에서 유의할 것은 협정문이 인터넷을 통한 공표의 의무를 가능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등 상황이 적합하지 않거나, 법적 차원에서 공표가 적절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터넷의 사용을 최대한 권고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는 정보 중 수출입 및 통과절차, 불복(항소)절차에 대한 정보와 수출입과 화물통과에 대한 서류 및 질의처 정보에 일단 중요성을 두고, 기타 정보는 제2.2항에서 최대한 다른 정보도 공표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였다.

○ 반면, 개정교토협약에서 IT기술을 다루는 제7장의 규정을 보면 인터넷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서류의 사용도 무시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개정교토협약 협상 때는 인터넷과 전자통관의 사용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WCO (2014, p.I/5)에서는 정보의 공표와 관련 여러 부처의 웹사이트나 자료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여러 부처의 업무를 하나의 절차로 묶기 위해서 Content management System을 권장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의 정보를 수출입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디자인해야 하는데 여기에 WCO Recommendation on the Use of World Wide Web를 권장하고 있다.

○ 한편, 인터넷에 공표하는 언어를 WTO 공식언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것은 언어가 무역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수출입절차를 자국어로만 공표하는 경우, 특히 자국어가 국제적으로 별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의 경우, 여타 국가들의 수출입업체는 수출입절차를 지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외국업체들은 여타 국가들의 정부가 정보를 WTO 공용어, 특히 영어로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국가들에서는 유능한 다국어 번역자의 숫자가 부족하고, 번역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법문 해석의 차이 때문에 외국어 번역문을 법문으로 인정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1.2항에서는 각 회원국이 외국어로 법령이나 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는 외국업체의 정보접근이 용이한 인터넷에서 외국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법적문제를 염려하는 정부의 입장과 공용어 해설을 원하는 민간업체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 평가된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관세법(제226조 내지 제261조)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 정보의 접근성은 증가하며, 이는 특히 정보수집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간주된다. 또한 서류형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서류 처리의 상당부분을 수출국/본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 현지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잘 실현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는 수입국에게도 도움이 된다. 정보 및 서류가 인터넷으로 공표되는 경우, 수출업체가 절차를 지키거나 서류를 잘 작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어 법과 규제의 준응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는 이미 관세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부처들이 무역 내지 통관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이 조항은 우리나라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급 확대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 제1조제3항. 질의처

#### 3. Enquiry Points

3.1 Each Member shall, within its available resources, establish or maintain one or more enquiry points to answer reasonable enquiries of governments,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on

matters covered by paragraph 1.1 and to provide the required forms and docum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1(a).

3.2 Members of a customs union or involved in regional integration may establish or maintain common enquiry points at the regional level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3.1 for common procedures.

3.3 Members are encouraged not to require the payment of a fee for answering enquiries and providing required forms and documents. If any, Members shall limit the amount of their fees and charges to the approximate cost of services rendered.

3.4 The enquiry points shall answer enquiries and provide the forms and documents within a reasonable time period set by each Member, which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r complexity of the request.

## □ 번역

### 3. 질의처

3.1 각 회원국은 제1.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합리적인 질의에 답하기 위해, 그리고 제1.1항 가호에 언급된 요구 양식 및 서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범위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질의처를 설립 또는 유지한다.

3.2 관세동맹의 회원국 또는 지역 통합에 관여하는 회원국은 공통 절차를 위해 제3.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차원의 공통 질의처를 설립 또는 유지할 수 있다.

3.3 회원국은 질의에 답하고 요구 양식과 서류를 제공하는데 대한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도록 장려된다. 만일 요구하는 경우, 회원국은 수수료 및 부과금의 금액을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한정한다.

3.4 질의처는 각 회원국에 의해 규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질의에 답하고 양식과 서류를 제공한다. 그러한 기간은 요청의 성격 또는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 취지

○ 이 규정은 수출입과 통관절차 또는 관세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신속하게 답해줄 수 있는 담당자, 또는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업자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각 회원국은 공표되는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에 답하고, 공표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양식 등을 제공하는 질의처를 운영하여야 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내에 답변을 하고, 이러한 답변 및 요구양식과 서류를 제공하는데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을 것이 장려되며, 만일 징수하더라도 실비로 한정하여야 한다.

## □ 해설

○ GATT 제10조나 제8조에는 회원국에게 정보를 공표할 의무를 부여하였지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응답해야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와 정부간 질문이 있는 경우, 이를 응답하는 것이 관례이었고, 무역정책검토제도(WTO협정 부속서 3의 TPRM)에서는 한 회원국 정부가 다른 회원국 정부에게 수출입절차나 관세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 수출입업자들이 질문을 가진 경우, 회원국 정부가 여기에 응답할 의무는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출입업자들이 답변을 받고 싶으면 정부를 통해서 질문을 제기해야 하였는데, 여기서 특히 중소기업들은 질문을 할 기회가 잘 부여되지 않았다.

○ 반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체결된 WTO 기술장벽(TBT)협정과 위생 및 식물

위생(SPS)협정에서는 수출입업체나 생산관련 업체들도 WTO 회원국의 기술법령 또는 규제, 그리고 위생법령과 규제에 대해 질문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기술규제는 상당히 복잡하여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기술규제와 위생규제는 시민들의 안전 및 보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이거나 수출입업체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준수해야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민간업체들도 WTO 회원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안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 이 두 협정에서는 민간업체들이나 여타 회원국 정부가 기술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이를 응답할 수 있는 질의처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기술의 다양성과 복잡성, 위생검사 책임의 분산화 등을 고려하여 회원국 판단하에 필요하면 각 기술부문을 맡는 여러 개의 질의처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정교토협약에서는 각 국가의 관세당국이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무역업체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무역원활화협정에서도 각 회원국에게 질의처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WTO 회원국 대다수는 질의처를 관세당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개정교토협약 제9.4조와 제9.5조에서는 관세당국이 응답해야 하는 질문과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질문하는 업체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질의처의 관점에서 업체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도 제공해 주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질의처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무역원활화협정 제1조에 정의한 내용으로만 한정시키고, 물어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WCO(2014)는 질의처를 운영할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Kyoto IT Guideline 7장에는 질의처 담당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기술하고 있다. 아무리 통관절차에 능통한 전문가라도 통관절차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입업자가 질문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적합한 정보를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WCO(2014, p.I/7)은 강조하고 있다.

○ 무역원활화 협상 초기에 우리나라는 수출입절차와 통관절차에 대해서 질의처가 많은 경우, 수출입업체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

고 판단하여 단일질의처(단일 정보창구)의 설립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안 내용은 단일질의처가 내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이 질의처가 여타 부처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질의자에게 그 답변을 책임지고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자는 것이었다. 싱글윈도우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 제3.1항에서는 관세와 통관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명확한 순응을 위해서는 정보 질의처가 필수적이며, 신속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하나의 질의처가 질의응답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원리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단일질의처를 제안한 최초 국가 중 하나로, 제안 내용을 협정에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그 협상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한 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2항은 EU와 같은 관세동맹에서는 동맹국들이 동일한 관세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통관절차를 유지함으로써 관세동맹의 관세율과 통관절차에 대한 질문을 받을 질의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관세동맹에서는 무역업체들이 절차에 대해서 회원국 담당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조항의 취지는 관세동맹에 있어서 질문을 책임지고 응답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데에 있다. 관세동맹 책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답을 받을 수 있으면, 정확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 동맹국이 규정을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제3.2항은 개정교토협약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의무라고 할 수가 있으며, 개별국가에 부여된 의무라기보다는 관세동맹 공동체에 부여되는 의무이다. WTO는 각 회원국 정부의 공동체이며, 각 회원국은 FTA를 체결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WTO는 관세동맹에 대한 규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sup>36)</sup>, WCO의 회원은 각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한됨으로 이러한 의무를 관세동맹에게 부여할 권리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 제3.3항은 무역업체들이 수출입절차에 관련된 정보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하여 무역업체들의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정보제공비가 간접적인 무역장벽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GATT 협정 설립 이

---

36) GATT 24조에서는 회원국이 FTA 및 관세동맹을 설립하고, 이를 GATT(WTO)에 등록하면 이 FTA나 관세동맹은 회원국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과거에는 일부 국가들이 서류제공이나 수입품 검사 등 수출입절차를 통하여 정부의 수입을 늘리고자, 즉 정부의 이윤사업처럼 수출입절차를 운영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GATT 제8조제1항에서는 수출입절차를 실행하는 데 적용하는 수수료를 실비수준으로 최소화하고, 간접적 무역장벽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수익성 징수금은 관세와 세금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ATT 제10조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러한 실비 제한 규정이 없지만, 대체로 제8조의 적용을 받아 실비로 정보제공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WTO 회원국들은 보고 있다.

○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제9.7조에서 정보를 제공할 때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실비로 제한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협상 초기에는 이러한 무료 또는 실비 정보제공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해주는 민간 무역정보업체들이나 중개업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WTO 회원국들이 있었지만, 민간수익업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정보제공비용 최소화의 원칙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 제3.4항은 질의처가 신속한 시간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여 수출입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 정보의 결여가 무역장벽으로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원활화 협상 초기에 질의처가 신속하게 응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질의처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함으로 질의처가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 회원국들은 질의처가 질문을 접수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답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다. 반면, 또 다른 일부 회원국들은 수출입절차에 대한 책임이 여러 부처에 분산될 수 있고, 정확한 법 또는 규제의 해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 기간을 의무화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개정교토협약 9.4에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역원활화협정에서도 의견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관세법(제226조 내지 제261조)
- 수입통관시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현재 각 부처마다 민원실이 있지만 해당 부서의 일부 업무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민원에 응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의한 단일한 또는 하나 이상의 창구 지정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한 범정부 성격의 단일한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창구는 무역상품의 통관과 통과라는 무역원활화 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취급하면서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두되, 각 부처가 이 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질의처 설립을 처음 제안한 국가들 중 하나이며, 협상 중 질의처와 전자통신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였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개도국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원은 단순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넘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구체적인 물질적 지원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무역업체들이 수출입 및 통관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창구가 지정되므로 해당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체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제1조제4항. 공표

##### 4. Notification

Each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1 of Article 23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the "Committee") of:

- (a) the official place(s) where the items in subparagraphs 1.1(a) to (j) have been published;
- (b) the Uniform Resource Locators of website(s) referred to in paragraph 2.1; and
- (c)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enquiry points referred to in paragraph 3.1.

## □ 번역

### 4. 통보

4.1 각 회원국은 위원회에 다음을 통보한다.

- 가. 제1.1항 가호부터 차호의 사항이 공표된 공식 장소
- 나. 제2.1항에 언급된 웹 사이트 주소(URL) 및 제3.1항에 언급된 질의처의 연락 정보

## □ 취지

○ 이 조항은 제1조에서 공표를 요구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나 방법을 WTO 무역원활화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WTO가 무역원활화협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를 각 회원국으로부터 입수하고, 아울러 회원국과 무역업체들이 정확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각 회원국은 제1조제1항에서 규정된 정보가 공표된 공식장소, 제1조제2항에 규정된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웹사이트 주소(URL) 및 제1조제3항에 규정된 질의처와 연락정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해설

○ 과거 일부 WTO/GATT 회원국은 정보를 공표할 때 외국업체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외국 수출입업체들이 수출입절차를 제대로 준수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외국의 관보나 법전을 구매해야 정보를 구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중개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흔하였다.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TBT 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이 새로운 기술기준이나 정부조달관련 법령 및 규제를 공표할 때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는 매체를 WTO TBT위원회나 정부조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보가 무역장벽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무역업체나 수출입업체들이 각 국가의 법과 규제를 잘 알 수 있게 하여 법과 규제의 준수율을 높이고 무역비용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교토협약에서는 공표매체를 WCO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두지 않았지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나 매체를 통하여 법과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예상가능한 무역환경의 설립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 매체의 통보는 저렴하고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TBT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이 통보한 공표매체를 WTO 웹 사이트를 통하여 모든 관심있는 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역원활화위원회도 이 매체들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를 찾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관세법(제226조 내지 제261조)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수출하고 싶은 기업체가 수출입절차에 관한 법이나 규제를 조사하고 싶은 경우,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매체를 쉽게 찾아낼 수 있으므로 기업차원에서는 무역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부차원에서는 수출입관련 법과 규제의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윈-윈 규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가 없으므로 정부기관이나 KOTRA, 또는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발간하던지, 아니면 이러한 URL을 모

아서 연결시켜주는 허브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바람직한 것은 제1조제3항에 의해 지정되는 창구담당 조직에서 이러한 정보의 게재를 포함하는 허브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참고로 WTO TBT 위원회는 질의처나 정보 공표 사이트 URL 주소를 모은 TBT 허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제2조 : 의견제시 기회, 시행전 정보 및 협의

### 1) 제2조제1항. 의견제시 기회 및 시행 전 정보

#### ARTICLE 2: OPPORTUNITY TO COMMENT, INFORMATION BEFORE ENTRY INTO FORCE, AND CONSULTATIONS

##### 1. Opportunity to Comment and Information before Entry into Force

1.1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provide opportunities and an appropriate time period to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comment on the proposed introduction or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ed to the movement,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cluding goods in transit.

1.2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ensure that new or amended laws and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ed to the movement,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cluding goods in transit, are published or information on them made otherwise publicly available, as early as possible before their entry into force, in order to enable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1.3 Changes to duty rates or tariff rates, measures that have a relieving effect, measures the effectiveness of which would be undermined as a result of compliance with paragraphs 1.1 or 1.2, measures applied in urgent circumstances, or minor changes to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are each excluded from paragraphs 1.1 and 1.2.

## □ 번역

### 제2조 의견제시 기회, 시행 전 정보 및 협의

#### 1. 의견제시 기회 및 시행 전 정보

- 1.1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국내법 및 법제도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통과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및 규정의 도입 또는 개정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와 적절한 기간을 제공한다.
- 1.2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국내법 및 법제도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통과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 및 규정이 시행 전 최대한 신속하게 무역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되거나, 또는 이에 관한 정보가 달리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 1.3 관세율의 변화, 그리고 경감 효과를 지니거나 또는 그 효과가 사전 공표에 의해 저해될 수 있는 조치, 긴급 상황에서 적용되는 조치, 또는 국내법 및 법제도의 미미한 변경은 상기 제1.1항 및 제1.2항에서 제외된다.

## □ 취지

○ 이 조항은 새로운 수출입절차나 수출입절차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이를 사전에 공표하고 내국인에게와 같이 외국인들에게도 자기들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절차나 규제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나 규제의 효율성과 준수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피규제자들에게 사전에 공표되면 효과 및 효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조치나 긴급상황에서 적용되는 조치 등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 내용요약

○ 각 회원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내국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상품의 통관 및 통과와 관련한 법 및 각종 규정과 개정되는 법 및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 및 규정이 있을 경우 시행 전 최대한 신속하게 무역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되거나, 또는 이에 관한 정보가 달리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사전 공개가 법 및 규정의 개정취지에 알맞지 않거나 긴급상황에서 적용되는 조치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 □ 해설

○ 무역원활화협정은 개정교토협약에서 제시한 통관절차와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1990~2010년 사이 활발한 국제적 논의가 있었던 규제개혁 특히 규제투명성의 개념과 최근 5년간 논의해온 규제수렴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제2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었다.

○ 흔히 투명성을 논의할 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그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동적(passive)”인 투명성만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정부는 그들의 법령이나 규제를 발표하기만 하면 그들의 투명성 의무를 만족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GATT 제X조가 이러한 수동적 투명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공표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가 규제의 설립 및 집행에 있어서 피규제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며, 정보를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제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이후 규제개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적용되고 있다.

○ OECD는 규제투명성을 “피규제자들이 그들의 법적의무를 확인하고 이해하며, 이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피규제자들이 정부가 결정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정보의 투명성을 넘어서, 법령이나 규제의 설립단계에서 피규제자들이 그들의 의사를 표명하

고, 이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고려하는 절차적 투명성까지 포함된다. WTO 차원에서는 TBT협정과 SPS협정에서 외국 민간업체에게 기술이나 위생 법령에 대하여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규제투명성이 도입되었다.

○ 또한, 최근에는 규제를 합리화시키고 규제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존 규제를 검토하고, 신규규제에 대한 편익분석을 해야 한다는 국내 규제개혁 원칙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규제수렴(regulatory coherence)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TPP 등 양자와 다자 FTA 협상에 규제수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제2조는 이러한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 외국인들에게 규제투명성과 규제수렴의 원칙에 따라 국내 법령이나 규제에 대한 코멘트를 허용하는 경우, 국내업체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해외업체들은 영향을 받는 숨은 무역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법령이나 규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준수하기 쉬운 형태로 법령이나 규제를 조절하여 준수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법이나 규제를 도입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절차가 복잡해지며, 외국인들이 코멘트를 하는 데에 있어서 다국적 대형기업의 영향이 너무 커질 수 있고 외국인들이 국내 법과 규제에 간섭하면 이는 국가 주권의 약화라고까지도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이미 국내기업에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업체들에게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제시 기회를 주는 것은 WTO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 WCO 교토협약에서는 의견제시에 대한 조항이 없지만, WCO(2014)에서는 의견제시 원칙을 지지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전자통신기술은 의견을 접수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원국은 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고, 이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토의 포럼이나 통관절차관련 법과 규제를 논의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SN)도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7)</sup>.

○ 우리나라 국내규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법이나 규제의 대부

---

37) WCO(2014) p.I/8

분은 의회 통과와 발효 사이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규제투명성 개념 중 하나로 기업들이 새로운 법이나 규제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원활화 협상 초기에는 일정한 기간의 준비기간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각 회원국 정부의 융통성을 제한하고, 회원국마다 공표 능력이나 정보 확산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기간의 구체화를 반대하였다. 따라서 현재 규정은 이러한 원칙을 살리되, 기간을 의무화시키거나 구체화시키지 않아 각 회원국의 융통성을 최대한 보장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개정교토협약에서는 9.2에서 이러한 의무를 각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부여하고 있으며, OECD 등 여러 국제기구들도 투명성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정보 공표 정책을 권장하고 있다. WTO TBT협정이나 SPS협정에도 유사한 사항들이 있다.

○ 한편, 관세율의 변화나 수출입절차의 변화가 집행 이전에 일부 수출입업체들에게 노출되는 경우, 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도 있고, 새롭게 도입되는 관세율이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수출입업자들의 행동이 왜곡될 수 있다. 일례로 밀수범의 경우, 밀수상품을 찾기 위한 새로운 검색절차를 도입한다는 것을 미리 알면 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밀수행위를 앞당길 수 있다. 제2조의 1.3항에 규정한 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GATT 제X조 제1항에서도 법의 집행이나 공공목적에 저해하거나 민간기업의 이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표의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합의한 이행각서에 따르면 사전공표는 불가능하다고하여도, 일단 집행이 시작될 때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sup>38)</sup>.

○ 또한, 미미한 변경을 일일이 공표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수출입업자와 관세당국 또는 통관절차 담당부처간 필요없는 마찰을 빚을 수 있으므로 사소한 변경의 경우, 공표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미미한 변경사항을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은 통관담당 부처의 행정효율 및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미미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해 다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다.

○ 정부기관은 새로운 법이나 규정, 또는 개정된 법 및 규정이 있을 경우 시행

38) Analytical Index p.300

전 최대한 신속하게 무역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집행 필요상 실행이전 비밀로 남겨야 하는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치가 발효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표해야 할 것이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 관보규정
- 법제업무운영규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이 조항에 따라 WTO 회원국들의 수출입절차 관련 법과 규제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입수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해 해당국에 이해관계를 가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출입 및 국제경쟁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이러한 정보를 공표하는 매체가 WTO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통보되어 국내기업들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지만, 중소기업들이 여러 국가들의 규정 변화를 각 국가마다 모니터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KOTRA 또는 KITA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를 한 허브 사이트에서 정리하고 주요국의 주요 변화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정보 메커니즘(무료 또는 유료)을 만들면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범국가적 차원에

서 주요 무역상대국의 신규 법안이나 규제안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입절차 관련 법과 규제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자료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수준에서 사전에 공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외국업체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제출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의 적절한 수렴은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2) 제2조제2항. 협의

### 2. Consultations

Each Member shall, as appropriate, provide for regular consultations between its border agencies and traders or other stakeholders located within its territory.

## □ 번역

### 2. 협의

각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그 영역 내의 국경기관과 무역업자 또는 국경기관과 그 밖의 이해당사자간의 정기적인 협의를 제공한다.

## □ 취지

○ 협정문을 이행하고, 규정을 집행할 때 정부부처, 무역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무역환경이 변하여 협정의 집행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정부와 피규제자들이 대화를 통하여 무역원활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러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 내용요약

○ 각 회원국은 국내의 국경기관과 무역업자(또는 그 밖의 이해당사자)간 정기적인 협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해설

○ 정부(규제담당자)와 피규제자들간 정기적인 논의를 통하여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준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을 감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규제투명성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또한 기존 UR/WTO 협정에서 보았듯이 협상 후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무역환경이 변할 수 있는데, 협정의 집행방법도 이에 맞추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큰 변화는 새로운 라운드 재협상이나 적합한 WTO 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수정해야 하겠지만, 사소한 변화는 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규정은 이러한 협의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 관보규정
- 법제업무운영규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 기대효과(활용방안)

○ 현재 무역상품의 통관 및 통과와 관련된 국경기관은 다수가 있고, 이들 기관은 나름대로 이해당사자들과 다양한 협의채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정비되고, 통합된, 그리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러한 협의체를 통한 정기적인 협의는 국경기관간의 협조와 정부기관과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게 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적인 이행에 기여할 것이다.

### 제3조 : 사전심사

#### ARTICLE 3: ADVANCE RULINGS

1. Each Member shall issue an advance ruling in a reasonable, time-bound manner to the applicant that has submitted a written request containing all necessary information. If a Member declines to issue an advance ruling, it shall promptly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setting out the relevant facts and the basis for its decision.

2. A Member may decline to issue an advance ruling to the applicant where the question raised in the application:

- (a) is already pending in the applicant's case before any governmental agency, appellate tribunal, or court; or
- (b) has already been decided by any appellate tribunal or court.

3. The advance ruling shall be valid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its issuance unless the law, facts, or circumstances supporting that ruling have changed.

4. Where the Member revokes, modifies, or invalidates the advance ruling, it shall provide written notice to the applicant setting out the relevant facts and the basis for its decision. Where a Member revokes, modifies, or invalidates advance rulings with retroactive effect, it may only do so where the ruling was based on incomplete, incorrect,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5. An advance ruling issued by a Member shall be binding on that Member in respect of the applicant that sought it. The Member may provide that the advance ruling is binding on the applicant.

6. Each Member shall publish, at a minimum:

- (a)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for an advance ruling, including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and the format;
- (b) the time period by which it will issue an advance ruling; and
- (c) the length of time for which the advance ruling is valid.

7. Each Member shall provide, upon written request of an applicant, a review of the advance ruling or the decision to revoke, modify, or invalidate the advance ruling.<sup>39)</sup>

8.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make publicly available any information on advance rulings which it considers to be of significant interest to other interested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protect commercially confidential information.

9. Definitions and scope:

- (a) An advance ruling is a written decision provided by a Member to the applicant prior to the importation of a good covered by the application that sets forth the treatment that the Member shall provide to the good at the time of importation with regard to:
  - (i) the good's tariff classification; and
  - (ii) the origin of the good.<sup>40)</sup>
- (b) In addition to the advance rulings defined in subparagraph (a), Members are encouraged to provide advance rulings on:
  - (i) the appropriate method or criteria, and the application thereof, to be used for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under a particular set of facts;
  - (ii) the applicability of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relief or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 (iii) the application of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quotas, including tariff quotas; and

(iv) any additional matters for which a Member considers it appropriate to issue an advance ruling.

(c) An applicant is an exporter, importer or any person with a justifiable cause or a representative thereof.

(d) A Member may require that the applicant have legal representation or registration in its territory. To the extent possible, such requirements shall not restrict the categories of persons eligible to apply for advance rulings, with particular consideration for the specific need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se requirements shall be clear and transparent and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 □ 번역

### 제3조 : 사전심사

1. 각 회원국은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 요청을 제출한 신청인에게 합리적이고 기한을 설정한 방식으로 사전심사 결정을 내린다. 회원국이 사전심사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한다.
2. 신청서에 제기된 질문이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국은 신청인에 대한 사전심

---

39) Under this paragraph: (a) a review may, either before or after the ruling has been acted upon, be provided by the official, office, or authority that issued the ruling, a higher or independent administrative authority, or a judicial authority; and (b) a Member is not required to provide the applicant with recourse to paragraph 1 of Article 4.

40) It is understood that an advance ruling on the origin of a good may be an assessment of origin for the purposes of the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where the ruling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Likewise, an assessment of origin under the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may be an advance ruling on the origin of a good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where the ruling meets the requirements of both agreements. Members are not required to establish separate arrangements under this provision in addition to those established pursuant to the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in relation to the assessment of origin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are fulfilled.

사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정부 기관, 항소 재판소 또는 법원에 신청인의 사건이 이미 계류중인 경우, 또는

나. 다른 항소 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경우

3. 기존의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한, 사전심사는 결정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4. 회원국이 사전심사 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관련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적시한 서면 통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회원국이 사전심사 결정을 소급적으로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심사 결정이 불완전, 부정확,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된다.

5. 회원국에 의해 내려진 사전심사 결정은 결정을 구한 신청인에 대해서만 해당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다. 회원국은 사전심사 결정이 신청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6. 회원국은 최소한 다음을 공표한다.

가. 제공되어야 할 정보와 형식을 포함하여 사전심사 결정 신청을 위한 요건

나. 사전심사 결정 기한

다. 사전심사 결정의 유효 기간

7. 신청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은 사전심사 결정 또는 사전심사 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제공한다.<sup>41)</sup>

8. 회원국은 상업적 비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하여,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중요한 이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전심사 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9. 정의 및 범위

가. 사전심사 결정은 신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 이전에 회원국에

---

41) 이 조항에 따라 가. 재심은, 결정이 실행되기 전이나 후에, 결정을 발급한 직원, 부서 또는 당국. 보다 상위의 또는 독립적인 행정 당국, 또는 사법 당국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나. 회원국은 신청인에게 이 협정 제4조제1.1항의 구제신청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의해 신청인에게 제공되는 서면결정으로서, 다음에 대해 수입시에 그 상품에 대해 회원국이 제공해야 하는 대우를 적시한다.

1) 상품의 품목 분류, 그리고 2) 상품의 원산지<sup>42)</sup>

나. 제3.9항 가호에 정의된 사전심사 결정에 더하여, 회원국은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 역시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1) 특정한 사실에 따른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적절한 방법 또는 기준, 그리고 그 적용

2)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회원국의 요건의 적용 여부

3) 관세 할당을 포함하여 쿼터에 대한 회원국의 요건 적용, 그리고

4) 회원국이 사전심사 결정을 발급하기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추가적인 사항

다. 신청인은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모든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다.

라. 회원국은 신청인이 그 영역 안에 법률대리 또는 등록을 가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요건은, 중소기업의 특정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함께, 사전심사결정 신청 자격을 가진 인의 범주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요건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을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

## □ 취지

○ 이 조항은 무역상품의 통관 및 통과와 관련해 회원국 정부기관의 적법성 여부의 심사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미리 심사를 받아 그 의사를 확정해 둬으로써 실제 통관 및 통과과정에서 처리의 신속화 및 예측가능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전심사는 수입절차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줄 수 있으며, 수출입절차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시켜 줄 수 있다. 이 조항에는 품목분류와 원산지판정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사전심사를 규정하였다.

42)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은 그 결정이 이 협정 및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의 목적을 위한 원산지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이와 유사하게,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에 따른 원산지 평가는 그 결정이 두 협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이 될 수 있다. 이 조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회원국들은 원산지 평가와 관련하여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립된 제도에 더하여 이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 □ 내용요약

○ 회원국은 상품의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관세평가, 감면세, 관세할당을 포함한 쿼터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이 장려된다. 사전심사 결정 신청을 위한 요건, 사전심사 결정 기한, 사전심사 결정의 유효 기간 등은 공표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모든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다. 회원국은 신청인이 그 영역 안에 법률대리 또는 등록을 가질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요건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함께, 사전심사결정 신청 자격을 가진 인의 범주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 사전심사 결정을 통보한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한, 사전심사는 결정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회원국이 사전심사 결정을 소급적으로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심사 결정이 불완전, 부정확,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된다.

○ 사전심사 결정은 결정을 구한 신청인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구속력이 있다. 회원국은 사전심사 결정이 신청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은 사전심사 결정 또는 사전심사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제공한다.

## □ 해설

○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일반 절차가 아닌 특수 통관절차 및 예외 사항은 국가마다 다르고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또 해당 법령이나 규제가 모호하게 기술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출입업자나 운송업자들은 각 국가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판정이 통관절차를 이행할 때 이루어지면 수출입업자와 운송업자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수출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입업자들이 물품을 송부하기 전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품목분류와 원산지, 과세가격 등에 대한 사전판정을 수입국 정부나 세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수출입절차 법과 규제의 준수율을

높일 수 있고, 수출입업체와 운송업체의 비용(시간, 노동, 화폐 등)을 줄일 수 있다.

○ 한편, 법이나 규제가 모호하게 기술되어 통관 담당자들의 임의적 해석이 심한 경우 수출입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저하되고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주목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많은 국가들은 사전심사제도 운영의 의무화를 요구하였고,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일부 통관절차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심사의 필요성과 바람직함을 인정하였다. 이 조항은 회원국들의 이러한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 WTO 차원에서는 원산지협정에서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WTO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의 조성인 점을 고려하면 사전심사는 수출입업자들에게 무역 이전 명확한 판정을 제공해 주고, 사전판정의 결과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면서 판정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성을 부과해 줄 수 있으므로 사전심사는 WTO의 주요 목표에 합치한다.

○ WCO와 개정교토협약 차원에서는 일반부속서 9.9에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속된 심사판정(binding ruling)을 발행하기를 일반 기준으로 두고 있다. 사전심사와 구속된 심사판정이 같은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보는 관찰자도 있지만<sup>43)</sup>, WCO는 구속된 심사판정과 사전심사를 동일하게 보고 있고<sup>44)</sup>, 따라서 사전심사를 무역원활화협정이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로 보고 있지 않다. WCO(2014, p.I/10)에서는 사전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 종이문서형태보다는 전자서류형태의 전자신고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WCO Data Model이 정보를 수집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WCO ID 448은 구속된 관세 기준(binding tariff references)을 보고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고, 이 외에도 Data Model을 통하여 특정 사전심사정보를 화물신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우리나라는 관세법령에 따라 이미 많은 분야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제공하

43) 일레로 South Centre (2013, p.6)은 WTO 무역원활화협정과 WCO 개정교토협약을 비교할 때 사전심사를 무역원활화협정이 부과하는 완전히 새로운 의무로 보고 있다.

44) WCO (미발표) “Advanced Rulings” (2004sus 5월 17일 확인)

<http://www.wcoomd.org/en/topics/wco-implementing-the-wto-atf/~media/58FDE73E8F3B4EC79FAEFC464F7748D3.ashx>

고 있고, 각국과 체결한 FTA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제7장 7.10조 1항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품목분류, 관세평가, 관세환불이나 유예 또는 감소, 원산지규정, 쿼터적용이나 관세할당 적용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제7.10조 제6항과 한-EU FTA의 제6.6조에 따르면 품목분류 및 일부 내용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 정보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사전심사가 진정하게 이루어지려면 법령과 규제의 일관적인 해석과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심사기준이 계류 중이거나 법정에서 결정이 내려져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 정확하지 않은 심사결과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통관절차와 과세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보다 오히려 혼동을 가할 수 있다<sup>45)</sup>.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수입국 관세당국의 사전심사는 일정기간동안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계류된 사안이 결정될 때 사전심사와 다른 내용으로 결정되면 사전심사의 내용은 적용해야 하는 법이나 규제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염려가 있다면 수입국 관세당국은 사전심사를 보류하여 사전심사와 법원 또는 항소 재판소의 결론과 상이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의 제2호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사전심사는 법보다 유효성이 약하고, 수입국은 갑자기 변한 환경에 따라서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로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법이나 규제를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제3조의 3항은 법이나 사실, 상황 등에 변동이 있으면 사전심사를 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 호의 규정은 수출입업자와 통관당국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 WTO 원산지협정의 3(f)조에서는 원산지판정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원산지협정에서는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다. 단, 여타 독립적 기관에 의해서 법이나 법적 판정, 또는 합의나 행정적 절차로 인해 사전심사의 내용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면 사전심사를 무효화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사실은 기업의 비밀을 제외하고 공표하게 하였다<sup>46)</sup>. 무역원활화협정은 원산지협정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구체성이나 엄격성 면에서 다소 약한 사전심사의 의무를 회원국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45) 한미FTA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7.10조 2항에서 암시하고 있다.

46) WTO 원산지 협정 3(i)조와 3(h)조.

○ 제4항 역시 회원국 정부나 통관당국의 임의적인 사전심사의 변경이나 무효화를 제한시키는 규정이다. 사전심사를 변경하거나 무효화하는 경우, 서면을 통한 통보로 변경이나 무효화를 확실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사전심사를 한 정부가 지도록 하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게 하였다. 다만, 신청자가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서 신청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거짓 정보나 불완전 정보를 제출할 인센티브를 줄이게 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WTO 원산지협정의 3(g)조를 보면 원산지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급적용은 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및 공정성에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소급적용의 금지는 법치주의의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sup>47)</sup>. 따라서 정부가 사전심사 결정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 선의적인 신청자들이 피해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자들이 잘못된 경우에만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미FTA에도 제7장 제7.10조제4항에 유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제5항은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전심사 결정은 법이나 법의 집행력보다는 구속력이 낮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은 각 회원국이 가능한 한 품목분류나 원산지규정 및 관세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최대한 일관적인 해석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법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용방법을 바꾸어야 할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고,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실수를 할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심사 결정을 받아 여기에 따라 행동한 선의적 신청자의 권리는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그 외의 수출입업자들에게는 사전심사 결정을 적용해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의 융통성을 보장시켜 주고 있다.

○ 제5항에서 주목되는 것은 ‘회원국은 사전심사 결정이 신청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점이다. 사전심사와 관련된 법이나 규제 및 집행력이 부정확하거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 수출입업체는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신청을 여러 번 시도하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판단 하에 사전심사에 대한 구속력을 신청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얻기 위해 반복 신청하여 정부의 행정비용을 높이고 공무원이 실수하기를 기도하는 신청인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 이러한 염려는 대체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의 염

47) Bingham (2011) p.45

려이며,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출입업체들에 대한 신뢰가 약한 점을 반영한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신뢰가 강하므로 선진국 공무원들은 대체로 과도한 반복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고, 그 결과 선진국은 사전심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속하는 경우는 드물다.

○ 제6항은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심사는 실제로 물품이 국경에 도착하기 이전 서류로 모든 사항을 검토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만 정확한 사전심사를 할 수 있고, 정부와 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신청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려면 먼저 정부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은 또한 신청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빌미로 사전심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 부당한 행위의 가능성을 제한시켜준다. 즉, 신청자가 모든 정보를 옳은 방법으로 제출하였다면, 정부는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여한 셈이다. 과거 일부 국가는 필요한 결정 및 판정을 비합리적인 기간동안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는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적용되었다. 사전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공표하면 신청자는 부당하게 오랫동안 결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를 줄일 수 있다.

○ 결정의 유효기간을 공표하라는 조건은 제3호의 조건을 강조하는 셈이다. 신청자가 사전심사의 결정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알아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송과 통관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규정이다. WTO 원산지규정에서는 원산지 사전심사의 결정기한을 150일,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결정기한과 유효기간의 길이를 각 회원국에게 맡기고 있다. 오직 기한과 기간을 공표하고, 그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만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개정교토협약에서는 각 회원국의 세관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는 경우 구속된 심사판정을 발행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라는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결정기한과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조건은 없다. 그러므로 무역원활화협정은 개정교토협약 기준보다는 엄격하지만, 원산지협정의 기준보다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 제7항은 신청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 또는 사전심사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결정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제3호와 제4호에 따르면 법이나 사실,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불완전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사전심사 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서면으로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의 원인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규제투명성의 개념 하에서는 피규제자들이 규제자인 정부가 실수한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재심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GATT 제X조와 WCO 개정교토협약에서도 법이나 규제의 집행에 있어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집행이 잘못되거나 법이나 규제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를 항의할 수 있도록 항의나 재검토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7호의 내용도 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재심사제도는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되는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절차이다. 사전심사가 어떤 구체적 처분이 있기 전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심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굳이 처분을 기다려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재심요청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 제8항은 사전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전심사의 직접적 수혜자는 신청자이지만,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대다수 WTO 회원국은 그 이상의 결과를 노렸다. 즉, 사전심사의 결정을 널리 공표하면 비일관적인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전판정 결정 정보의 공표를 통하여 더욱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무역체제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한미FTA에서도 상업적 비밀이 아닌 경우 사전심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CO(2014, p.I/10)에서도 웹사이트를 통하여 사전심사의 결과를 모두에게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사전심사 결정이 공표되는 경우, 신청자의 상업적 비밀이 노출될 것이라는 염려를 표명하였고, 따라서 소수의 회원국들은 사전심사 결정을 오직 신청인에게만 공개하자고 주장하였다.

○ 하지만 이러한 제한된 정보 공개는 임의적 결정을 다시 가능하게 하여 신청자들의 비용을 줄이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전반적 무역환경의 투명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다수 회원국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다만 본 조항뿐만이 아니라 협정 전체에서 정보의 공표 의무가 있는 경우, 민간기업의 상업적 비밀은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GATT 제X조와 WTO 각종 협정, WCO의 각종 협정뿐만 아니라 일반 국제협정에서도 포함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 제9항은 사전심사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들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전심사는 상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와 관련해서이고, 그 외에 관세평가, 감면세, 쿼터와 관세할당의 적용 등 3개 분야의 사전심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는 일부 회원국의 세관이나 통관당국, 특히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발도상국 통관당국의 부담이 무리하게 늘지 않도록 도입한 조치이다.

○ 한편, 제9항에서는 신청인의 자격을 정의하고, 신청인을 당국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로 제한시킬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역시 통관당국의 부담을 줄이고 사전심사의 신청을 합법적인 이유로 사전심사가 필요할 수 있는 자들에게 제한시킬 수 있도록 회원국 정부에 융통성을 주는 조항이다. 무역원활화협정의 취지 중 하나는 관세사나 대리인 없이 기업이 내부적인 인력으로 수출입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통관환경을 만들자는 것인데, 업체 자체나 법적대리인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한정한다면, 이러한 취지의 실현이 다소 약화될 여지도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관세법 제86조, 제87조)
-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관세법시행령 제31조)
- 원산지사전심사제도(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 2, FTA관세특례법 제14조)
- 관세감면사전심사제도(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WTO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는 사전심사를 제공해야 하는 사항을 제3조제9항에서 상품의 품목분류와 원산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실에 따른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적절한 방법 또는 기준, 그리고 그 적용,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회원국의 요건의 적용 여부, 관세 할당을 포함하여 쿼

터에 대한 회원국의 요건 적용, 그리고 회원국이 사전심사 결정을 발급하기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추가적인 사항 등 4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심사를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관세평가, 감면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인 관세할당을 포함한 쿼터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 등 일부 FTA외에는 따로 사전심사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가능한 한 이에 대해서도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품목분류, 관세평가, 감면세와 관련한 사전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청구를 전반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수출업체의 차원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품목분류나 원산지규정, 관세평가와 관련된 사전심사는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그 효용가치가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제4조 :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

##### ARTICLE 4: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1. Each Member shall provide that any person to whom customs issues an administrative decision<sup>48)</sup> has the right, within its territory, to:

(a) an administrative appeal to or review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higher than or independent of the official or office that issued the decision;

and/or

(b) a judicial appeal or review of the decision.

2. The legislation of a Member may require that an administrative appeal or review be initiated prior to a judicial appeal or review.

3.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ts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are carried out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4.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n a case where the decision on appeal or review under subparagraph 1(a) is not given either:

- (a) within set periods as specified in its laws or regulations; or
- (b) without undue delay

the petitioner has the right to either further appeal to or further review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r the judicial authority or any other recourse to the judicial authority.<sup>49)</sup>

5.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provided with the reasons for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o as to enable such a person to have recourse to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where necessary.

6. Each Member is encouraged to make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pplicable to an administrative decision issued by a relevant border agency other than customs.

## □ 번역

### 제4조 :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

1. 각 회원국은 세관이 행정적 결정<sup>50)</sup>을 내리는 모든 인이 그 영역 내에서 다음의 권리를 가질 것을 규정한다.

가.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보다 높은 또는 그로부터 독립적인 행정 당

48) An administrative decision in this Article means a decision with a legal effect that affec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specific person in an individual case. It shall be understood that an administrative decision in this Article covers an administrative ac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X of the GATT 1994 or failure to take an administrative action or decision as provided for in a Member'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For addressing such failure, Members may maintain an alternative administrative mechanism or judicial recourse to direct the customs authority to promptly issue an administrative decision in place of the right to appeal or review under subparagraph 1(a).

49)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prevent a Member from recognizing administrative silence on appeal or review as a decision in favor of the petitioner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50) 이 조의 행정적 결정은 개별 사안에서 특정인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력을 지닌 결정을 의미한다. 이 조의 행정적 결정은 GATT1994 제10조의 의미 내의 행정적 조치 또는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규정된 행정적 조치 또는 결정을 취하는 것의 실패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실패를 다루기 위해, 회원국은 제1.1항 가호에 따른 불복 또는 재심청구 권리를 대신하여 대안적인 행정적 메커니즘 또는 세관 당국이 신속하게 행정적 결정을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사법적 이용을 유지할 수 있다.

국에 대한 행정적 불복 또는 재심청구, 그리고/또는  
나. 결정에 대한 사법적 불복 또는 재심청구

2. 각 회원국의 법령은 사법적 불복 또는 재심청구 이전에 행정적 불복 또는 재심청구가 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회원국들은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4. 각 회원국은 제1.1항 가호에 따른 불복이나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이  
가. 각국의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나. 부당한 지연 없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행정 당국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해 추가적으로 불복 또는 재심을 청구할 권리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sup>51)</sup>
5. 회원국은 제1.1항에 언급된 인이 행정적 결정의 이유를 제공받아 필요한 경우 그러한 인이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각 회원국은 이 조의 규정들이 세관 이외의 여타 관련 국경기관에 의해 내려진 행정적 결정에도 적용되게 하도록 권장된다.

## □ 취지

○ 이 조항은 무역상품의 통관 및 통과와 관련하여 내려지는 세관 행정적 결정(즉, 작위 또는 부작위처분)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불복 및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 이외의 관련 국경기관의 행정적 결정에도 이러한 불복제도가 적용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수출입업자가 수출입절차에 대한 행정적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항소할 권리는 투명성 제고의 기본이며, GATT X조 3(b)항에 보장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GATT X조의 원칙을 다시 규정한 것이다.

---

51) 이 항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불복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행정적 침묵을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인정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는다.

## □ 내용요약

○ 각 회원국은 세관의 행정적 결정에 대해 상급기관이나 독립된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불복을 청구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때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 불복이나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이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부당한 지연 없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행정 당국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해 추가적으로 불복이나 재심을 청구할 권리와 사법 당국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세관 이외의 여타 관련 국경기관에 의해 내려진 행정적 결정에도 이러한 불복절차가 적용되게 하도록 권장된다.

## □ 해설

○ GATT(1947) 협정을 보면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고 법이나 규제를 공정하게 집행할 의무는 있지만, 수출입업자 등 피규제자들이 집행이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전 GATT협정 및 여타 GATT 관련 협정을 보면 정부와 정부간 협정이기 때문에 한 정부가 다른 정부에 항의하거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는 많지만, 일반인들이나 일반 기업들이 정부의 결정이나 집행에 이의 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었다. GATT 제X조 제3(b)항이 비정부 일반 개인이나 기업에게 권리를 주는 거의 유일한 규정이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GATT 제X조에서는 이러한 항소나 절차는 세관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제한되고, 항소를 받는 기관이나 절차가 통관절차를 운영하거나 집행하는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 초기에는 항소/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구체성을 한층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제4조의 각종 내용을 보면 GATT 제X조와 비교할 때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나 구체성은 적다.

○ 또한 제4조에서는 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지만, 여타 기관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권장만 하고 있다(제1.6항). 그러므로 제4조제1항의 내용과 GATT 제X조의 내용을 비교하면 제

X조에서는 회원국의 권한 하에 이의나 항의가 사법적 범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했다면,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사법법정에 갈 수 있는 권리가 피규제자(즉, 수출입업체)에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이미 사법부에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피규제자들에게 부여한 추가적 권리나 권한은 그다지 크지 않다. WCO 개정교토협약은 제10장 A부에서 GATT 제X조 제3(b)항 및 무역원활화협정의 제4조에서 요구하는 대부분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역협정이나 FTA에서도 행정적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재심청구 권리를 피규제자들인 일반 수출입업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재심청구 권리는 투명성 제고 및 행정적 임의성 방지와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 제2항은 불복제기가 무리한 행정부담을 회원국 정부나 세관에 부과하지 말도록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인 반면, 제3항은 신청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이다. 제2항과 관련, 무역원활화 협상 초기에 일부 회원국은 통관절차 및 관세에 관한 이의나 불복에 있어서 사법적절차 및 재심을 청구할 경우, 세관의 권리나 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개정교토협약의 일반원칙 10.6에서도 사법적 심사는 최종 단계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사법적 심사를 반드시 최종단계에 두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회원국 정부가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2항을 통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 제3항은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였다. 비차별원칙(최혜국대우인 MFN 원칙 및 내국민대우 원칙)은 WTO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며, 모든 WTO 관련 협정에서는 비차별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GATT 제X조 자체에서는 비차별대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GATT 제I조와 제III조에서 MFN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GATT 제X조에도 적용된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FTA 등 양자 및 지역별 무역협정의 체결이 가속되면서 MFN원칙이 너무 약화되지 않는지 염려하는 관찰자들이 많아졌다<sup>52)</sup>.

○ 제3항 내용이 무역원활화 협정에 포함된 이유로는 항소절차 및 불복·재심 과정에서 내국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그리고 FTA를 체결한 국가의 신청

52)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FTA를 보면 관세특혜 뿐만이 아니라 FTA 파트너들끼리는 반덤핑 관세 징수를 서로 금지하거나 특별히 추가적 검토를 요구하는 등 여타 WTO 회원국들보다 혜택을 주는 사례가 많다.

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행위를 경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GATT협정 제 XXIV조는 FTA가 MFN원칙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경우 FTA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지는 아직도 확실한 판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제3항이 WTO 차원에서는 범람하는 FTA를 경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4항은 불복이나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이 조기에 내려지지 않을 경우의 청구인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GATT 제X조는 통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불복/재심/항소제도를 유지할 의무를 회원국에게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반 수출입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복/재심/항소 절차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여기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너무나 길거나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 초기에는 소요기간 자체를 협정에 규정하자는 비공식적 제안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기간은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고, 그 기간은 회원국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단, 투명성 제고와 예측가능한 무역환경의 보장 차원에서 각 국가가 정한 기간은 공표하도록 제1.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교토협약에서도 불복/재심/항소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일반표준 10.8에 규정하고 있다.

○ 제5항은 불복/재심/항소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이 불복/재심/항소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이는 신청인 입장에서 관세당국의 행동이 위법 또는 부당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절차를 신청할 때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정부당국 입장에서는 임의적인 결정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WCO(2014, p.I/11)에서는 상소/항의 절차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의무는 없지만,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정보, 데이터, 서류 등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재심절차 및 항소절차를 진행하기가 쉬워지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제6항은 불복 또는 재심청구절차가 세관 이외의 여타 관련 국경기관에 의해 내려진 행정적 결정에도 적용되게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다. GATT 제X조는 세관절차(customs matter)에 관련된 내용에만 적용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또한, 개정교토협약에서 언급된 불복/재심/항소에 대한 각종 규정도 세관에만

적용된다. WTO 무역원활화협정과 개정교토협약을 비교할 때 무역원활화 협정의 장점 중 하나는 세관뿐만이 아니라 회원국의 모든 기관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WCO는 세관간 협력기관이므로 세관 외 다른 기관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WTO 협정은 국가차원의 협정이므로 모든 기관에게 적용됨이 원칙이다. 이것은 무역원활화협정을 처음 추진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TBT협정이나 SPS협정은 세관뿐만이 아니라 보통 통관 절차나 수출입과 관련이 취약한 국내 기술/표준 관리기관이나 농산품/음식물 안전보호 기관에도 적용되는 협정이다.

○ 무역원활화협정은 GATT 제X조를 심화하는 협정으로 시작했는데, 이러한 조건 하에 다른 정부기관도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 또 추가적 부담을 염려하는 많은 국가들이 불복/재심/항소의 권리를 너무 크게 확산하는 것을 반대하여, 본 협정에서는 세관 외 여타 기관들에 대한 불복/재심/항소 권리를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제도, 심사청구제도, 심판청구제도(관세법 제 110조 내지 제132조)
- 감사원심사청구제도(감사원법 제43조 내지 제48조)
- 행정소송제도(행정소송법)
-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이 조항의 내용은 기존 GATT협정에서 규정한 내용을 재강조한 것으로 정부의 추가적 의무나 부담은 거의 없고, 수출입업자에게 부여되는 추가적 권리도 별로 없다. 다만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수출입업자는 이를 최대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항소절차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고 비용도 들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관세청, KITA, KOTRA,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을 통해 법적/기술적 지원을 우리나라 수출입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5조 :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

### 1) 제5조제1항. 제고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

#### ARTICLE 5: OTHER MEASURES TO ENHANCE IMPARTIALITY, NON-DISCRIMINATION AND TRANSPARENCY

##### 1. Notifications for enhanced controls or inspections

Where a Member adopts or maintains a system of issuing notifications or guidance to its concerned authorities for enhancing the level of controls or inspections at the border in respect of foods, beverages, or feedstuffs covered under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for protecting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within its territory, the following disciplines shall apply to the manner of their issuance, termination, or suspension:

- (a) the Member may, as appropriate, issue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based on risk;
- (b) the Member may issue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so that it applies uniformly only to those points of entry where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conditions on which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are based apply;
- (c) the Member shall promptly terminate or suspend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when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it no longer exist, or if changed circumstances can be addressed in a less trade-restrictive manner; and
- (d) when the Member decides to terminate or suspend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it shall, as appropriate, promptly publish the announcement of its termination or suspension in a non-discriminatory and easily accessible manner, or inform the exporting Member or the importer.

## □ 번역

### 제5조 :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

## 1. 제고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

회원국이 그 영역내의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통보 또는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에 대한 국경에서의 통제 또는 검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당국에 통보 또는 지침을 발급하는 제도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경우, 다음의 규율들이 그 발급, 종료 또는 정지의 방식에 적용된다.

- 가. 각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위험에 근거하여 통보 또는 지침을 발급할 수 있다.
- 나. 각 회원국은 통보 또는 지침의 근거가 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건이 적용되는 반입 지점에만 통보 또는 지침이 통일되게 적용되도록 통보 또는 지침을 발급할 수 있다.
- 다. 각 회원국은 통보 또는 지침을 야기한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변화된 상황이 무역에 덜 제한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통보 또는 지침을 신속히 종료 혹은 정지한다.
- 라. 회원국이 통보 또는 지침을 종료하거나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경우, 그 종료 또는 정지를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신속히 공표하거나, 수출회원국 또는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무역상품인 식품, 음료, 또는 사료의 통관과정에서 요구되는 통제와 검역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SPS 협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SPS협정에서 제시한 이유로 수입을 제한시키는 경우 수입제한의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융통적인 제한조치와 신속한 철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은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목적으로 실시되는 국경에서의 통제 또는 검사가 위험관리(R/M)방식에 기초하여 실시될 수 있게 하고,

제한된 반입지점에서만 통일되게 적용되도록 통보 또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통보 또는 지침을 야기한 상황이 종료되거나 무역에 덜 제한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해당 통보 또는 지침을 신속히 종료 또는 정지하며, 그 사실을 신속히 공표하거나 수출회원국 또는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 □ 해설

○ 제5조의 내용을 보면 인간, 동물과 식물의 위생과 보건을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무역원활화협정에서 다루기보다는 SPS협정에서 다루는 것이 더욱 적당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도하라운드에서 SPS협정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회원국들은 SPS관련 통관절차를 무역원활화 협정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완료 이후 위생과 보건의 정치적으로 민감해졌고, 일부 회원국들의 주장을 따르면 무역장벽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겠지만, SPS협정을 통하여 다루기는 도하라운드에서는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무역원활화협정에서 간단히 다루는 것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다.

○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SPS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SPS협정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와 리스크 분석을 통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간, 동물, 식물의 위생과 보건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sup>53)</sup>. 현재 수입제한은 과학적 증거 및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WTO 회원국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MFN원칙을 어길 수 있다. 즉, 일부 국가에만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 국가들로부터만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시킨다면 이는 과학적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MFN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

○ GATT 제XX조에는 국민의 보건과 관련될 때는 비차별원칙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SPS협정에서는<sup>54)</sup> 이러한 조치가 무역왜곡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면서 리스크도 고려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원국들은

53) SPS협정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54) SPS협정 제2조제2항, 제2조제3항.

판단한 것 같다. 또한 무역원활화협정의 제7조에서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SPS 관련 수입제한의 내용을 제7조의 내용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이유도 가능하다. 이 조항은 SPS협정에서 인간, 동물, 식물의 위생과 보건을 위한 조치가 무역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한다는 제2조제2항과 제5조제4항의 내용을 암묵적인 근거로 하고 있다.

○ 어쨌거나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인간, 동물과 식물의 위생 및 보건과 관련하여 수입제한이나 더욱 엄격한 통관절차를 허용한다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국가의 모든 수입보다는 일부 수입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옵션을 회원국에게 주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보건 및 위생 조치로 인한 수입장벽의 피해를 지역적으로 제한시켜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수입금지나 엄격한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철회하고, 이를 역시 신속하게 통보하여 수출입이 빨리 재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WCO 개정교토협약에는 이러한 조건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이는 제5조제1항의 내용이 통관절차에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SPS협정과 더욱 관계가 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WCO(2014 p.I/14)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면 1d항에서 요구하는 통보를 더욱 신속하게 발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EU의 Eur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를 좋은 사례로 들고 있다. 그런데, 무역원활화협정의 협상기록을 볼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제안된 내용을 기록에서 찾기가 힘들다. 이 주제의 내용은 협상 말기에 제안되고, 큰 문제가 없이 수용되었다는 점을 보면 회원국간 이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순수하게 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무역원활화 협상보다는 SPS협정에 더욱 적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검역제도(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제도(관세법 제246조, 제247조, 제237조 등)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WTO 회원국의 상당수는 우리나라가 국내 농업을 과하게 보호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SPS 협정의 규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국민정서나 정치적 이유로 수입제한은 쉽게 도입하고 철회는 느리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산품 수입을 제한할 때 여기에 대한 객관적 근거(과학적 근거나 리스크 관리 차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험이 사라진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철회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제5조제2항. 유치

### 2. Detention

A Member shall promptly inform the carrier or importer in case of detention of goods declared for importation, for inspection by customs or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 □ 번역

### 2. 유치

회원국은 수입 신고된 상품이 세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사를 위해 유치된 경우에는 운수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 □ 취지

○ 수입신고된 상품은 물품에 대한 검사가 생략되거나 그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간단한 검사 및 심사로서 통관절차가 종료될 수가 있으나 적법성 확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과학적인 분석 등으

로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와 같은 사유로 해당 수입신고 상품이 유치된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책임자인 운수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품이 세관에 의하여 유치되는 경우, 수출입업자는 계약한 상품인수기일을 놓칠 수 있고, 운송비용이 증가함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품이 유치되는 경우, 신속한 통보를 받는 것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 할 수 있다.

## □ 내용요약

○ 수입신고된 상품이 세관 또는 무역상품의 통관 또는 통과와 관련해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검사를 위해 유치된 경우 이를 해당 물품의 통관책임자인 운수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 □ 해설

○ 무역원활화 협상 기록을 볼 때 유치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 제안을 제출한 국가는 인도뿐이었다. 그러나 인도의 제안이 별 변화 없이 수용된 것을 보면 여타 회원국들의 의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유치된 상품에 대한 통보의 의무만을 본다면 회원국 정부에 대해서 추가적 부담은 거의 없고 수출입업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배려를 제공한 셈이다.

○ 개정교토협약에는 특별부속서 H에서 표준 11-13, 그리고 권고관행 14-17로 화물이나 운송수단의 유치를 다루고 있다. 이 중 대부분 규정은 유치가 허용되는 경우(표준 11), 유치될 화물의 범위(표준 12), 유치되었던 화물의 반출(권고관행 14와 15), 운송수단 유치가 허용되는 경우(권고관행 16)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직 표준 13만이 유치된 상품에 대한 통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5조 제2항이 오직 통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제5조가 GATT 제X조의 내용, 즉 투명성에 관한 내용만 다룬 때문이다.

○ 유치된 화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투명성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본 조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유치에 대한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제안이 없었고, 개정교토협약에서도 유치에 대한 내

용은 특별부속서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원국들이 유치에 대한 추가적 의무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개정교토협약의 표준 13에서는 통보가 문서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3가지 정보(유치된 상품이나 운송수단의 성격과 수량, 유치한 이유, 그리고 법적 근거)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상품이 유치되었다는 사실만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교토협약의 내용과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고, 추가적인 부담도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여진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검역제도(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제도(관세법 제246조, 제247조, 제237조 등)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수입통관과정에서 상품을 유치하는 경우 이미 즉시 수출입업자와 운송업자 등 관계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으므로 협정의 발효로 인한 추가적 부담은 없을 것이다. 수출입업체 차원에서는 상대국 세관이 상품을 유치하는 경우, 통보받을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이러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된다 하여 더 신속한 통보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실질적 혜택보다 상징적 중요성과 향후 목표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제5조제3항. 시험절차

### 3. Test Procedures

3.1 A Member may, upon request, grant an opportunity for a

second test in case the first test result of a sample taken upon arrival of goods declared for importation shows an adverse finding.

3.2 A Member shall either publish, in a non-discriminatory and easily accessible manner, the name and address of any laboratory where the test can be carried out or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importer when it is granted the opportunity provided under paragraph 3.1.

3.3 A Member shall consider the result of the second test, if any, conducted under paragraph 3.1, for the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and, if appropriate, may accept the results of such test.

## □ 번역

### 3. 시험절차

3.1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신고된 상품의 도착시에 수행된 견본의 첫 번째 시험 결과가 불리한 결과를 나타낼 경우 두 번째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2 회원국은,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험이 수행될 수 있는 시험소의 이름과 주소를 공표하거나 제3.1항에 따라 기회가 부여된 경우 이러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한다.

3.3. 회원국은 상품의 반출 및 통관에 있어 두 번째 시험의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그러한 시험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 □ 취지

○ 이 조항은 수입신고된 상품의 도착시에 수행된 견본의 첫 번째 시험결과가 불리한 결과를 나타낼 경우 통관책임자의 요청이 있다면 두 번째 시험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상품의 반출 및 통관에서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여 검

사의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의약품, 화장품, 농산품, 자동차와 일부 공산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민 보건이나 위생보호로 시험을 요구할 수가 있고, 국내 기술규제 합치성 및 안전성을 보기 위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난 20년간 각국에서의 수입품에 대한 시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은 물품이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시험을 허용하여 시험이 무역장벽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고유목적인 국민보호 및 기술 합치성 판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은 수입신고된 상품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과 주소를 공표하거나 해당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도착시에 수행된 견본의 첫 번째 시험결과가 불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면 요청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시험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할 경우 그 결과를 상품의 반출 및 통관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 □ 해설

○ WTO 회원국들은 TBT협정이나 SPS협정을 근거로 수입품이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국내 보건 및 위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수입을 제한시킬 수 있다. 따라서 TBT협정 제5-8조에서는 표준합치성 검토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SPS 부록 C에서는 보건 및 위생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 협정에서 테스트 및 여타 절차들이 지켜야 할 원칙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물품에 대한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이러한 시험에 대한 원칙을 이 협정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다.

○ 시험과 관련한 제안을 한 국가는 인도<sup>55)</sup>였다. 인도는 시험절차에서 장비의 문제, 인증되지 않은 시험기관의 사용, 실수, 부족한 표본집단 숫자 등으로 그릇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그릇된 첫 시험결과는 부당한 무역장벽이

55) WTO 문서 TN/TF/W/78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보면 부당한 시험으로 자국의 화장품이나 음식 첨가물(식용물감 등)의 수출이 제한된다고 주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인도는 첫 시험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 재시험을 허용시켜야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본 조항의 내용은 인도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 제3.1항과 제3.3항은 재시험을 허용하고, 재시험의 결과를 수입국 정부가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2항은 시험소의 이름과 주소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하여 수입업자가 시험소의 자격이나 평판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따라서 제3항도 제1항과 유사하게 통관절차를 다루는 동시에 SPS협정 및 TBT협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개정교토협약에서 시험에 대해서는 특별부속서 B의 3.7(1) 권고관행에서 테스트용 상품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타 사항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수입물품 분석의뢰 제도(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어느 나라에서나 수입신고된 상품에 대한 시험은 주로 관세율의 적용을 위한 품목분류 또는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해진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시험결과가 나온 경우 재시험을 요청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무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제6조 : 수출입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규율

1) 제6조제1항.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일반 규율

ARTICLE 6: DISCIPLINES ON FEES AND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ND  
PENALTIES

1. General Disciplines on Fees and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1.1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all fees and charges other than import and export duties and other than taxes within the purview of Article III of GATT 1994 imposed by Members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goods.

1.2 Information on fees and charges shall be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This information shall include the fees and charges that will be applied, the reason for such fees and charges, the responsible authority and when and how payment is to be made.

1.3 An adequate time period shall be accorded between the publication of new or amended fees and charges and their entry into force, except in urgent circumstances. Such fees and charges shall not be applied until information on them has been published.

1.4 Each Member shall periodically review its fees and charges with a view to reducing their number and diversity, where practicable.

□ 번역

제6조 :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규율

1.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일반 규율

1.1 제1항의 규정은 수입 및 수출 관세와 GATT 1994 제3조의 범위 내의 조세를 제외하고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해 적용된다.

1.2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제1조에 따라 공표된다. 이 정보는 적용될 수수료 및 부과금,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의 이유, 담당 당국 그리고 지급될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다.

1.3 새로운 또는 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의 공표와 그 시행 사이에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은 이에 대한 정보가 공표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1.4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 수수료 및 부과금의 수와 종류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수료 및 부과금을 검토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회원국이 상품의 수출입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의 내용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가능한 한 정기적 검토를 통해 수수료 및 부과금의 수와 종류를 줄이도록 하여 이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완화되기를 의도하고 있다.

## □ 내용요약

○ 상품의 수입 및 수출이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은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의 이유, 담당 당국 그리고 지급될 시기 및 방법이 공표되어야 한다. 새로운 또는 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의 공표와 그 시행 사이에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기간이 주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수료 및 부과금은 이에 대한 정보가 공표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회원국은 수수료 및 부과금의 수와 종류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수료 및 부과금을 검토하여야 한다.

## □ 해설

○ 무역원활화 협상범위에 포함되는 GATT 제VIII조는 수출입절차, 그리고 수출입절차에 관련된 수수료와 요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GATT 제VIII조에서는 수수료와 요금과 관련, 그 금액은 최대한 실비 수준으로 제한하고(1a항), 수수료의 숫자와 종류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1b항), 다른 회원국의 질문이 있을 때 이와 관련된 법과 규제를 설명할 것이며(2항),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큰 벌금이나 벌을 과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3항). 또한, 제VIII조 제4항에서는 제VIII조의 적용대상을 영사거래(인보이스 및 인증서), 수량제한, 라이선싱, 외환규제, 통계서비스, 서류 및 인증, 검토와 검사, 검역과 위생 및 살충 관련 절차 및 수수료/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GATT 제VIII조에서 정의한 수출입절차와 수수료 및 요금은 모두 GATT 제X조의 공표 의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무역원활화협정의 제1조에서는 GATT 제X조에서 규정한 투명성의 정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규제투명성 및 규제수립의 개념을 추가하여 여타 WTO 회원국이 국내 법령과 규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한층 강화시켜 주었다. 또, 피규제자들의 권리 및 소급 규제나 알지 못한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피규제자들에 대한 권리를 강화시켰는데, 본 조항의 제1.1항 내지 제1.3항은 이러한 새로운 권리와 원칙을 수수료와 요금에도 확대시켰다. 따라서 본 조항은 앞의 제1조와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수료와 요금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제1.1항은 본 조항의 공표 의무를 관세와 세금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와 요금에 적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GATT 1994가 체결되기 이전에는 GATT 제VIII조의 적용을 받는 수수료와 요금이 수출입절차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와 요금인지, 아니면 제VIII조 제4항에 정의한 절차 및 사항에만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GATT Analytical Index에 따르면 GATT 협상의 전신인 아바나 회의에서는 제VIII조의 범위를 모든 수수료와 요금으로 정하기로 하였지만, GATT 협정 발효 이후에는 제4항에 있는 내용에만 적용되는 추세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 세관사용료 패널보고서(1988)에서는 제4항에 나열된 서비스 외에도 수출입절차와 관련된 서비스가 제VIII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정하였고, 제1.1항은 그 내용을 명문화시키고 있다.

○ 제1.2항은 수수료와 요금에 관한 법과 규제도 무역원활화협정 제1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1.3항은 제1조와 마찬가지로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공표와 발효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고, 공표하지 않은 법이나 규제는 발효되지 말아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WCO(2014, p.I/15)에서는 전자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접수된 신고서의 정보를 기준으로 요금과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계산하면 통관절차 소요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제고시켜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제1.4항은 수수료 및 부과금의 수와 종류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수료 및 부과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GATT 제VIII조 1(c)항에서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수와 종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보다는 권고사항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별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수수료 및 부과금의 정기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요없는 수수료나 부과금을 국내외 수출입업자들이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수와 종류를 줄이는 구체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수출입물품검사수수료(관세법 제247조)
- 임시개청수수료 및 정시간외화물취급수수료(관세법 제321조)
- 세관설비사용료 징수제도(관세법 제323조)
- 전자문서중개업무의 수수료 등(관세법 제327조)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이 조항으로 인해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역상품에 부과되는 부담금 성격의 각종 준조세 즉, 조세가 아니면서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무역거래비용에 반영되는 각종 수수료와 요금이 WTO 차원에서 경감되는 방향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뿐 아니라 수출물품의 경우에도 상대 WTO 회원국에서 각종 수수료와 요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경감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무역업체에게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투명성의 확대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통관과 관련된 부패관

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어 무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제6조제2항.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특별 규율

### 2. Specific disciplines on Fees and Charges for Customs Processing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Fees and charges for customs processing:

- (i) shall be limited in amount to the approximate cost of the services render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specific import or export operation in question; and
- (ii) are not required to be linked to a specific import or export operation provided they are levied for services that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customs processing of goods.

## □ 번역

## 2.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특별 규율

### 2.1 세관 처리를 위한 수수료 및 부과금은

- 1) 해당 특정 수입 또는 수출 활동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 2)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이 상품의 세관 처리와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위해 부과된 경우에는 특정 수입 또는 수출 활동과 연결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한 세관처리 과정에서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실비정도로 제한하고, 동시에 상품의 통관절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위해 부과된 경우에는 여러 서비스를 합친 통합기준으로 하나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적인 수수료 및 부과금 징수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은 수출입상품에 대해 세관처리를 위한 수수료 및 부과금을 부과더라도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이 특정 수입 또는 수출활동과 연결되도록 요구되어서는 아니된다.

## □ 해설

○ GATT 제VIII조 제1c항에서는 수출입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나 부과금은 최대한 실비에 가까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 1947 도입 이전 일부 정부는 수입절차를 정부의 수익성 서비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도입된 규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GATT 국가들은 수출입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나 부과금을 징수할 때 서비스별로 하지 않고 여러 절차(서비스)를 묶어서 하나의 수수료로 징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 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절차도 이러한 묶음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수입국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수출입절차를 의무화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

○ 무역원활화 협상의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논의하면서 각 서비스마다 따로 수수료를 징수하자는 비공식적 제안까지도 있었다. 그러나 각 서비스마다 수수료를 따로 징수하면 정부나 수출입업자들의 행정적 부담이나 비용이 너무 커질 수 있으므로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하자는 비공식적 제안도 있었다. 제1.4항에서는 수출입절차 서비스 수수료를 실비 수준으로 제한시키자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가능한 경우에는 여러 절차를 묶어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도 허용하는 중재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수출입물품검사수수료(관세법 제247조)
- 임시개칭수수료 및 정시간외화물취급수수료(관세법 제321조)
- 세관설비사용료 징수제도(관세법 제323조)
- 전자문서중개업무의 수수료 등(관세법 제327조)

## □ 기대효과(활용방안)

○ 각 회원국에서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징수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통관절차 과정에서 다양하게 징수되는 서비스료의 수준도 다소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이미 수수료나 부과금에 큰 비중을 두고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제6조제3항. 처벌 규율

#### 3. Penalty Disciplines

3.1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 the term "penalties" shall mean those imposed by a Member's customs administration for a breach of the Member's customs laws, regulations, or procedural requirements.

3.2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penalties for a breach of a customs law, regulation, or procedural requirement are imposed only on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breach under its laws.

3.3 The penalty imposed shall depend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shall be commensurate with the degree and severity of the breach.

3.4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t maintains measures to avoid:

- (a)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penalties and duties; and

(b) creating an incentive for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a penalty that i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3.3.

3.5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when a penalty is imposed for a breach of customs laws, regulations, or procedural requirements, an explanation in writing is provided to the person(s) upon whom the penalty is imposed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breach and the applicable law, regulation or procedure under which the amount or range of penalty for the breach has been prescribed.

3.6 When a person voluntarily discloses to a Member's customs administration the circumstances of a breach of a customs law, regulation, or procedural requirement prior to the discovery of the breach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the Member is encouraged to, where appropriate, consider this fact as a potential mitigating factor when establishing a penalty for that person.

3.7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shall apply to the penalties on traffic in transit referred to in paragraph 3.1.

## □ 번역

### 3. 처벌 규율

3.1 제6.3조의 목적상, “처벌”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의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처벌을 의미한다.

3.2 각 회원국은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그 법에 따른 위반의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만 부과되도록 보장한다.

3.3 부과된 처벌은 사건의 사실 및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위반의 정도와 심각성에 상응해야 한다.

3.4 각 회원국은 다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처벌 및 조세부과 이익의 충돌

나. 제3.3항과 불합치하는 처벌 또는 징세에 대한 유인 제공

3.5 각 회원국은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해 처벌이 부과되는 경우, 위반의 성격, 위반에 대한 처벌 범위가 규정된 적용 가능한 법, 규정 또는 절차를 명시한 서면 설명이 처벌이 부과된 개인(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3.6 개인이 관세 당국에 의한 위반의 적발 이전에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 상황을 관세 당국에 밝히는 경우, 그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그 개인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잠재적 경감 요소로 이 사실을 고려하도록 장려된다.

3.7 이 항의 규정은 제3.1항에 언급된 통과교통에 대한 처벌에 적용된다.

## □ 취지

○ 이 조항은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회원국들이 처벌은 하되 그 처벌이 과도하지 않도록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정하고, 협력자에 대한 고려를 장려하며, 아울러 처벌과 관련한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필요시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 내용요약

○ 각 회원국은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그 법에 따른 위반의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만 부과되도록 보장하고, 처벌의 정도 또한 사건의 사실 및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위반의 정도와 심각성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을 받는 당사자에게 위반의 성격, 위반에 대한 벌금의 액수와 범위가 규정된 적용 가능한 법, 규정 또는 절차를 명시한 서면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처벌대상자가 위반의 적발 이전에 미리 자수하거나 신고한 경우 처벌에서 이를 잠재적 경감요소로서 고려하도록 장려된다.

## □ 해설

○ GATT 제VIII조에서 처벌(penalty)에 대한 규정은 제3항뿐인데, 거기서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고, 작은 위반에 대해서 중벌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개정교토협약의 일반부속서 표 3.39와 특별부속서 H의 표준 24 및 표준 25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는 GATT협정에서는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WTO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처벌에 대한 질서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 제3.1항은 본 조항에서 다루는 벌금은 관세법과 관련되고 세관에 의해서 부과되는 처벌로 제한하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이 통관절차 외의 내용에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확실한 정의를 둔 것이다. 개정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H의 표준 22에 유사한 조건이 있는데, 개정교토협약에서는 국내법을 통해 처벌을 정하고, 이러한 처벌을 집행하는 세관 주관부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3.2항에서는 처벌의 대상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직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만 처벌하게 하여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제3.3항은 처벌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앞의 제2항과 같이 WTO 회원국이 처벌을 관세법 준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정부의 수익성 사업으로 전락되지 못하도록 과잉처벌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비례성의 원칙은 GATT 제VIII조 제3항에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고, 작은 위반에 대해서 중벌하지 말라는 원칙을 더 포괄적으로 확대시키는 조항이다. 개정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H의 표준 23에서도 비례성을 강조하고 있다.

○ 제3.4항은 제3.3항을 보조하는 동시에 처벌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줄이도록 노력하라는 규정이다. 처벌하는 세관이나 공무원이 이해상충이 있으면 안 되며, 비례성의 원칙을 어기는 과도한 처벌을 할 인센티브를 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이 외에도 처벌과 관련, 위반자는 독립적인 검토기관이나 절차에 재심이나 항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특별부속서 H 표준 27)고 규정하고 있는데, GATT에서는 GATT 제X조와 무역원활화

협정 제4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교토협약에서는 특별부속서 H 표준 26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압수되어 매각된 물품에 대해서 벌금을 내고 남은 금액은 전부 최대한 빨리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무역원활화협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제3.5항은 처벌을 통보하는 규정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기 전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H 표준 19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 제3.6항은 위반자가 위반을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취지를 가진 규정은 있다. 특별부속서 H의 표준 24에 신고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벌금을 징수할 때 신고자의 노력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3.7항은 순수한 기술적인 사항이다. 제6조의 제목에서 “수출과 수입”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제6조3항의 내용이 통과화물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과화물을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데에 이 조항의 취지가 있다. 통과화물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아래 제10조와 제11조에서 다루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 제3조제6항과 개정교토협약을 비교할 때, 위에서 언급한 특별부속서 H 표준 26(벌금납부를 위해서 수입품을 매각한 경우 벌금 외 자금의 처리)을 제외하고는 두 협정의 내용은 유사하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관세형별 및 관세행정질서법(관세법 제268조의 2 내지 제319조)
- FTA관세특례법(제24조)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이미 제3.1항 내지 제3.4항의 내용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관세법을 통해서 처벌하는 경우와 그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의 처벌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아울러 관세청 및 세관 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처벌대상이 된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의문이 있을 수 있다.

## 제7조 : 상품의 반출 및 통관

### 1) 제7조제1항. 도착전 처리

#### ARTICLE 7: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 1. Pre-arrival Processing

1.1 Each Member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allowing for the submission of import documentation and other required information, including manifests, in order to begin processing prior to the arrival of goods with a view to expediting the release of goods upon arrival.

1.2 Each Member shall, as appropriate, provide for advance lodging of documents in electronic format for pre-arrival processing of such documents.

□ 번역

## 제7조 : 상품의 반출 및 통관

### 1. 도착전 처리

1.1 각 회원국은 도착시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상품의 도착 이전에 처리를 시작하기 위해, 적하목록을 포함한 수입 서류 및 그 밖의 요구

되는 정보의 제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1.2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서류의 도착전 처리를 위해 사전에 전자적 형태의 서류를 제공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국경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무역상품이 수입국에 도착하기 이전에 수입통관에서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수입통관절차의 이행시기를 국경선 중심에서 그 이전 시점으로 확대하는 개념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통관 이전에 서류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심사 등 필요한 절차가 미리 진행된다면 상품이 도착한 직후 바로 통관 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각 회원국은 수입물품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하게 반출이 허용될 수 있게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에 필요한 서류 및 그 밖의 요구되는 정보의 제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 □ 해설

○ 무역원활화협정이 WTO/UR협정에 새롭게 기여하는 점이 있다면 이는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GATT 제8조 1(c)항에서 수출입절차의 최소화와 간소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지만, 어떤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았고, 통관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었다. 반면,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수출입절차 및 통관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WCO는 개정교토협약 뿐만이 아니라 SAFE 표준 프레임워크(SAFE Framework of Standards)와 즉시반출 가이드라인(Immediate Release Guidelines)이 제7조의 내용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고 보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7조의 내용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WCO는 무역원활화협정 제7조의 이행을 위해서 각 회원국들이 개정교토협약의 ICT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장기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정보통신 절차뿐만이 아니라 인적자원 운영 및 개발에도 신경을 쓰라고 권장하고 있다<sup>56)</sup>.

○ WCO가 권장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국가의 세관은 통관절차를 모든 화물을 직접 검사하는 방식으로부터 리스크분석에 기초하여 위험도가 높은 물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사후심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서류를 통한 사전 정보심사를 최대화하여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절차를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개정교토협약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개정교토협약의 일부 원칙을 WTO 차원에서 도입하면서, 나아가 개정교토협약 이후 제기된 일부 원칙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 제1.1항에서는 화물의 도착 이전 수출입업자의 서류를 접수하고 정보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화물 도착 이전에 최대한 처리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제1.2항은 전자적 형태로 서류를 제출할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교토협약에서도 일반부속서의 표준 3.25에서 화물도착 이전 정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국내 관세법령을 도입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표준 3.18에서는 전자형태의 서류접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무역원활화 협상 초기에 이러한 사전정보 접수 및 처리가 제안되었을 때,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국에서 이러한 정보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정보처리 규정이 너무 큰 부담을 준다고 염려했다. 또한, 무역원활화 협상 초기인 1999-2001년에 일부 회원국은 아직 통관절차에 인터넷 도입이 안되어 정보를 전자서류로 접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고, 또한 일부 국가들은 법적 증거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종이문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 중 일부는 통관절차에 전자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선진국의 기술협력과 하드웨어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암시한 바도 있다. 따라서 제1.1항과 제1.2항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고 있다. 즉, 화물도착이전 서류 및 정보의 접수와 처리를 허용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 정보접수와 처리를 의무화하진 않았다. 또한, 전자서류의 사용을 가능하도

---

56) WCO(2014) p.I./20

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서류의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WCO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통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7조의 내용을 수행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개정교토협약 ICT 가이드라인의 6.4부를 참조하고,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SAFE 표준 프레임워크와 WCO Data Model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sup>57)</sup>.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절차(관세법 제135조 내지 139조)
- 입항전수입신고제도(관세법 제244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이미 사전수입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한 정부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수출물품의 경우 무역업체들은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던 나라에서 협정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한 물품의 반출과 이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보는 게 가능할 것이다.

## 2) 제7조제2항. 전자적 지급

### 2. Electronic Payment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allowing the option of electronic payment for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collected by customs incurred up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57) WCO(2014) p.I/21

## □ 번역

### 2. 전자적 지급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및 수출에 대해 발생하여 세관에 의해 징수되는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전자적 지급 선택권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 또는 유지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해 부과되는 각종 조세나 수수료, 부과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금전적 부담절차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즉,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 □ 내용요약

○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통관과정에서 부과되는 제세, 수수료, 부과금의 전자적 지급에 대한 선택권을 허용하여야 한다.

## □ 해설

○ 이 규정은 제1.2항에 규정한 전자서류 제출을 허용하는 조항의 취지를 확대시키는 조항이다. 선진국들은 무역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전자형태로 주고받는데, 일부 개발도상국 세관의 경우 아직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수출입업자들에게 누군가 직접 세관 또는 은행에 가서 관세나 수수료를 내는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현금을 낼 때까지 반출이 늦어져 통관절차 소요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격지에서 통관이 이루어질 경우 현지에 대리인이나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관세사 채용을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일반부속서 표준 4.6에서 각 회원국은 국내법을 통하여 관세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지정하라고 규정하고, 특별부속서 J의 권고관행 19에서 여행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입출국관련

수수료를 낼 수 있게 하라고 권장하였다. 그러나 개정교토협약은 인터넷이 도입되기 시작할 무렵, 전자지급이 아직 많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 타결되었으므로 전자지급에 대한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킬 수 없었으나, 개정교토협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성된 교토 ICT 가이드라인의 6.10부에서 전자지급, 그리고 수익회계 및 전자 자금이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그러나 무역원활화협정이 협상될 때는 인터넷과 자금 및 세금의 전자지급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전자지급을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전자지급은 기록을 유지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관세 및 세금 납부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부정부패도 더욱 쉽게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전자지급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 인터넷이나 전자지급의 도입을 완료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해서 아직은 전자지급을 의무화하기보다는 현금지급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의 납부제도(관세법 제38조, 제43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지급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조항으로 인한 정부의 부담이 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범 세계적으로 볼 때 수출입과 관련된 납세에는 널리 전자지급제도가 채택되고는 있으나 납세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전자지급제도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KITA, 또는 KOTRA 등이 주도하여 다른 나라의 전자지급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그 특징과 유의사항들을 알려줄 경우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 3) 제7조제3항. 반출과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최종 결정의 분리

#### 3. Separation of Release from Final Determination of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3.1 Each Member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allowing the release of goods prior to the final determination of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if such a determination is not done prior to, or upon arrival, or as rapidly as possible after arrival and provided that all other regulatory requirements have been met.

3.2 As a condition for such release, a Member may require:

- (a) payment of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determined prior to or upon arrival of goods and a guarantee for any amount not yet determined in the form of a surety, a deposit, or another appropriate instrument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or
- (b) a guarantee in the form of a surety, a deposit, or another appropriate instrument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3.3 Such guarantee shall not be greater than the amount the Member requires to ensure payment of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ultimately due for the goods covered by the guarantee.

3.4 In cases where an offence requiring imposition of monetary penalties or fines has been detected, a guarantee may be required for the penalties and fines that may be imposed.

3.5 The guarantee as set out in paragraphs 3.2 and 3.4 shall be discharged when it is no longer required.

3.6 Nothing in these provisions shall affect the right of a Member to examine, detain, seize or confiscate or deal with the goods in any manner not otherwise inconsistent with the Member's WTO rights and obligations.

## □ 번역

### 3. 반출과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최종 결정의 분리

3.1 각 회원국은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결정이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또는 도착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 최종 결정 이전에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 또는 유지한다. 다만, 그 밖의 모든 규제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3.2 그러한 반출의 조건으로, 회원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상품 도착 전 또는 도착시 결정된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 및 아직 결정되지 않는 모든 금액에 대한 담보, 예치, 또는 법과 규정에 규정된 다른 적절한 증서의 형태의 보증 또는
- 나. 담보, 예치, 또는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의 보증

3.3 그러한 보증은 보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궁극적으로 예정된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3.4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위법이 감지된 경우, 부과될 벌금과 과태료에 보증이 요구될 수 있다.

3.5 제3.2항과 제3.4항에 제시된 보증은 그것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되어야 한다.

3.6 이 규정의 어떤 것도 회원국의 WTO 권리 및 의무와 불합치하지 않는 한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또는 몰수하거나 또는 다룰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품목분류나 관세평가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제세나 수수

료, 부과금 등의 결정이 지체될 때 이러한 금액을 궁극적으로 확보하는 채권 확보조치는 인정하되 먼저 상품의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하고자 하는, 수입신고수리전반출제도에 대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각 회원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제세와 수수료, 부과금 등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어려운 경우 최종 결정 이전에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반출을 허용할 때 그 조건으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요구되는 담보는 상품에 궁극적으로 예정된 제세와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만일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위법이 감지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에도 보증이 요구될 수 있다.

## □ 해설

○ 무역원활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화물의 반출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 세금, 수수료나 부과금을 다 지급했는지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수출입업자들은 오래전부터 관세, 조세, 수수료나 부과금의 납부과정이 지연되는 경우, 화물을 먼저 반출하고 납부를 나중에 하던지, 아니면 보증금을 지급하고 화물 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모든 관세와 세금을 받기 전 세납을 보증하는 담보역할을 하는 화물을 반출시키는 경우, 수출입업자가 세금납부를 회피할 것에 대한 염려로 납세 전 화물을 반출하는 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 생산과정이 국제화되고, 글로벌 공급사슬이 더욱 발전되면서 중간재의 수출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품이 제시간에 최종구입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FTA에서는 통관절차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항들이 포함되고 있다. 일례로 한미FTA의 제7조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도입하고(1항), 통관절차 소요시간이 가능한 한 48시간 이하가 되도록 하며(2a항), 도착전 전자서류 접수를 허용하고

(2b항), 보세창고 등 기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1c항),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기 전 화물반출을 허용하도록(2d항) 규정하였다.

○ 개정교토협약에는 신속한 화물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반부속서 제3장에서 화물의 반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표준 3.40은 세관이 화물을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도록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없고 수출입허가 및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접수되고 관세나 세금을 받거나 받을 조치를 취한 후 즉시 화물을 반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일반부속서 제3장 표준 3.41에서는 세관이 신고자가 향후 세금을 납부 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화물을 기술회는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화물을 반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사항을 찾아도 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고 압수대상이 아니면 관세, 세금과 수수료를 내고 적합한 보증금을 내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어도 화물을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준 3.43).

○ 제3.1항은 이러한 개정교토협약의 원칙을 계승한 것이다. 협정이 요구하는 조건은 만약 화물이 도착했을 때까지, 또는 도착 후 최대한 신속하게 세금, 수수료와 부과금을 판정하되, 그 판정이 어려울 때 여타 반출규제를 모두 충족한 경우 화물반출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납부 판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수출입규정을 따른 신고자가 세관의 사정으로 납부판정이 늦어질 때 화물의 적시 반출을 보장하는 신고자 보호조치의 일환이다.

○ 수입화물은 세금납부에 대한 담보의 역할을 하는데,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화물을 반출하면 수출입업자들이 신속하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반출을 전제로 보증금(담보물)을 요구하게 된다. 제3.2항부터 제3.5항은 이러한 보증금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일정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3.2항은 반출의 조건으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 형태나 조건은 법이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3항에서는 보증금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궁극적인 납세금액보다는 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3.4항에서는 정상적인 관세, 세금 및 수수료 뿐만이 아니라 벌금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지급하고 반출을 가능하게 하며, 제3.5항에서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보증을 해제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고 보증의무를 신속하게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일반부속서 제5장에서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증금을 내야 되는 경우와 형태는 국내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며(표준 5.1), 세관이 금액을 정한다(표준 5.2). 신고자는 보증금을 세관이 허용하는 형태 중 선정할 수 있으며(표준 5.3), 세관이 신고자가 충실히 납부할 것을 확신하면 보증금을 면제시켜 줄 수도 있다(표준 5.4). 표준 5.5에서는 신고자가 여러 항구를 통해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보증금을 낼 수 있으며, 표준 5.6에는 보증금액은 최소한 규모로 정하고, 표준 5.7에서는 보증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즉시 보증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WCO는 또한 교토 ICT 가이드라인 6.10부에서 지불의 연기와 보증금 운영을 다루고 있다.

○ 따라서 개정교토협약과 비교하면 무역원활화협정이 요구하는 조건은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역원활화협정과 개정교토협약 모두 보증금 금액이 너무 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최소화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교토협약에서는 보증을 면제해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수 형태의 보증금 납부 가능성과 여러 항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하나의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협정은 보증금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 제3.6항은 수입신고수리전반출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무역원활화협정의 협상 초기에 일부 회원국들은 화물도착전 서류심사 및 모든 절차가 끝나기 전 조기반출을 허용하는 경우, 검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화물을 유치하거나 압수하기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염려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신고자가 조기반출을 추진하여도 회원국은 그 화물을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 이는 조기반출제도와 담보제도가 밀수의 방법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차단해주는 것이다. 밀수범들이 거짓 신고를 한 후 조기반출제도를 사용하여 밀수품을 쉽게 반출할 수 있다면 밀수범들은 벌금이나 보증금은 하나의 밀수비용으로 보고 조기 반출제도를 밀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건전한 통관절차 및 밀수방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기반출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해 주는 조치이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수입신고수리전반출제도(관세법 제252조)
- 수입신고의 수리와 담보제공제도(관세법 제248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한 정부의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WTO 회원국 중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협정발효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해외 통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제7조제4항. 위험관리

#### 4. Risk Management

4.1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dopt or maintain a risk management system for customs control.

4.2 Each Member shall design and apply risk management in a manner as to avoid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4.3 Each Member shall concentrate customs control and, to the extent possible other relevant border controls, on high-risk consignments and expedite the release of low-risk consignments. A Member also may select, on a random basis, consignments for such controls as part of its risk management.

4.4 Each Member shall base risk management on an assessment of risk through appropriate selectivity criteria. Such selectivity criteria may include, *inter alia*, the Harmonized System code,

nature and description of the goods, country of origin, country from which the goods were shipped, value of the goods, compliance record of traders, and type of means of transport.

## □ 번역

### 4. 위험관리

4.1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위험관리 시스템을 채택 또는 유지한다.

4.2 각 회원국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고안하고 적용한다.

4.3 각 회원국은 세관통제 및 가능한 한도에서 그 밖의 관련 국경통제를 고위험 화물에 집중하고 저위험 화물의 반출은 신속하게 한다. 각 회원국은 또한 위험관리의 일부로서 그러한 통제를 위한 화물을 무작위에 기초하여 선별할 수 있다.

4.4 각 회원국은 위험관리를 적절한 선별 기준을 통한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한 선별 기준은, 특히, HS 코드, 상품의 성격과 기술, 원산지 국가, 상품이 선적된 국가, 상품의 가치, 무역업자의 준수 기록, 그리고 운송수단의 종류를 포함할 수 있다.

## □ 취지

○ 이 조항은 신속통관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통관적법성 확보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위험관리시스템의 채택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상품에 대한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화물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해 통관적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되는 화물의 신속한 반출을 허용하여 무역원활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 □ 내용요약

○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고안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적절한 선별 기준을 통한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야 하며, 그러한 선별기준으로 HS 코드, 상품의 성격과 기술, 원산지 국가, 상품이 선적된 국가, 상품의 가치, 무역업자의 준수 기록, 그리고 운송수단의 종류를 포함할 수 있다.

## □ 해설

○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의 통관절차는 모든 화물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무역량이 비교할 수 없이 많아진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중간재의 수출입이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시간에 도착해야만 하는 오늘날 모든 화물을 일일이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밀수 및 테러의 가능성이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WCO 등 국제기구는 통관절차에 위험관리(R/M 관리)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위험관리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한된 세관인원과 여력을 가장 위험성이 큰 화물에 집중시킬 수 있게 함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허용하고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시켜 줄 수 있다.

○ 제4.1항에서는 위험관리의 사용을 각 국가의 여력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관리 기법은 각 국가의 정보력 및 인력과 자원에 따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여력과 환경에 따라 적합한 위험관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각 국가의 환경에 맡김으로서 일부 국가는 위험관리 방법의 도입을 소홀히 할 염려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제4.2항에서는 위험관리 방법을 도입할 때 임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을 피하고, 무역장벽으로 전락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타 WTO 협정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다를 바가 없다.

○ 제4.3항에서는 위험관리 방법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동시에 위험이 적은

화물은 신속하게 반출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정 비율의 화물에 대해서는 무작위 검사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적절한 비율의 무작위 검사는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건 중 하나다. 따라서 이는 위험관리 방법이 통관절차 및 적법적인 검사와 국민보호를 회피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략될 가능성을 막아주는 규정이다.

○ 제4.4항에서는 위험관리를 사용할 때 적절한 지표 및 기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몇 가지의 지표와 변수를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외의 지표나 변수도 사용할 수 있다. 위험관리 기법을 사용할 때 위험 평가에 사용하는 모든 변수를 공개하면 밀수범들이나 위법자들이 검사를 회피할 때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사용하는 모든 변수를 공개하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는 중립적,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무역에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4.2항과 제4.4항의 내용을 같이 보면 위험관리 기법을 사용할 때 MFN원칙을 최대한 사용하고,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sup>58)</sup>.

○ 한편,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일반부속서 표준 6.3, 6.4와 6.5에서 위험관리 기법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검사대상을 선정할 때 위험관리 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통관절차 집행은 위험관리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위험이 적은 상품은 신속하게 반출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의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WCO 차원에서 교토 ICT 가이드라인의 6.8부에는 선별력(selectivity)과 위험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Risk Management Compendium를 출판한 바 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7.4조에서는 당사국이 전산방법이나 자동절차를 사용하는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검사활동은 위험이 높은 상품에 집중하고, 리스크가 낮은 상품의 반출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개정교토협약이나 무역원활화협정보다 다소 엄격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

58) South Center(2013, p.17)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제7조 제4.1항 내지 제4.4항을 볼 때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리스크 관리 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항구별로 차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검사를 불허할 수 있다는 염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규정을 검토할 때 항구별 위험성을 포함한 일부 변수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한 항구의 위험성이 특히 심하다면 차별적 검사도 허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South Center의 염려는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수출입신고물품에 대한 신고 및 검사제도(관세법 제246조, 제248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상당히 정교한 위험관리 기법을 이미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으로 인한 정부의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통관에서 위험이 낮은 상품에 대한 통관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편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5) 제7조제5항. 통관사후심사

#### 5. Post-clearance Audit

5.1 With a view to expediting the release of goods, each Member shall adopt or maintain post-clearance audit to ensure compliance with customs and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5.2 Each Member shall select a person or a consignment for post-clearance audit in a risk-based manner, which may include appropriate selectivity criteria. Each Member shall conduct post-clearance audits in a transparent manner. Where the person is involved in the audit process and conclusive results have been achieved the Member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person whose record is audited of the results, the person's rights and obligations, and the reasons for the results.

5.3 The information obtained in post-clearance audit may be used in further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edings.

5.4 Members shall, wherever practicable, use the result of post-clearance audit in applying risk management.

## □ 번역

### 5. 통관사후심사

- 5.1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관세 및 그 밖의 관련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사후심사제도를 채택 또는 유지한다.
- 5.2 각 회원국은,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근거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위한 개인 또는 화물을 선별한다. 각 회원국은 통관사후심사를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심사 과정에 개인이 관련되고 결정적인 결과가 획득되는 경우 회원국은 그 결과, 개인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그 결과의 이유를 그 기록이 심사된 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 5.3 회원국은 통관사후심사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소송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5.4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 위험관리를 적용하는데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정확한 과세를 비롯한 통관 적법성 확보를 위한 심사를 통관후에 실시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통관지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위험관리에 근거하여 통관후 심사대상을 선별하도록 하고, 심사를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하며, 심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 내용과 개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을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심사과정이나 심사결과에 따른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 □ 내용요약

-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사후심사제도를 적용하여

야 한다. 사후심사대상은 위험관리방식에 입각하여 선별하며, 사후심사는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결과의 이유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심사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사후심사결과를 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 해설

○ 무역원활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통관절차 시간을 줄이고 상품의 반출을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통관절차를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전 서류 및 정보심사, 반출과 관세 등 납부과정과의 분리, 그리고 통관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관사후심사란 일단 상품을 반출한 후 일부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신고자가 제출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조항에서는 통관사후심사뿐만 아니라 사후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위험관리 기법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WCO 통관사후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통관사후심사의 주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59)</sup>

- 통관서류가 조건에 합치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는지를 수출입업자의 시스템, 회계기록과 시설 검사를 통해서 확인
- 합법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했는지 확인
- 규율을 준수한 무역업자들의 무역을 원활화
- 금지, 제한, 라이선스 필요, 쿼터 등 특정 수출입 제한을 받는 물품이 적합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 인정되거나 승인된 조건(사전인증된 통과서류, 특혜적 원산지 및 이동 조건, 인증서, 라이선스, 쿼터 조건, 보세창고 및 간소화된 절차 조건)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따라서 세관은 신고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심이 있을 때, 또는 위험관리 분석을 통해서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된 신고자에 대해서 그들이 제출한 정보가 정확했는지, 그들이 따른 절차가 합법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통관사후심사제도를 사용하면 일일이 모든 정보를 화물도착시 확인하지 않고 먼저 화물을 반출하기 때문에 신고자는 화물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면 화물반출 전에 정보를

59) WCO (2012) p.6

확인하는 것보다 더욱 정확한 정보확인 작업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 협상과정에서 국내경험 리포트(National Experience Report)<sup>60)</sup>를 제출한 바 있다. 여기서 관세청은 400건의 신고 중 약 88%에 대해서 통관사후심사를 하였으며, 통관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한 후 통관절차시간이 크게 줄었고, 탈세나 거짓 신고를 더욱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으며 이 결과로 관세 및 세금 수입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준수율도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무역원활화협정의 협상 초기에 일부 개발도상국은 사전정보심사, 반출과 납부절차의 분리, 통관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위험관리 능력, 정보 처리 능력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세관과 수출입업자간의 호의적인 신뢰관계가 필요한데, 자국에는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본 협정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부담 수준으로 통관사후심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 제5.1항에서는 통관사후심사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5.2항에서는 심사 대상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위험관리 기법을 통하여 선정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심사대상에게 신속하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3조에서는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제5.4항에서는 위험관리에 통관사후심사로부터 비롯된 결과 및 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통관사후심사에서 비롯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세관의 권리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 WCO는 통관사후심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의 사용을 지지하고 있지만, 개정교토협약에는 통관사후심사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 일반부속서 제6장의 표준 6.6에 심사를 바탕으로 하는 통제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통관사후심사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WCO는 개정교토협약이 통관사후심사를 권장한다고 보고 있다<sup>61)</sup>. 그러나 WCO는 통관사후심사 가이드 2권을 2012년 출판하여 바람직한 통관사후심사 방법 및 WCO 회원국들의 활용 및 현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통관사후심사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60) Republic of Korea (2005b)

61) Yasui (2010)

또한 교토 ICT 가이드라인의 13부에서는 외부 무역업체나 기관 내부적 사후심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루고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수입통관심사제도(관세법 제38조제2항)
-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조사제도(관세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이미 수출입물품에 대한 심사의 원칙을 사후심사에 두고 있고 무역원활화협상 중에 국내경험을 WTO에 문서로 소개한 바도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우리나라 정부에 부담을 줄 사항은 아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입장에서 해당 물품의 수입국이 사전심사를 원칙으로 하다가 이 협정의 이행으로 통관사후심사를 도입하는 경우 화물의 반출시간이 상당 수준 빨라져 수출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6) 제7조제6항. 평균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 6.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Average Release Times

6.1 Members are encouraged to measure and publish their average release time of goods periodically and in a consistent manner, using tools such as, *inter alia*, the Time Release Study of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the “WCO”).<sup>62)</sup>

6.2 Members are encouraged to share with the Committee their experiences in measuring average release times, including methodologies used, bottlenecks identified, and any resulting effects on efficiency.

62) Each Member may determine the scope and methodology of such average release time

## □ 번역

### 6. 평균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6.1 회원국은, 특히, WCO 반출시간 연구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상품의 평균 반출시간을 측정하고 공표하도록 장려된다.<sup>63)</sup>

6.2 회원국은 이용된 방법론, 확인된 병목점,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모든 결과적인 영향을 포함한 평균반출시간 측정 경험을 위원회와 공유하도록 장려된다.

## □ 취지

○ 이 조항은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국으로 하여금 신속통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무역원활화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원국의 평균반출시간을 공개하여 국가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시간적 데이터가 축적되면 각 국가가 얼마나 충실히 무역원활화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입물품의 평균 반출시간을 측정하고 공표하도록 장려된다. 아울러 평균 반출시간 측정에 이용된 방법론, 확인된 병목점,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모든 결과적인 영향을 포함한 평균반출시간 측정 경험을 공유하도록 장려된다.

---

measurement in accordance with its needs and capacity.

63) 각 회원국은 그 필요와 능력에 따라 그러한 평균 반출 시간 측정의 범위 및 방법론을 결정할 수 있다.

## □ 해설

○ 무역원활화협정의 협상 초기에 우리나라를 포함<sup>64)</sup>한 일부 회원국은 협정에서 요구할 각종 무역원활화 조치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각 회원국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조치를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척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협정의 일부로 포함시키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제안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척도는 WCO 반출시간 연구의 결과이었다.<sup>65)</sup> 일부 협상 논의에서는 일부 선진국은 선진국이 기술지원과 무역원활화 관련 지원금을 개발도상국에게 전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내 수혜국 반출시간의 일정한 비율 감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

○ 하지만 여기에 대해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국가마다 통관환경도 다르고 일부 국가는 WCO 반출시간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반출시간을 측정하지 않거나 WCO와는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끝내 반출시간의 감소를 의무화하지 않고 이를 오직 정기적으로 일관적인 방법으로 비교가능하게 발표하는 의무만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반출시간 측정의 방법, 이에 따른 경험, 그리고 이의 결과를 공유하자고 합의하였다.

○ 개정교토협약에는 반출시간의 발표를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내용이 없다. 그러나 WCO(2014, p.I/21)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제7조6항을 시행할 때 반출시간 측정 가이드 (TRS) 버전2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버전2에서는 3단계 측정(1: 조사준비, 2: 데이터 기록 및 수집, 3: 데이터 분석 및 결론 도출)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없음(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수시로 물품의 평균반출 시간 및 통관소요시간 등을 조사하여 공표)

64) Republic of Korea (2005a)

65) WCO TRS Guideline(2001) 참조.

## □ 기대효과(활용방안)

○ WCO 반출시간연구 결과의 공개는 우리나라가 2005년 제안한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세청이 수시로 수입물품의 평균반출시간 등을 측정해서 공표하고 있다. WCO 반출시간 연구자료나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Indicator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소요시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통관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법적 근거를 따로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를 공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의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여타 국가들도 반출시간을 측정하여 공표하게 되면 각 국가가 얼마나 충실히 무역원활화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통관과정에서의 무역원활화 작업이 부진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제도개선을 시도하는 데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통관 시스템의 효율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7) 제7조제7항. 공인된 사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

### 7. Trade Facilitation Measures for Authorized Operators

7.1 Each Member shall provide additional trade facilitation measures related to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ities and procedures, pursuant to paragraph 7.3, to operators who meet specified criteria, hereinafter called authorized operators. Alternatively, a Member may offer such trade facilitation measures through customs procedures generally available to all operators and is not required to establish a separate scheme.

7.2 The specified criteria to qualify as an authorized operator shall be related to compliance, or the risk of non-compliance, with requirements specified in a Member's laws, regulations or procedures.

(a) Such criteria, which shall be published, may include:

- (i) an appropriate record of compliance with customs and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ii) a system of managing records to allow for necessary internal controls;
- (iii) financial solvency, including, where appropriate, provision of a sufficient security or guarantee; and
- (iv) supply chain security.

(b) Such criteria shall not:

- (i) be designed or applied so as to afford or create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operator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and
- (ii) to the extent possible, restrict the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7.3 The trade facilitation measures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 7.1 shall include at least three of the following measures:<sup>66)</sup>

- (a) low documentary and data requirements, as appropriate;
- (b) low rate of physical inspections and examinations, as appropriate;
- (c) rapid release time, as appropriate;
- (d) deferred payment of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 (e) use of comprehensive guarantees or reduced guarantees;
- (f) a single customs declaration for all imports or exports in a given period; and
- (g) clearance of goods at the premises of the authorized operator or another place authorized by customs.

7.4 Members are encouraged to develop authorized operator schemes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standards, where such standards exist, except when such standards would be an inappropriate or ineffective means for the fulfilment of the legitimate objectives pursued.

7.5 In order to enhance the trade facilitation measures provided to operators, Members shall afford to other Members the possibility of negotiating mutual recognition of authorized operator

schemes.

7.6 Members shall exchange relevant information within the Committee about authorized operator schemes in force.

## □ 번역

### 7. 공인된 사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

7.1 각 회원국은, 이하 공인된 사업자라 할,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자에게, 제7.3항에 따라,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한다. 또는, 회원국은 그러한 원활화 조치를 모든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세관 절차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7.2 명시된 기준은 회원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서 명시한 요건과 함께 의무준수, 또는 비준수 위험과 관련되어야 한다. 공표되어야 하는 명시된 기준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관세 및 기타 관련법 및 규정의 적절한 준수 기록
- 나. 필요한 내부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록 관리 시스템
- 다. 적절한 경우, 충분한 보안/보증의 제공을 포함하는 재정건정성 ; 그리고
- 라. 공급망보안

사업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명시된 기준은

- 가.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 사업자 간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부여하거나 초래하기 위해 고안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나. 가능한 한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7.3 제7.1항에 따라 공인된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역원활화 조치는 다음 조치 중 최소한 3가지를 포함한다.<sup>67)</sup>

- 가. 적절한 경우 낮은 서류 및 데이터 요건
- 나. 적절한 경우 낮은 비율의 물리적 조사 및 검사

66) A measure listed in subparagraphs 7.3 (a) to (g) will be deemed to be provided to authorized operators if it is generally available to all operators.

67) 가-사호에 기재된 조치가 모든 영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이는 승인된 영업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 다. 적절한 경우 신속한 반출시간
- 라.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납부 유예
- 마. 종합 보증 또는 축소된 보증의 사용
- 바. 주어진 기한 내의 모든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단일 세관 신고; 그리고
- 사. 공인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세관에 의해 승인된 그 밖의 장소에서의 상품 통관

7.4 회원국들은 그러한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 표준에 기초하여 공인된 사업자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장려된다. 그러한 표준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의 충족을 위해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인 수단일 경우는 제외한다.

7.5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원활화 조치를 증진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인가된 사업자 계획의 상호 인정을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7.6 회원국들은 시행중인 공인된 사업자 계획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위원회 내에서 교환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와 같이 성실한 무역관련 사업자에 대한 우대를 명시한 것이다. 무역관련 사업자 중 성실한 자를 선별하여 인증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통관과정에서의 우대조치를 보장함으로써 다수 무역관련 당사자들의 성실성을 유도하고,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무역원활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공인된 사업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공인된 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호인정제도와 정보교환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 내용요약

○ 각 회원국은 공인된 사업자라 할,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자에게 수

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인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은 관세 및 기타 관련법 및 규정의 적절한 준수 기록 등 회원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서 명시한 요건과 함께 의무준수, 또는 비준수 위험과 관련되어야 한다.

○ 공인된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역원활화조치는 ① 적절한 경우 낮은 서류 및 데이터 요건, ② 적절한 경우 낮은 비율의 물리적 조사 및 검사, ③ 적절한 경우 신속한 반출시간, ④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납부 유예, ⑤ 종합 보증 또는 축소된 보증의 사용, ⑥ 주어진 기한 내의 모든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단일 세관 신고, ⑦ 공인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세관에 의해 승인된 그 밖의 장소에서의 상품 통관 중 최소한 3가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 회원국들은 국제표준에 기초해 공인된 사업자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장려되며,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역원활화조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에게 인가된 사업자 계획의 상호인정을 협상할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 해설

○ 공인된 사업자(authorized operators 또는 authorized traders)는 신뢰성을 쌓은 무역업체나 수출입업자로 충실히 관세, 세금,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출입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으로 세관이 신뢰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위험관리 기법에 따라 통관절차 소요시간을 줄이고 화물의 반출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러한 신뢰를 가진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를 생략해 주는 것으로 더 빠른 반출을 가능하게 한다. 제7조7항에서는 이러한 공인된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제7.1항에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공인된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통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된 사업자를 위한 특수 규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7.2항에서는 공인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조건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

향으로 사업자의 과거 준수율, 사업자의 기록 능력과 내부 관리 능력, 재정 건전성, 공급망 안정성을 예시하고 있다.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임시전환기준3.32에서 공인된 사업자 제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공인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세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된 사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의 예시로는 사업자의 과거 준수율과 사업자의 상업적 기록의 관리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교토 ICT 가이드라인 6.15부와 9.3부에는 승인된 영업자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어떻게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과 지침이 있으며, AEO Compendium에는 승인된 영업자 제도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제7.3항에서는 공인된 사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항에서는 여타 WTO협정과 달리 7개의 옵션을 제시하고, 이 중 3개 이상을 공인된 사업자에게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선택권을 회원국에게 주는 것은 WTO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개정교토협약에서는 공인된 사업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로 반출을 허용하고, 신고자의 사업장이나 세관이 승인한 기타 장소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가능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수출 또는 수입한 모든 물품들을 하나의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관세 및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고 통관절차도 사업자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하며, 사업자 기록의 기입만으로 일단 통관절차를 인정하고 신고는 나중에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비해 무역원활화협정은 다소 다른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기간의 수출입에 대한 단일세관 신고나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통관을 허용하는 사항은 두 협정이 같지만,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는 신고자 자신이 제세를 계산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서류나 정보 제출요구를 줄이거나, 조사나 검사의 가능성을 낮추거나, 반출시간을 줄이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완화된 보증 조건이나 금액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제7.4항 이후는 공인된 사업자제도의 국제적 협력에 관해 다루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의 협상 초기 단계에서 일부 회원국은 각 회원국이 공인된 사업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용하도록 협정에 공인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공인된 사업자의 공인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같아지면, 한 국가에서 공인된 기업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자동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WTO 회원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회원국들은 WCO에서도 공인된 사업자의 구체적 조건은 각 회원국에 맡기고 있으며, 회원국마다 원하는 조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협정에서 모든 국가에 동일한 공인된 사업자의 조건을 제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이에 합의하였다. 현재 WCO는 공인된 사업자제도와 관련한 규범을 제정해 공표하고 있는데, 이에 기초하여 공인된 사업자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는 데 그친 것이다.

○ 공인된 사업자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세관과 기업들간의 상당한 협력 체제 및 신뢰가 구축된 반면, 일부 국가들은 통관철자에 있어서 기업들을 믿을 수 없는 “적”으로 간주하는 등 신뢰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들이 공인된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만일 이들 국가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협정에 포함시킬 경우 조건이 너무나 엄격하여 혜택을 받을 기업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간주되어 협정에서는 일부 조건을 예시하고는 있지만 각 회원국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다.

○ 그러나 제7.4항 내지 제7.6항은 회원국들이 공인된 사업자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7.4항에서는 공인된 사업자 기준을 정할 때 국제기준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7.5항에서는 회원국간 상호인정제도를 권장하며, 제7.6항에서는 회원국간의 정보교류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적으로 동일한 공인된 사업자 기준을 구축하기 위한 배경을 마련하고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관세법 제255조의 2)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라 불리는 공인된 사업

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공인된 사업자로 인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본력이 취약하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준수율이나 기록관리 능력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인된 사업자로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4년 6월 현재 수출업체, 수입업체, 중소수출업체, 관세사, 항공사, 선박회사, 화물운송 주선업자, 하역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자인 등 539개 업체에 대해 공인된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으며,<sup>68)</sup> 미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홍콩, 멕시코(8개국)와 AEO MRA를 체결하였다. 또 인도, EU, 터키, 대만,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등과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의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sup>69)</sup>. 기업 입장에서는 공인된 사업자로 인정되면 수입뿐 아니라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8) 제7조제8항. 특송화물

### 8. Expedited Shipments

8.1 Each Member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allowing for the expedited release of at least those goods entered through air cargo facilities to persons who apply for such treatment, while maintaining customs control.<sup>70)</sup> If a Member employs criteria<sup>71)</sup> limiting who may apply, the Member may, in published criteria, require that the applicant shall, as conditions for qualifying for the application of the treatment described in paragraph 8.2 to its expedited shipments:

- (a) provide adequate infrastructure and payment of customs expenses related to processing of expedited shipments in cases where the applicant fulfils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such processing to be performed at a dedicated facility;

68) 2014년 4월 15일 현재. 관세청 웹사이트 (마지막 확인 2014년 6월 1일)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13&nttId=53&layoutMenuNo=205&siteId=main&searchCtgr=&searchCnd=&searchWrd=&recordCountPerPage=10](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13&nttId=53&layoutMenuNo=205&siteId=main&searchCtgr=&searchCnd=&searchWrd=&recordCountPerPage=10)

6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웹사이트, (마지막 확인 2014년 6월 1일)

<http://www.custra.com/content.do?method=getContent&gcd=S04&siteCmscd=CM0003&topCmscd=CM0019&cmscd=CM0152&pnum=1&cnum=4>

- (b) submit in advance of the arrival of an expedited shipment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release;
- (c) be assessed fees limited in amount to the approximate cost of services rendered in providing the treatment described in paragraph 8.2;
- (d) maintain a high degree of control over expedited shipments through the use of internal security, logistics, and tracking technology from pick-up to delivery;
- (e) provide expedited shipment from pick-up to delivery;
- (f) assume liability for payment of all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to the customs authority for the goods;
- (g) have a good record of compliance with customs and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h) comply with other conditions directly related to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Member's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that specifically relate to providing the treatment described in paragraph 8.2.

8.2 Subject to paragraphs 8.1 and 8.3, Members shall:

- (a) minimize the documentation required for the release of expedited shipmen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0 and, to the extent possible, provide for release based on a single submission of information on certain shipments;
- (b) provide for expedited shipments to be released under normal circumstances as rapidly as possible after arrival,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release has been submitted;
- (c) endeavour to apply the treatment in subparagraphs (a) and (b) to shipments of any weight or value recognizing that a Member is permitted to require additional entry procedures, including declarations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and payment of duties and taxes, and to limit such treatment based on the type of good, provided the treatment is not limited to low value goods such as documents; and
- (d) provide, to the extent possible, for a *de minimis* shipment value or dutiable amount for which customs duties and taxes will not be collected, aside from certain prescribed

goods. Internal taxes, such as value added taxes and excise taxes, applied to imports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 of the GATT 1994 are not subject to this provision.

8.3 Nothing in paragraphs 8.1 and 8.2 shall affect the right of a Member to examine, detain, seize, confiscate or refuse entry of goods, or to carry out post-clearance audits, including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risk management systems. Further, nothing in paragraphs 8.1 and 8.2 shall prevent a Member from requiring, as a condition for release,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and the fulfilment of non-automatic licensing requirements.

## □ 번역

### 8. 특송화물

8.1 각 회원국은 세관통제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대우를 신청한 인에게 적어도 항공화물 시설을 통해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 또는 유지한다.<sup>72)</sup> 회원국이 신청인을 제한하는 기준<sup>73)</sup>을 적용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공표된 기준을 통해, 8.2항 가-라호에 기술된 대우를 특송 화물에 적용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러한 처리가 지정된 시설에서 수행되기 위한 회원국의 요건을 신청인이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기반시설 및 특송 화물의 처리에 관련된 세관 비용의 지급 제공

나. 특송화물의 도착 이전에 반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

다. 평가된 수수료가 제8.2항 가-사호에 기술된 대우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에 대한 금액에 한정될 것

70) In cases where a Member has an existing procedure that provides the treatment in paragraph 8.2, this provision does not require that Member to introduce separate expedited release procedures.

71) Such application criteria, if any, shall be in addition to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operating with respect to all goods or shipments entered through air cargo facilities.

72) 회원국이 제8.2항의 대우를 제공하는 기존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규정은 그 회원국이 별도의 신속한 반출 절차를 도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73) 그러한 적용 기준은, 존재하는 경우, 항공 화물 시설을 통해 반입된 모든 상품 또는 화물에 대한 회원국의 운영 요건에 추가된다.

- 라. 내부 보안, 물류 및 픽업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의 추적 기술 사용을 통한 특송화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 유지
- 마. 픽업부터 배달까지의 특송 제공
- 바. 상품에 대해 세관 당국에 대한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 의무 부담
- 사.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법 및 규정의 훌륭한 준수 기록
- 아. 제8.2항에 기술된 대우의 제공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회원국의 법, 규정 및 절차 요건의 효과적인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 밖의 조건들의 준수

8.2 제8.1항 및 제8.3을 조건으로, 회원국들은 :

- 가. 제10.1조에 따라 특송 화물의 반출을 위한 서류 요건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화물에 대해 정보의 단일 제출에 근거한 반출을 규정한다.
- 나. 반출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상황에서 특송화물이 도착 후 최대한 신속하게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 다. 회원국이 신고서, 지원 서류, 관세 및 조세의 지급을 포함한 추가적인 반입 절차를 요구하도록 허용되고, 또한 그러한 대우가 서류와 같은 낮은 가치의 상품에만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대우를 상품의 종류에 근거하여 제한하도록 허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제8.2항 가호 및 나호의 대우를 모든 중량과 가치의 화물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 라. 특정한 기술된 상품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관세 및 조세가 징수되지 않는 소액화물 금액 또는 관세부과대상 금액을 규정한다. GATT 1994 제3조에 합치하게 수입에 대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와 같은, 내국세는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3 제8.1항 및 제8.2항의 어떤 것도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몰수 또는 반입 거부하거나 위험관리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통관사 후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제8.1항 및 제8.2항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반출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정보의 제출과 비자동 면허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 취지

○ 이 조항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B2C 거래상품이 주종인 특송화물에 대한 특송화물업체 중심의 예외적인 통관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통해 신속한 특송화물 통관이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특송(속달) 화물은 초단시간내에 서류나 화물을 전달해야 하므로 통관절차를 최소화하여 반출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한 것이다. 이는 특송(속달)업체 뿐만이 아니라 JIT(Just-In-Time) 또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관리기법에 입각하여 적시생산을 요구하는 국제공급사슬 기업들과 신속한 정보 및 자료가 필요한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 □ 내용요약

○ 회원국은 세관통제를 유지하면서 희망자들에게 항공으로 수입되는 특송화물의 신속한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특송화물업자에게 적절한 기반시설 및 특송 화물의 처리에 관련된 세관 비용의 지급, 특송화물의 도착 이전에 반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 화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 유지, 상품에 대한 제세와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 의무 부담, 관세법령 등의 성실한 준수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원국은 특송화물의 반출을 위한 서류 요건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특정 화물에 대한 단일 정보에 근거하여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예외가 적용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면세되는 소액화물의 범위와 관세부과 대상 금액을 규정하여야 한다.

## □ 해설

○ 경제의 세계화와 정보기술의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정보의 전달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많은 정보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빛의 속도로 상대방에 전달되고 있지만, 일부 서류나 화물은 물리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남아있다. 현대 경제, 특히 글로벌화된 생산과정이나 빠른 속도의 정보전달이 필요한 현

대금융산업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서류와 물건도 빠른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속달산업의 발달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현대 경제에는 FedEx나 DHL 같은 속달업체가 정보와 서류의 중요한 전달역할을 하고 있고, UPS 같은 전통적 운송업체도 어떻게 그들이 받은 서류나 소포를 더욱 빨리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또한 Amazon이나 11가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물품의 배달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 따라서 대만과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속달 및 특송 화물의 통관절차 소요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자고 주장하였고,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속달 및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중 어떤 요소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속달 및 특송화물 업체에 어떻게 통관조건을 완화해 줄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제8항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이다.

○ 제8항에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절차를 받으려면 신고인은 공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8.1항 가-아(a-g)에 제시한 조건들도 충족해야 한다. 즉, 신고인은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고(8.1a항) 화물도착 전 반출을 위한 정보를 (세관에게) 제출해야 하며(8.1b항),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비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계산하여 지출하고(8.1c항), 화물관련 관세, 세금, 수수료 및 징수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8.1f), 자체시설에서 처리 중 통제 및 보안을 유지하며(8.1d), 도착부터 전달까지 특송(즉 속도)을 유지하며(8.1e), 법과 규제를 잘 준수한다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1g). 국제공항에서 볼 수 있는 FedEx, UPS나 DHL 시설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 제8.1항에서 제시한 조건을 유지하는 신고자(즉, 특송업체)에 대해서 WTO 회원국 정부는 특송화물의 반출과 관련된 서류를 최소화하며(8.2a), 일반적 상황에서는 특송화물을 도착 후 최대한 빨리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8.2b). 8.2c항에서는 회원국에게 이러한 특혜를 무계와 가치를 막론한 모든 특송화물에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무계와 가치에 따라 화물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제8.2d항에서는 어떤 금액 이하의 화물에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이 제외될 수 있도록 면세기준을 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같은 국내세금은 이러한 면세기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8.3항에서는 제8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통관절차에서 화물을 검사하거나 유보 또는 압수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반출을 위해서 추가적 정보나 라이선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속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회원국 세관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송화물이라도 검사나 다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개정교토협약에서는 특별부속서 J의 제2장에서 일반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특송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없다. 그러나 WCO는 즉시반출에 대한 가이드라인(Immediate Release Guidelines)을 2003년에 발표하였는데, 이는 주로 특송업체를 통해서 운송되는 우편물이나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편지와 서류, 가치가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즉시반출을 쉽게 하고, 가치가 높은 화물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다루고 있다. 또한 WCO 데이터 정보 패키지도 활용할 수 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에서도 특송과 관련한 규정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7.7조에서도 특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미 FTA의 내용과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한미 FTA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과 달리 특송업체가 어떤 시설물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또한, 특송업체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명시하지 않고, 오직 각 정부와 세관에게만 적용되는 조건만 명시하고 있다. 이 FTA에 따르면 정부와 세관은 특송화물을 위한 특수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7.7a), 특송화물의 통관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도착 전 전자서류 형태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7.7b), 하나의 적하목록으로 동시에 들어오는 모든 특송화물을 신고할 수 있게 하며, 이 신고는 가능하면 전자서류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하고(7.7c), 서류를 최소화하며 (7.7d), 일반적으로는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을 반출할 수 있게 하고 (7.7e), 화물의 가치나 무게에 상관없이 특송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하며(7.7f), 가치가 \$200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나 세금을 받지 말고 공식적인 입국서류도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모두 무역원활화협정보다는 더욱 엄격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특송화물통관제도(관세법 제254조 및 254조의 2)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특송화물에 대해 관세법에 의한 통관 또는 일부 FTA에서 무역원활화협정보다 더욱 엄격한 조건들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무역원활화협정의 관련 규정들이 정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국내에서는 로지스틱 및 특송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만 아직 이 기업들의 대부분이 국제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송산업은 아직 발전 가능성이 많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협정 제7조8항은 국내 특송업체들이 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으로 분석된다.

## 9) 제7조제9항. 부패성 상품

### 9. Perishable Goods<sup>74)</sup>

9.1 With a view to preventing avoidable loss or deterioration of perishable goods, and provided that all regulatory requirements have been met, each Member shall provide for the release of perishable goods:

- (a) under normal circumstance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and
- (b)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do so, outside the business hours of customs and other relevant authorities.

9.2 Each Member shall give appropriate priority to perishable goods when scheduling any examinations that may be required.

9.3 Each Member shall either arrange or allow an importer to arrange for the proper storage of perishable goods pending their release. The Member may require that any storage facilities

arranged by the importer have been approved or designated by its relevant authorities. The movement of the goods to those storage facilities, including authorizations for the operator moving the goods, may be subject to the approval, where required, of the relevant authorities. The Member shall, where practicable and consistent with domestic legislation, upon the request of the importer, provide for any procedures necessary for release to take place at those storage facilities.

9.4 In cases of significant delay in the release of perishable goods, and upon written request, the importing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a communication on the reasons for the delay.

9.4. In cases of significant delay in the release of perishable goods, and upon written request, the importing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a communication on the reasons for the delay.

## □ 번역

### 9. 부패성상품<sup>75)</sup>

9.1. 부패성 상품의 회피 가능한 손실 또는 품질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각 회원국은 :

가. 통상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한 최단시간 내에 부패성 상품의 반출을 규정한다 ; 그리고

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세관과 그 밖의 관련 당국의 영업시간 외에 부패성 상품의 반출을 규정한다.

9.2. 각 회원국은 요구될 수 있는 모든 검사 일정을 잡을 때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권을 제공한다.

74) For the purposes of this provision, perishable goods are goods that rapidly decay due to their natur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in the absence of appropriate storage conditions.

75) 이 규정의 목적상, 부패성 상품은, 특히 적절한 저장 조건이 결여되는 경우, 그 자연적 특성 때문에 급속히 부패되는 상품이다.

9.3. 각 회원국은 반출을 기다리는 동안 부패성 상품의 적절한 저장 시설을 마련하거나 수입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회원국은 수입자에 의해 마련된 저장 시설이 관련 당국에 의해 승인받거나 지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저장 시설로의 부패성 상품의 이동은, 상품을 이동시키는 영업자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여,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실행 가능하고 국내 입법에 합치하는 경우, 수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러한 저장 시설에서 반출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규정한다.

9.4. 부패성 상품의 반출에 심각한 지연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지연 사유에 관한 의사소통을 제공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무역상품 중 그 자연적 특성 때문에 급속히 부패되는 수입상품에 대해 가능한 한 최단시간내에 상품반출을 보장함으로써 통관과정에서 이러한 상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품질저하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부패성 상품, 특히 육류, 어류, 채소와 과일은 신속한 통관절차가 요구되며,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느린 통관절차가 큰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패성 상품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은 적절한 저장조건이 결여되는 경우 그 자연적 특성 때문에 급속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부패성 상품에 대해 모든 규제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손실 또는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게 가능한 한 최단시간 내에 이러한 상품의 반출을 규정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세관 등 관련 기관의 근무시간 외에도 부패성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 회원국은 반출을 기다리는 동안 부패성 상품이 보관될 수 있는 적절한 저장 시설을 마련하거나 수입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검사 일정을

잡을 때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 □ 해설

○ 농산물, 특히 육류, 어류, 채소류와 과일류는 부패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속한 운송과 통관절차가 필요하다. 과거 일부 WTO 회원국들은 어떤 회원국들이 국내 농산품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관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일본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이 부패성이 큰 상품이 회원국을 통과할 때에는 신속한 통과절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가 있으나, 부패성 상품의 입국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제안은 협상 말기인 2012년에야 호주, 브라질과 뉴질랜드가 제출하였다.<sup>76)</sup> 이들 국가가 제안한 내용과 협정문의 최종 조치를 비교하면 내용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 제9.1항에서는 부패성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반출을 허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관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아니라도 반출을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제안에는 부패의 가능성이 큰 경우 근무시간 외라도 반출을 허용하라는 다소 더 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9.2항에는 검사시간표를 작성할 때 부패성 상품에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9.3항에서는 각 회원국이 부패성 상품에 대해서 반출을 기다리는 동안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이나 절차를 마련하거나, 신고자가 적합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 이 시설까지 운송하고 보관하는 절차는 필요시 세관에서 허락을 받고, 국내법이 허용하고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시설에서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도 역시 원래 제안보다는 다소 약한 규정이다. 원래 제안에는 국내법과 상관없이 부패성 위험이 있는 경우 신고자 시설에 보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제9.4항에서는 법치주의와 투명성 원칙에 따라 부패성 상품의 통관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청자의 문서적 요구가 있는 경우, 지연되는 이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76) Australia, Brazil and New Zealand (2012)

○ GATT협정이나 WTO 농산물협정에는 부패성 물품이라 하여 더 신속한 수입절차를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일반부속서 3의 표준 3.34에서 산동물이나 부패성 물품은 검사시간표를 계획할 때 다른 물품보다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합한 시설에 보관할 수 있게 하거나 절차가 지연될 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육류, 과일이나 야채 같은 부패성 물품은 수입국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보관과 빠른 처리가 필요하므로 비록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적절한 보관장소에 대한 의무나 지연에 대한 통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사항들이라 하겠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보세구역 장치원칙의 예외 및 보세구역외장치허가제도(관세법시행령 제174조, 관세법 제156조 및 제160조)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과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자국 농업시장 보호를 위해서 일부러 통관절차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우리나라 통관절차 속도에 대한 불만은 크게 잦아들었다. 서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야채와 과일 및 육류를 공급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식품들이 빨리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패성 상품에 대한 통관시간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다. 무역원활화협정의 이 조항이 각국에서 현실화될 경우 신선식품의 국제교역이 상당수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상품에 대한 수입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부패성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장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 이 조항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나, 이를 보다 명백하게 보여주는 의미에서 부패성 상품에 대한 수출입시의 신속통관 규정을 구분, 보완하여 정해 두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 제8조 : 국경기관 협력

### ARTICLE 8 : BORDER AGENCY COOPERATION

1.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ts authorities and agencies responsible for border control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the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of goods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coordinate their activities in order to facilitate trade.

2.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nd practicable, cooperate on mutually agreed terms with other Members with whom it shares a common border with a view to coordinating procedures at border crossings to facilitate cross-border trade. Suc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may include:

- (a) alignment of working days and hours;
- (b) alignment of procedures and formalities;
- (c) development and sharing of common facilities;
- (d) joint controls;
- (e) establishment of one stop border post control.

## □ 번역

### 제8조 국경기관 협력

1. 회원국은 국경 통제 및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를 다루는 절차를 책임지는 당국 및 기관이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도록 보장한다.

2. 회원국들은,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국경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경 교차지점에서의 절차를 조정할 목적으로 국경을 공유하는 그 밖의 회원국과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과 조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근무일과 근무시간의 정합
- 나. 절차와 형식의 정합
- 다. 공통 시설의 개발 및 공유

라. 공동 통제

마. 윈스톱 국경 사후 통제의 수립

## □ 취지

○ 이 조항은 무역원활화란 목표를 위해 관련되는 국경기관간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경기관들 간 협력을 장려하여 서로 통관절차를 효율화시키고 비용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경기관들 간의 협력은 한 나라내의 국경기관들 간 협력과, 국경을 접한 경우 상대국 국경기관들과의 협력을 모두 포함한다. 국경절차에 여러 기관이 관련되기 마련이고, 이들 기관간에 협력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총체적으로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은 국경 통제 및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를 다루는 절차를 책임지는 당국 및 기관이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국경 교차지점에서의 절차를 조정할 목적으로 국경을 공유하는 그 밖의 회원국과도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근무시간, 절차와 형식의 정합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 □ 해설

○ 서로 다른 회원국의 세관간 협력은 아래 제12조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제8조의 내용은 세관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국경에 있는 각 기관간의 협력과 육접한 국경의 경우 인접국 국경기관과의 협력을 의미한다. 제8조 제1호는 국경이 소재한 국내 각 기관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인접국 국경관리기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제2호에서는 국경근무시간이나 국경절차에 있어서의 협력뿐 아니라 특히 사무실이나 국경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 국경이 접한 국가들간 통관절차와 검사에 대한 협력이 부족한 경우 수출입과 화물통과에 대한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 A와 B에서 A국가는 휴일이지만, B국가는 평일인 경우, 화물이 B국가로부터 A국가로 이동할 때 그 화물은 국경에서 1일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근무시간과 통관절차에 대한 협력체제를 설립하면 국경에서 화물의 이동이 멈추는 상태를 피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내륙국가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 무역원활화를 위한 초기 협상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제출할 때 가장 과격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국경이 접하는 국가들간 통관절차를 시행할 때에는 두 국가의 세관절차를 하나의 건물에서 진행하게 하며, 검사나 심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가능하면 두 국가의 절차를 단일절차로 합하자라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과격한 아이디어는 다소 약화되었다. 일부 회원국들은 국경을 공유한 국가들 사이에 단일한 checkpoint를 만들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최종협정에서는 국경이 접한 국가의 세관들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업일과 시간, 각종 절차, 공동시설 및 공동 통제를 조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통관절차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가간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체제를 도입하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의무보다는 권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제2호의 최종문구는 EC의 제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EC 회원국들의 대부분은 인접하면서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협력에 대한 경험이 많고, 이러한 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개정교토협약에서는 국경을 공유한 국가들의 경우, 각 국가의 시설이 근접한 경우 그 시설의 영업시간과 권한을 조화시키고(일반부속서 3, 표준 3.3), 공유 국경의 경우 통합된 통제시설을 운영하며(일반부속서 3, 전환적 기준 3.4),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 경우 상대국의 시설과 병렬하도록 최대한 협력을 하기를(일반부속서 3, 전환적 기준 3.5) 규정하고 있다. 또한 WCO(2014, p.I/22)에 따르면 세관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세관들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각 세관의 장비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절차와 장비가 필요할 것이며, 제8조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관간 운영시간과 절차를 조화시켜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

이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의 궁극적인 결과는 싱글윈도우의 형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허가나 승인 등 수출입통관요건의 증명 및 확인(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 관세법 제226조의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수많은 법률에서 요구되는 통관요건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 국경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은 총체적인 무역원활화를 위해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제2호의 경우 우리나라가 육접국경을 통한 교류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이 특별한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1일 운송권에 들어가 있으며, 항공운송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은 반일(半日) 운송권에 포함되므로 우리나라 관세 통제시설과 이들 국가들의 항구 및 공항 관세 통제시설간 협력을 강화하면 원만하고 마찰이 없는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경우 육로를 통한 국경이동시 그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9조 :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 ARTICLE 9 : MOVEMENT OF GOODS INTENDED FOR IMPORT UNDER CUSTOMS CONTROL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provided all regulatory requirements are met, allow goods intended for import to be moved within its territory under customs control from a customs office of entry to another customs office in its territory from where the goods would be released or cleared.

## □ 번역

### 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위한 상품이 그 영역 내에서 반입 세관으로부터 상품이 반출 또는 통관될 그 영역내의 다른 세관으로 세관 통제 하에 이동하도록 허용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자의 통관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내 보세운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착지가 아닌 기타 지역에 소재한 시설에서 통관과 반출을 허용하게 하여 수입업자들에게 융통성을 부여하고, 도착지 세관시설의 혼잡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은 모든 규제조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통관을 위한 수입국내의 보세운송을 허용하여야 한다.

## □ 해설

○ 제9조에는 화물이 국가의 한 항구에 도착한 후, 그 국가 내의 다른 세관시설로 이동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착항구나 공항, 또는 국경에서 수입절차를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수입업자와 신고자들에게 많은 융통성을 제공해 준다. 특히 일부 국가의 세관은 국경이나 항구, 공항 외에 내륙의 주요 시(市)나 공업단지 등에도 통관 및 통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인된 사업자들도 역시 국경이나 항구, 공항 외의 지역에 보세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 제9조를 활용하면 신고자는 편의에 따라 통관과 반출을 도착지가 아닌 내

륙지역, 또는 운영자의 보세시설에서 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와 수입업자에게 많은 융통성을 부여해 준다. 또한, 제9조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도착지 통관 및 통제시설의 혼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세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 WCO는 그들의 Custom Compendium on a Secure and Efficient Transit System이 화물이동절차 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물이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관은 입국세관사무실에서 사용한 화물적하 서류 및 신고서에서 기록된 정보를 재사용하여 서류 제출 및 확인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 관련 절차를 자동화시키고, 화물추적 도구를 사용하여 화물이동의 보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도 활발히 사용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sup>77)</sup>.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보세운송제도(관세법 제213조 내지 제220조)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보세운송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이나 국내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수출상품의 경우는 나라에 따라 이 규정으로 인해 보다 원활한 통관절차 이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0조 :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 1) 제10조제1항. 형식 및 서류요건

ARTICLE 10: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

77) WCO(2014) p.I/22

## 1. Formaliti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1.1 With a view to minimizing the incidence and complexity of import, export, and transit formalities and to decreasing and simplifying import, export, and transit documentation requirement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and other factors such as changed circumstances, relevant new information, business practices, availability of techniques and technology,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inputs from interested parties, each Member shall review such formaliti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ensure, as appropriate, that such formaliti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are:

- (a) adopted and/or applied with a view to a rapid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particularly perishable goods;
- (b) adopted and/or applied in a manner that aims at reducing the time and cost of compliance for traders and operators;
- (c) the least trade restrictive measure chosen where two or more alternative measures are reasonably available for fulfilling the policy objective or objectives in question; and
- (d) not maintained, including parts thereof, if no longer required.

1.2 The Committee shall develop procedures for the sharing by Members of relevant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as appropriate.

## □ 번역

### 제10조 수입, 수출 및 통과 관련 형식

#### 1. 형식 및 서류요건

1.1 수입, 수출 및 통과 형식의 횡수 및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 서류 요건을 줄이고 간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정책적 목적 및 상황 변화, 관련된 새로운 정보 및 사업 관행, 기법 및 기술의 이용가능성, 국제적인 모범 관행 및 이해당사자의 조언과 같은 그 밖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은 그러한 형식 및 서류요건을 검토하며,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경우, 그러한 형식과 서류 요건이 다음과 같도록 보장한다.

- 가. 상품, 특히 부패성 상품의 신속한 반출 및 통관을 위해 채택 및/또는 적용 된다;
- 나. 무역업자와 영업자의 준수 시간 및 비용 감축을 위해 채택 및/또는 적용 된다;
- 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안적인 조치가 해당 정책 목적 또는 목적들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가장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선택된다.
- 라.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 그 일부를 포함하여, 요구되지 아니한다.

1.2.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통관 및 통과하는 물품이 빈번할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채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GATT 제VIII조의 통관절차와 서류의 간소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들은 통관 및 통과 형식의 횟수 및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 요건을 줄이고 간소화하기 위해 그 형식과 서류 요건을 검토하며,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상품의 신속한 반출, 통관과 무역업자 등의 시간과 비용의 감축,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안적 조치가 이용 가능한 경우 가장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의 선택 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 해설

○ 제7조의 해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7조와 제10조가 무역원활화협정의 핵심 사항인 동시에 회원국 정부들에게 가장 큰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들이다. 투명성(GATT 제X조)과 관련된 사항도 비용감소에 도움이 되지만, 재심사항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무역업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에 비해 통관서류와 절차(GATT 제VIII조)에 관련된 사항들은 무역업자와 운송업자들이 겪고 있는 물리적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다.

○ GATT 제VIII조 1c항은 수출입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 숫자의 감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무역원활화 협상과정을 보면 수출입절차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는 WTO 회원국간 논의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야심적인 제안이 다수 발표되었다. 특히 정보수집에 있어서 WCO Customs Data Model을 활용하여 각 회원국 세관이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를 표준화하고, UN Layout Key for Trade Document를 사용하여 서류의 형태를 표준화하며, 이러한 서류를 전자서류 형태로 제출하여 세관 뿐 아니라 수출입절차에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에 정보를 보내어 하나의 서류 제출로 모든 서류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다수 제출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맥락의 제안을 단독 또는 여타 국가들과 같이 제출한 바 있다. WCO Customs Data Model은 바로 이러한 국제표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었다<sup>78)</sup>. 또한, 유사한 정보를 수출국과 수입국에 보내야 하며, 서류에 대한 싱글윈도우(단일서류 제출처)가 없는 국가에서는 한 국가의 여러 부처에 똑같은 정보를 다른 형태의 서류를 통해 다수 보내야 하므로 국내 부처들, 그리고 수출입과 수출국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정보 공유절차나 다국적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 그러나 최종 협정문을 볼 때 이렇게 야심적인 제안은 별로 수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본적 원칙만 제시하고 각 회원국이 도입할 구체적인 사안은 각 회원국에게 맡겨놓은 셈이 되었다. 제1.1항에서는 서류와 절차의 간소화를 고려할 때 4가지의 목적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즉, 통관 및 반출의 신속성 제고, 준수 비용과 시간의 감소, 무역제한의 최소화, 그리고 지속 필요성의 유무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각종 제안의 사용은 계속 가능하지만, 의무적인 요소는 배제하였다.

○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일반부속서 3.16에서 수출입절차의 통제를 위하거나 세관의 법과 규제를 준수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부속서 J의 표준 3.11에서는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운

---

78) WCO(2012) p.I/26

송수단(즉 화물)이 도착하기 전 그 서류를 도착국 밖에 있는 도착국 대표로부터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게 할 수 없게 규정하였다. 대체로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절차준수 및 법의 수행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의 사항만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나 서류의 복잡성 최소화나 간소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국 절차를 검토하고, 요건을 조절해야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WCO(2014, p.I/26)에서는 제7조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적합한 ICT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ICT체제에 대한 계획과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수년 동안 차근차근 이 계획을 실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제10조제1항은 수입, 수출 및 통과 형식의 횟수 및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 서류 요건을 줄이고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통관 또는 통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이를 허용하는 시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수입신고수리전반출제도(관세법 제252조)
- 즉시반출제도(관세법 제253조)
- 임시개청제도 및 정시간외 물품취급제도(관세법제321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현재 우리나라는 매 수입, 수출 및 통과 건마다 신고, 또는 납세하는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하에서 신속통관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통관 소요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그러나 신고방법은 일정기간별로 모아서 하는 ‘주기적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관 및 통과 형식이 더욱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서는 우리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각종 신속통관제도를 이들 국가들이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 제10조제2항. 사본의 수용

### 2. Acceptance of Copies

2.1 Each Member shall, where appropriate, endeavour to accept paper or electronic copies of supporting documents required for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ities.

2.2 Where a government agency of a Member already holds the original of such a document, any other agency of that Member shall accept a paper or electronic copy, where applicable, from the agency holding the original in lieu of the original document.

2.3 A Member shall not require an original or copy of export declarations submitt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Member as a requirement for importation.<sup>79)</sup>

## □ 번역

### 2. 사본의 수용

2.1 각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에 요구되는 지원 서류의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2.2 회원국 정부기관이 그러한 서류의 원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원국의 그 밖의 기관은, 적용 가능한 경우, 그 원본 서류 대신에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한다.

79) Nothing in this paragraph precludes a Member from requiring documents such as certificates, permits or licenses as a requirement for the importation of controlled or regulated goods.

2.3 회원국은 수입요건으로 수출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제출된 수출 신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다.<sup>80)</sup>

#### □ 취지

○ 이 조항은 무역상품의 통관 또는 통과에 소요되는 서류를 가능한 한 원본 뿐 아니라 사본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특히 회원국 정부기관이 그러한 서류의 원본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그 원본 대신에 사본을 입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서류입수를 이유로 통관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반출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은 가능한 한 통관 또는 통과에 요구되는 서류의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회원국의 정부기관이 그러한 서류의 원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원본 서류 대신에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수입요건으로 수출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제출된 수출 신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 해설

○ 전자서류가 많이 활용되기 전 문서서류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때, 많은 나라의 정부나 세관에서 모든 서류를 원본이나 인증된 원본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서류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전달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 통관절차와 반출도 상당히 지연될 수 있었다. 또한 서류의 원본을 여러 부처에 보여주어야 하는 경우, 반출이 역시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제 2.1항과 제2.2항에서는 사본이나 전자서류를 인정하고, 하나의 정부부처에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여타 부처들은 사본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80) 이 조항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통제되거나 규제되는 상품의 수입 요건으로 인증서, 허가서 또는 면허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며, 수출국에게 제출한 서류를 수입국이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표준 충족성, 안전조건 또는 보건조건의 충족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나 허가서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원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일반부속서 표준 3.15에서 세관은 신고서의 원본과 최소 필요한 숫자의 복사본만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부속서 J의 표준 3.10에서는 입국신고를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본의 숫자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 사본을 받을 수 있다는 경우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부속서 표준 3.13에서 신고자가 일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정해진 시간내 그 정보를 제출하겠다는 조건으로 임시 물품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WCO는 무역원활화협정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WCO Recommendation on Dematerialization of Supporting Document에 있는 권장사항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싱글윈도우 제도와 같이 병행하면 국경 화물처리의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sup>81)</sup>.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수출입신고서의 서류제출제도(관세법 제245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통관 또는 통과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전자문서의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종이서류가 제출되어야 할 경우에도 사본의 제출을 광범하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거나 수출입업체의 편의가 증진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아직 전자문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사본을 불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환경 개선지원이란 측면에서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과정에서 이 조항을 적절히 활용하여 전자문서 제출과 사본제출을 인정하

81) WCO(2014) p.I/28

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 3) 제10조제3항. 국제표준의 사용

#### 3.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3.1 Members are encouraged to us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or parts thereof as a basis for their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ities and procedur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3.2 Members are encouraged to take part, within the limits of their resources, in the preparation and periodic review o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3 The Committee shall develop procedures for the sharing by Members of relevant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as appropriate. The Committee may also invit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iscuss their work on international standards. As appropriate, the Committee may identify specific standards that are of particular value to Members.

#### □ 번역

### 3. 국제표준의 사용

3.1 회원국들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의 근거로 관련 국제표준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3.2 회원국들은, 자국의 자원 제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한 관련 국제표준의 준비 및 주기적 검토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3.3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국제표준의 이행에 관한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

을 회원국 간에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제표준에 관한 그들의 작업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를 초청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회원국에게 특별히 가치가 있는 특정 표준을 규명할 수 있다.

## □ 취지

○ 이 조항은 회원국들이 적용하는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과 절차가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이들 절차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입과 수출, 통과 형식과 절차에서 국제표준의 사용을 권장하고, 이러한 권장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간 신고서와 절차가 최대한 같은 형태를 취하게 하고, 필요없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게 하여 서류작성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들은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의 근거로 관련되는 국제표준이나 그 표준의 그 일부를 사용하도록 권장되며, 국제기구에 의한 관련 국제표준의 준비 및 주기적 검토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위원회는 국제표준의 이행에 관한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을 회원국 간에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며, 회원국에게 특별히 가치가 있는 특정 표준을 규명할 수 있다.

## □ 해설

○ WCO, UN-ECE, UN-ESCAP, OECD 등의 국제기관들은 통관절차와 절차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통일된 표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제1.1항에서 설명하였듯이 무역원활화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이 이 기관들이 마련한 각종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류의 표준화에 따라서 논의된 기준으로는 서류에서 각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라고 제안하는 WCO Layout Key, 세관은 어떤 정보들을 모집하라고 권장하고, 여

기에 대한 정보분류 코드를 마련하는 UN Customs Data Model, 그리고 서류의 형태 및 서류관련 절차에 관한 권장사항을 정리하는 WCO Guideline 등이 있다.

○ 그 외로 언급된 국제기준으로는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2005),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2006), Convention on the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Istanbul Convention, 1990),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Convention, 1986) 등이 있으며, 통관절차와 관련 국제기준과 표준을 설립하는 기관으로는 WCO 외에도 UN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와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가 언급되었다<sup>82)</sup>.

○ 개정교토협약에서도 서론에서 국제기준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일반부속서 표준 3.11에서 문서서류는 UN Layout Key와 합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서서류에 있어서는 무역원활화협정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개정교토협약의 표준 3.11에서는 전자화물신고의 경우, Customs Co-Operation Council의 IT 권고사항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화물신고의 경우에도 무역원활화협정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제도(관세법 제255조의 3)
-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 제255조)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할 때부터 각종 국제기준과 표준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WCO DM 적용). 수출입통관

82) Mongolia, Norway, South Africa and Switzerland (2007),

과 관련된 전자신고서 등의 형태를 디자인할 때 상기한 국제기준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신고서 형태를 확정하는 것이다. 관세법(제255조의 3)에서도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관 관련 문서는 국제기준을 충실히 따를 뿐만이 아니라, 전자서류는 문서서류와 똑같은 형태를 사용하여 문서서류 작성에 익숙한 신고자는 전자서류 작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나름대로 통관절차에 있어서 best practice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편익이 증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 진다.

○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이 국제표준과는 거리가 있는 통관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조항이 장차 가져올 무역환경의 긍정적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할 수 있다. 국제표준과 다른 WTO 회원국들이 신고서에서 수집하는 정보와 문서의 형태가 같은 경우, 기업들의 신고 및 서류 작성에 따르는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3.2항과 제3.3항에 제시하는 국제협력 및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4) 제10조제4항. 싱글윈도우

##### 4. Single Window

4.1 Members shall endeavour to establish or maintain a single window, enabling traders to submit documentation and/or data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of goods through a single entry point to the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After the examination by the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of the documentation and/or data, the results shall be notified to the applicants through the single window in a timely manner.

4.2 In cases where documentation and/or data requirements have already been received through the single window, the same documentation and/or data requirements shall not be requested by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except in urgent circumstances and other limited exceptions which are made public.

4.3 Members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details of operation of the single window.

4.4 Members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nd practicable, use information technology to support the single window.

## □ 번역

### 4. 싱글윈도우

4.1 회원국들은 무역업자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서류 및/또는 자료 요건을 단일 접수 지점을 통해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싱글윈도우를 설치 또는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한 서류 및/또는 자료의 검토 후에, 그 결과는 시의 적절하게 싱글윈도우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4.2 서류 및/또는 자료가 싱글윈도우를 통해 이미 접수된 경우, 동일한 서류 및/또는 자료는 긴급한 상황 및 공표된 그 밖의 제한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참여당국 또는 기관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다.

4.3 회원국들은 싱글윈도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4.4 회원국들은, 가능하고 실제적인 한도에서, 싱글윈도우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기술을 사용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무역업자들이 다양한 국경기관에서의 여러 국경절차 이행을 하

나의 창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회원국들이 싱글윈도우 환경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들은 무역업자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서류나 자료 요건을 단일 접수 지점을 통해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제출 할 수 있게 싱글윈도우를 설치 또는 유지하도록 하고, 제출된 서류나 자료의 검토 결과는 시의 적절하게 싱글윈도우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회원국들은, 가능하고 실제적인 한도에서, 싱글윈도우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싱글윈도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해설

- 싱글윈도우는 단일서류접수처로 해석될 수 있다. 수출입절차를 수행할 때 수출입업자들은 여러 부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서류를 여러 부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싱글윈도우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모든 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한 장소에 제출하고, 싱글윈도우의 직원이 그 서류나 서류에 포함되 있는 정보를 필요한 부처에 전달하도록 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어주는 제도이다.
- 이러한 싱글윈도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WTO 회원국들이 주장하였지만, 무역원활화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제도를 설립하기가 의외로 어렵다는 점이 밝혀졌다. 일부 국가에서는 각 부처간 협력체제가 취약하고, 부처간 경쟁이 심하며, 정보 비밀과 관련된 법의 문제까지도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싱글윈도우는 설립하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전자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부처간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야 하는데, 각 부처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다른 국가들도 많으므로 정보 공유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싱글윈도우 채택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국가 중 하나이

고,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싱글윈도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싱글윈도우에도 통관절차에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지만 아직 독립적인 신고체제를 유지하는 기관이 남아 있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싱글윈도우에 통합되지 않은 이들 기관들이 일반적 통관절차에는 관련하지 않는 기관이라 대부분의 신고는 싱글윈도우 하나만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IT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한 싱글윈도우를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보면, 싱글윈도우 구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교토협약에서도 싱글윈도우를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규정은 없다. 이는 싱글윈도우 구축의 어려움을 반영하지만 또한 개정교토협약은 세관에만 적용되는 협정이고, 세관 외 기타 통관관련 기관에는 별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 결과적으로 제4항에서 싱글윈도우 구축과 운영을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제4.1항에서는 싱글윈도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싱글윈도우에 제출한 서류는 다른 부처에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부처가 싱글윈도우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소 이례적인 것은 제4.3항에서 싱글윈도우 운영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이 규정은 싱글윈도우에 많은 애로사항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욱 좋은 싱글윈도우를 구축하고, 싱글윈도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회원국들이 아직 구축하지 못하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 회원국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 규정은 싱글윈도우의 구축과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System)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완벽한 싱글윈도우를 만들기는 의외로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싱글윈도우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마저도 일부 기관은 싱글윈도우에서 빠져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싱글윈도우를 구축하는 데에 더욱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그리고 전자통관의 선두자 중 하나로 우수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여러 나라에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해외개발지원(ODA)의 일부로 관세청과 KOICA는 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들에게 전자통관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 정부는 시스템의 수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하겠지만 ODA를 통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부나 증정, 저금리대출을 통한 시스템 구매지원 등을 늘릴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관시스템이 더욱 많은 국가들에 사용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되고, 그만큼 수출기업들의 무역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5) 제10조제5항. 선적전검사

### 5. Preshipment Inspection

5.1 Members shall not require the use of preshipment inspections in relation to tariff classification and customs valuation.

5.2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Members to use other types of preshipment inspection not covered by paragraph 5.1, Members are encouraged not to introduce or apply new requirements regarding their use.<sup>83)</sup>

## □ 번역

83) This paragraph refers to preshipment inspections covered by the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and does not preclude preshipment inspections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purposes.

## 5. 선적전검사

5.1 회원국들은 품목분류나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전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5.2 제5.1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종류의 선적전검사를 사용할 회원국들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회원국들은 그들의 사용에 대해 새로운 요건을 도입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권장된다.<sup>84)</sup>

### □ 취지

○ 개발도상국들이 선적전검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주로 수입물품의 내용과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선적전검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수입대상 상품의 품목분류나 관세평가와 관련해서는 선적전검사를 명시적으로 금함으로서 불필요한 선적전검사의 남용이란 비관세장벽요소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선적전검사가 통관절차의 중복을 가치고 올 수 있고, 통관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들은 품목분류나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전검사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종류의 선적전검사를 사용함에 있어 새로운 요건을 도입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권장된다.

### □ 해설

○ WTO 협정 가운데는 선적전검사협정도 있다. 이 협정은 회원국이 수출물량과 품질 및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적 전 검사를 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검사를 민간업체에게 하청하거나 맡기는 경우, 이러한 선적전검사가 GATT의 기본원리인 무차별원칙과 투명성 조건을 따르도록, 그리고 기업의 정당한 상업

84) 이 조항은 선적전검사협정의 대상이 되는 선적전검사를 의미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목적의 선적전검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적 비밀은 지키도록, 타당하지 않은 지연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격을 확인할 때 사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선적전검사에 있어서 재심/항소 절차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 제10조 제5항은 선적전검사협정의 내용을 다소 보완하고 있다. 즉, 선적전검사로써 품목분류나 관세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11일 뉴욕무역센터 테러사건 이전에는 대다수 선진국이 선적전검사가 통관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선적전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서류나 수입절차 과정에서 얻거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적전검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러한 입장은 EU와 대만이 제출한 2006년도 제안서에도 반영되는데, 동 제안서에서 제안국은 일정한 기간내 선적전검사의 사용을 금지하자고 제안하였다<sup>85)</sup>.

○ 그러나 미국은 9.11 테러사건 이후 보안을 위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수출국 역내에서 폭탄이나 위험물이 수출용 화물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선적전검사를 더욱 활발히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보안을 위한 선적전검사 등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즉, 보안목적의 선적전검사 등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허용하되, 행정적 문제와 세관과 수출입업자간 마찰이 심한 품목분류와 관세평가에 대해서만은 선적전검사제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WCO의 HS 협약이 널리 수용되어 있고, 관세평가에 대해서도 이미 WTO 관세평가협정이 있다. 이들 조약에 의해 품목분류와 관세평가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적전검사를 통한 접근이 의미가 없고,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제도(관세법 제246조)
- 수출물품에 대한 적재지검사제도(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

85) European Communities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2006)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 선적전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특히 품목분류나 관세평가와 관련해 선적전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므로 이 조항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거나 무역업체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물류보안과 관련한 선적전검사는 이 조항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같은 수출대상국의 요구에 의해 수출물품에 대한 물류보안 강화차원의 선적전검사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 한편, 우리나라가 수출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 선적전에 적재지에서 해당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 WTO의 선적전검사협정이나 무역원활화협정에서 말하는 선적전검사와는 차이가 있다. 협정에서 말하는 선적전검사는 수입국이 자국의 필요에 의해 수출국에서 일정한 검사를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한 국내외에서의 검사나 심사등과 관련해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제도) 인증 등을 통해 대응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6) 제10조제6항. 관세사의 사용

### 6. Use of Customs Brokers

6.1 Without prejudice to the important policy concerns of some Members that currently maintain a special role for customs broker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embers shall not introduce the mandatory use of customs brokers.

6.2 Each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and publish its measures on the use of customs brokers. Any subsequent modifications thereof shall be notified and published promptly.

6.3 With regard to the licensing of customs brokers, Members shall apply rules that are transparent and objective.

## □ 번역

### 6. 관세사의 사용

6.1 현재 관세사에 대한 특별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회원국들의 중요한 정책적 우려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회원국들은 관세사의 의무적 사용을 도입하지 아니한다.

6.2 각 회원국은 관세사의 사용에 관한 조치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공표한다. 이에 관한 모든 그 이후의 수정은 신속하게 위원회에 통보되고 공표된다.

6.3 관세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 □ 취지

○ 여러 나라에서 관세사는 통관전문가로서 통관절차에 깊숙이 참여한다. 그러나 관세사의 사용은 무역업체에게는 거래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통관과정에서 무역업체들이 필요에 의해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나 회원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관세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하여 가능한 경우 관세사 사용과 관련된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일부 WTO 회원국에서는 수출입절차와 관련해 관세사들이 부가하는 가치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 조항에서는 관세사의 의무사용을 금지하고 수출입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관세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 □ 내용요약

○ 회원국들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관세사의 의무적 사용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각 회원국은 관세사 사용에 관한 조치들을 통보하고 공표하며, 관세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 □ 해설

○ 일부 WTO 회원국들은 수출입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관세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협정의 원 취지 중 하나는 관세사 사용의 필요가 없도록 수출입 서류와 무역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단순화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이 이러한 취지를 비공식적으로 회람하자, 또 다른 일부 회원국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국내 관세법이나 무역절차 관련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관세사의 전문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기업들이 무역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제10조 제6.1항에서는 회원국이 관세사의 사용을 강제로 강요하지는 못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관세사를 사용하는 행동은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제6.2항에서는 관세사 사용에 대한 조치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화는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3항에서는 관세사 자격부여와 관련된 규율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하여, 관세사자격을 통한 지대추구(rent-seeking)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일반부속서 제8장에서 관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보다는 다소 다른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교토협약의 표준 8.1에서는 수출입업자가 관세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표준 8.2에서는 관세사 등 제3자가 수출입업자의 대리자 역할을 할 때 관세와 세금 등과 관련한 이상이 있을 경우 이들의 책임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표준 8.3에서는 수출입업자가 관세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 8.4에서는 대리인(관세사)은 신고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 8.5에서는 세관이 제3자(관세사)가 무역관련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준 8.6과 8.7에서는 세관이 제3자와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이러한 경우, 그 이유를 제3자에게 서류형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개정교토협약은 관세사 사용 의무화나 자격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기업이 관세사를 사용하기로 한 경우, 관세사들이 충분히 수출입업자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세사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또한 WCO(2014)에서는 관세사를 관리하고 이들과 같이 업무를 보는

데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관세사들의 프로필을 유지하고, 관세사들이 제출하는 정보를 처리하여 통관절차를 자동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사들에게 이러한 업무를 허용하려면 이들의 교육, 능력과 여력을 위험관리 측면에서 관찰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sup>86)</sup>.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관세사법(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전반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 법령은 통관과정에서 관세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업자들은 관세사 사용으로부터 부가가치를 얻고 있으므로 관세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기업에서 통관 담당 회사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수록 남은 통관업무를 관세사에 위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가의 아웃소싱은 합리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다. 다만 정부는 관세사가 기업에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관세사제도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이 조항으로 정부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거나 무역업체가 추가적인 편익을 볼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관세사의 의무적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의무적 사용이 폐지될 경우 수출업체에 다소 유리한 무역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지만 그 편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 7) 제10조제7항.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 7. Common Border Procedures and Uniform Documentation Requirements

7.1 Each Member shall, subject to paragraph 7.2, apply common

86) WCO(2014) p. I/26

customs procedures and uniform documentation requirements for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throughout its territory.

7.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Member from:

- (a) differentiating its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based on the nature and type of goods, or their means of transport;
- (b) differentiating its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for goods based on risk management;
- (c) differentiating its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to provide total or partial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or taxes;
- (d) applying electronic filing or processing; or
- (e) differentiating its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 번역

### 7.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7.1 각 회원국은, 제7.2항을 조건으로, 자신의 영역에 걸쳐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을 위한 공통의 세관절차 및 통일된 서류요건을 적용한다.

7.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다음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가. 상품의 성질 및 종류, 또는 그 운송수단에 근거하여 절차 및 서류요건을 달리하는 것
- 나. 위험 관리에 근거하여 상품을 위한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 다. 수입 관세 또는 조세의 전체 또는 부분의 면제를 제공하기 위해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 라. 전자적인 파일링 또는 처리; 또는
-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 □ 취지

○ 이 조항은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을 위한 세관절차에 있어 비합리적 차별 대우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내에 다수의 세관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관마다 다른 절차나 서류요건을 적용할 수 없게 하였다. 차별적인 절차의 이행요구는 절차의 이행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의 성질이나 종류, 운송형태 등에 따른 절차의 차이나 위험관리에 근거한 예외적 절차의 적용, 감면세 등을 위한 별도 절차의 요구 등 합리적 차별까지 금한 것은 아니다.

## □ 내용요약

○ 각 회원국은 상품의 성질 및 종류, 또는 그 운송수단에 근거하여 절차 및 서류요건을 달리하는 것 등 열거된 합리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영역에 걸쳐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을 위한 공통의 세관절차 및 통일된 서류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 □ 해설

○ 이 조항은 통관절차의 국내적인 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일국내 영역에서 상품의 반출이나 통관을 위한 세관절차 및 서류요건이 통일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즉, 세관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하고, 요구하는 서류도 다를 경우 무역업체는 서류준비 및 통관절차 이행에서 많은 애로를 겪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조항은 통관절차 및 서류요건의 국내적 통일만 의무적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통일된 통관절차와 서류요건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다수의 세관에서 통관절차가 이행되면서 그에 대한 해석이 세관마다 달라 서로 다른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항의 취지상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상 유의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 제7.2항은 통관절차에 있어 합리적 차별을 용인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합리적 차별은 무역장벽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관적법성의 달성과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WCO(2014, p.I/26)에서는 이러한 통일적 세관절차와 서류절차를 운영하려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수출입 및 반송통관 절차(관세법 제226조 내지 제261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국내법상 통관과 관련한 절차나 서류요건에 합리성이 결여된 어떤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한 추가적인 정부의 부담이나 수출입업체의 편익 증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상의 통일성 문제는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국과의 세관협력회의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8) 제10조제8항. 거부된 물품

#### 8. Rejected Goods

8.1 Where goods presented for import are rej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Member on account of their failure to meet prescribed sanitary or phytosanitary regulations or technical regulations, the Member shall, subject to and consistent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allow the importer to re-consign or to return the rejected goods to the exporter or another person

designated by the exporter.

8.2 When such an option under paragraph 8.1 is given and the importer fails to exercise i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competent authority may take a different course of action to deal with such noncompliant goods.

## □ 번역

### 8. 거부된 물품

8.1 수입을 위해 제시된 상품이 기술된 위생 또는 식품위생 규정 또는 기술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 회원국은 그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또 이와 합치하게, 수입자가 거부된 상품을 수출자 또는 수출자에 의해 지정된 다른 사람에게 재발송 또는 반환하도록 허용한다.

8.2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수입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그러한 비준수 상품을 다루기 위해 다른 종류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 취지

○ 이 조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위생이나 식품위생 규정 또는 기술 규정과 관련한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관이 불허된 경우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다만 수입자가 합리적기간 내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해당 물품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 □ 내용요약

○ 회원국은 수입을 위해 제시된 상품이 기술된 위생 또는 식품위생 규정 또

는 기술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 수입자가 거부된 상품을 반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수입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송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해당 상품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해설

○ 이 조항도 통관절차와 관련은 있지만, TBT협정과 SPS협정의 내용과 직결된 조항이다. 제8.1항에 의하면 위생이나 기술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물품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또는 다른 자에게 재발송이나 반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생이나 기술규정은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규정이 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통관이 불허될 경우 반송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제8.2항에서 수입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거부된 수입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정처리란 폐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 조항은 협상과정에서 인도가 제출한 내용인데<sup>87)</sup> 인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 특히 음식물은 파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물품은 전체의 일부뿐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정을 충족 못한 물품을 전체적으로 파기하기보다는 수입업자나 수출업자가 회수한 다음, 문제가 있는 부분만 걸러내고 다시 수출하면 수출입업자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제5조제3항에서 다루는 재시험 절차와도 연결된 내용이며, 농산품 수출국 및 수출업체의 편의를 배려해 주는 것이다.

○ 개정교토협약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수출입업자가 거부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운송비용을 내고, 이러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린다면 회원국 정부의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농산품 무역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87) 제안제출은 India (2006c), 논리설명은 India (2006a)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통합공고에 포함된 다수의 위생 또는 기술 규정 관련 법령
- 반송통관제도(관세법 제241조 내지 제250조)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수입을 목적으로 반입하였으나 수입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수입이 불필요한 경우 그 물품을 화주가 수출자 또는 수출자에 의해 지정된 다른 사람뿐 아니라 제3국의 제3자에게 반송하는 것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규정한 이상의 무역원활화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한 정부의 부담이나 무역업체의 편익증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된 물품에 대한 반송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출업체의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9) 제10조제9항. 상품의 일시 반입/역내 및 역외 가공

#### 9.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and Inward and Outward Processing

##### 9.1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Each Member shall allow, as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goods to be brought into its customs territory conditionally relieved, totally or partially, from payment of import duties and taxes if such goods are brought into its customs territory for a specific purpose, are intended for re-exportation within a specific period, and have not undergone any change except normal depreciation and wastage due to the use made of them.

## 9.2 Inward and Outward Processing

- (a) Each Member shall allow, as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inward and outward processing of goods. Goods allowed for outward processing may be re-imported with total or partial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and taxes in accordance with the Member's laws and regulations.
- (b)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inward processing" means the customs procedure under which certain goods can be brought into a Member's customs territory conditionally relieved, totally or partially, from payment of import duties and taxes, or eligible for duty drawback, on the basis that such goods are intended for manufacturing, processing, or repair and subsequent exportation.
- (c)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outward processing" means the customs procedure under which goods which are in free circulation in a Member's customs territory may be temporarily exported for manufacturing, processing, or repair abroad and then re-imported.

## □ 번역

### 9. 상품의 일시 반입/역내 및 역외 가공

#### 가. 상품의 일시 반입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이 특정한 목적으로 관세영역에 반입되고, 상품의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가치 감소 및 손실을 제외한 변화가 없는 채로 특정 기간 내에 재수출 될 예정인 경우, 그러한 상품이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조건부로 면제받고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 나. 역내 및 역외 가공

- (i)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의 역내 및 역외 가공을 허용한다. 역외가공이 허용된 상품은 그 회원국의 시행중인 법 및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재수출될 수 있다.
- (ii) 이 조항의 목적상 “역내 가공”은 특정 상품이 제조, 가공 또는 수리 및 그 이후의 수출이 예정된 경우, 그러한 상품이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조건부로 면제받고, 또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관세 영역으로 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한다.
- (iii) 이 조의 목적상 “역외가공”은 관세 영역에서 자유로이 유통되는 상품이 외국에서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된 뒤 재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사용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아닌 일시반입물품과 역내 및 역외가공물품에 대한 감면세조치를 보장하여 이와 관련된 물품의 무역원활화를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 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국제공급사슬을 통한 역내 또는 역외 가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생산과정 중에 있는 불완전상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가는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여 마찰이나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들은 일정기간 내에 원상태로 재수출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조건부 감면세 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품의 역내 및 역외가공을 허용하며, 역외가공을 위한 수출시 감면세와 수출이 예정된 역내가공 상품 수입시 감면세 또는 환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 □ 해설

○ 지난 20-30년간 공산품의 생산과정은 빠르게 글로벌화되었다. 국제공급사

슬(Global Supply Chain)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공산품의 생산과정이 여러 국가로 분산될 수 있고, 중간재가 여러차례 국경을 넘을 수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생산과정이 한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국가는 수출품의 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할 때 관세환급이나 관세유예제도를 사용하였지만, 중간재의 수출입 및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물품의 수출과 가공 후 재수입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관세환급제도나 관세유예제도는 이러한 다양화된 생산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따라서 개정교토협약에서도 특별부속서 G의 제1장에서 일시반입(temporary admission), 그리고 특별부속서 F의 제1장과 제2장에서 역내가공(inward processing)과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을 다루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의 제10조 제9항 가목은 일시반입을 다루고 있는데, 일시반입의 정의, 즉, “특정한 목적으로 관세영역에 반입되고, 상품의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가치 감소 및 손실을 제외한 변화가 없는 채로 특정 기간 내에 재수출될 예정인 상품”은 개정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G 제1장의 정의 E1/F1과 같다.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이러한 상품은 법과 규제에 따라 관세나 세금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시켜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G 제1장의 표준 2와 표준 3에서 의무화한 바와 같다.

○ 개정교토협약에서는 그 외에도 일시반입시 따라야 할 각종 절차와 주의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무역원활화협정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고 있지만<sup>88)</sup> 일부 내용들은 무역원활화협정보다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표준 7에서는 일시반입을 할 때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고관행 8에서는 오직 일시반입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일시반입용 특정 세관사무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일시반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만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 무역원활화협정 제10조 제9항 나목은 역내가공과 역외가공을 다루고 있다. 역시 개정교토협약과 같은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있지만, 개정교토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9항 나목의 i)항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각 국가의 법과 규제에 따라 역내가공과 역외가공에 있어서 적합한 통관절차를

88) 예를 들자면 특수부록G 제1장 권장 5에 따르면 일시반입 혜택은 수출국이나 최종도착국에 관련없이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일시반입 수입품에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WTO의 MFN원칙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이미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설립하고, 역내가공에 있어서는 전적 또는 부분적 관세 및 세금 면제제도를 설립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이와 유사한 조건이 없지만, 특별부속서 F의 제1장과 제2장에서 역내가공과 역외가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암묵적으로 역내가공과 역외가공의 바람직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정교토협약은 세관간의 협약이므로 법이나 규제로 역내가공과 역외가공을 허용하라는 내용은 WCO의 관할영역 밖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제9항 나목의 ii)항에서는 역내가공을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개정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F 제1장의 정의 E3/F2와 거의 같다. 단, 개정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F 제1장 표준 2에서는 역내가공을 위해 수입한 물품(중간재)는 관세와 세금을 조건부로 전적 면제시켜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무역원활화협정의 정의에서는 전적 면제뿐만이 아니라 부분적 면제와 관세환급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 제9항 나목의 iii)항에서는 역외가공을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도 역시 개정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제2장의 정의 E2/F1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차이가 한 가지 있다. 개정교토협약의 정의에서는 역외가공 이후 상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나 수입세금을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무역원활화협정의 정의에서는 재수입은 허용하지만, 관세나 수입세금 면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또한, 개정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F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역내가공과 역외가공시 절차와 서류에 관련, 세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권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개정교토협약의 내용 중 일부는 무역원활화협정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전반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은 역내가공과 역외가공에 있어서 개정교토협약보다 더 약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재수출면세 및 감면세제도(관세법 제97조 및 제98조)
- 재수입면세제도(관세법 제99조)
- 해외임가공물품감세제도(관세법 제101조)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이미 일시반입물품이나 해외임가공물품, 재수출물품, 재수입물품 등에 대해 관세법상 감면세조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해 정부에 추가적인 부담이나 기업에게 추가적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해외임가공활동이 훨씬 편리해지고 비용도 줄어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1조 : 통과와 자유

### ARTICLE 11 : FREEDOM OF TRANSIT

1. Any regulations or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traffic in transit imposed by a Member shall not be:

(a) maintained if the circumstances or objectives giving rise to their adoption no longer exist or if the changed circumstances or objectives can be addressed in a reasonably available less trade-restrictive manner;

(b)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ffic in transit.

2. Traffic in transit shall not be conditioned upon collection of any fees or charges imposed in respect of transit, except the charges for transportation or those commensurate with administrative expenses entailed by transit or with the cost of services rendered.

3. Members shall not seek, take, or maintain any voluntary restraints or any other similar measures on traffic in transit.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existing and future national regulations,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related to regulating transport, consistent with WTO rules.

4. Each Member shall accord to products which will be in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would be accorded to such products if

they were being transported from their place of origin to their destination without going through the territory of such other Member.

5. Members are encouraged to make available, where practicable, physically separate infrastructure (such as lanes, berths and similar) for traffic in transit.

6. Formalities, documentation requirements, and customs controls in connection with traffic in transit shall not be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to:

(a) identify the goods; and

(b) ensure fulfilment of transit requirements.

7. Once goods have been put under a transit procedure and have been authorized to proceed from the point of origination in a Member's territory, they will not be subject to any customs charges nor unnecessary delays or restrictions until they conclude their transit at the point of destination within the Member's territory.

8. Members shall not apply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within the meaning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o goods in transit.

9. Members shall allow and provide for advance filing and processing of transit documentation and data prior to the arrival of goods.

10. Once traffic in transit has reached the customs office where it exits the territory of a Member, that office shall promptly terminate the transit operation if transit requirements have been met.

11. Where a Member requires a guarantee in the form of a surety, deposit or other appropriate monetary or non-monetary<sup>89)</sup> instrument for traffic in transit, such guarantee shall be limited to ensuring that requirements arising from such traffic in transit are fulfilled.

12. Once the Member has determined that its transit requirements

have been satisfied, the guarantee shall be discharged without delay.

13. Each Member shall,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allow comprehensive guarantees which include multiple transactions for same operators or renewal of guarantees without discharge for subsequent consignments.

14. Each Member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the relevant information it uses to set the guarantee, including single transaction and, where applicable, multiple transaction guarantee.

15. Each Member may require the use of customs convoys or customs escorts for traffic in transit only in circumstances presenting high risks or when compliance with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cannot be ensured through the use of guarantees. General rules applicable to customs convoys or customs escorts shall be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16. Member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and coordinate with one another with a view to enhancing freedom of transit. Suc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an understanding on:

- (a) charges;
- (b) formalities and legal requirements; and
- (c) the practical operation of transit regimes.

17.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appoint a national transit coordinator to which all enquiries and proposals by other Members relating to the good functioning of transit operations can be addressed.

---

89) Nothing in this provision shall preclude a Member from maintaining existing procedures whereby the means of transport can be used as a guarantee for traffic in transit.

## □ 번역

### 제11조 통과와 자유

1. 회원국에 의해 부과되는 통과 교통 관련 모든 규정 또는 형식은;
  - 가.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변경된 상황 또는 목적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덜 무역 제한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지되지 않는다.
  - 나. 통과 교통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통과 교통은 운송 요금 또는 통과에 수반되는 행정적 비용 또는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요금을 제외하고,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징수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회원국들은 통과 교통에 관한 자발적 제한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추구하거나 취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이는 기존의, 그리고 미래의 국내 규정, WTO 규칙과 합치하는 운송을 규율하는 것과 관련된 양자 또는 다자 협약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각 회원국은 다른 모든 회원국의 영역을 통해 통과할 상품에 대해 그러한 상품이 그러한 다른 회원국의 영역을 거치지 않고 출발지로부터 목적지로 운송될 경우 그러한 상품에게 부여될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5. 회원국들은, 실행 가능한 경우, 통과교통 위한 물리적인 별도의 기반시설(도로, 정박지 및 그 밖의 유사한 것 등)을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권장된다.
6. 통과 교통 관련 형식, 서류 요건 및 세관 통제는 다음을 위해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가. 화물의 확인; 그리고
  - 나. 통과 요건의 충족 보장
7. 상품이 일단 통과 절차 중에 있고 회원국 영역 내 출발지로부터 진행을 승인은 경우, 그 상품은 회원국 영역 내 도착지에서 통과를 종료할 때까지 세

관 부과금 또는 불필요한 지연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 회원국들은 통과중인 상품에 대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 의미의 기술 규제 및 적합 판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회원국들은 상품의 도착 이전에 통과 서류 및 자료의 사전 파일링 및 처리를 허용하고 규정한다.
10. 통과 교통이 일단 회원국 영역을 벗어나는 세관에 도착한 경우, 통과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그 세관은 신속하게 통과 운영을 종료한다.
11. 회원국이 통과 교통에 대해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화폐 또는 비화폐<sup>90)</sup>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보증을 그러한 통과 교통으로부터 야기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된다.
12. 그 회원국이 일단 통과 요건이 만족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보증은 지체 없이 해제된다.
13. 각 회원국은, 그 법 및 규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영업자에 대한 다중 거래를 포함하는 종합 보증 또는 그 이후의 화물에 대한 해제 없는 보증의 갱신을 허용한다.
14. 각 회원국은 단일 거래 그리고, 가능한 경우, 다중 거래 보증을 포함하는 보증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련 정보를 공표한다.
15. 각 회원국은 고위험을 나타내는 상황 또는 관세법 및 규정의 준수가 보증의 사용을 통해 보장될 수 없는 경우에만 통과 교통을 위한 세관 호송 또는 세관 호위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 호송 또는 세관 호위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규칙은 제1조에 따라 공표된다.
16. 각 회원국은 통과와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기 위

---

90) 이 규정의 어떤 것도 운송 수단이 통과 교통을 위한 보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존 절차를 회원국이 유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해 노력한다. 그러한 협력 및 조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양  
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부과금;
- 나. 형식 및 법적 요건 ; 그리고
- 다. 통과 제도의 실제적인 운영

17. 각 회원국은 통과 운영의 훌륭한 작동과 관련된 다른 회원국에 의한 모든  
질의 및 제안을 다룰 조정자를 지정하도록 노력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통과화물의 자유보장과 비용부담 최소화를 담보하기 위해 화물  
이 통과하는 경유국과 수출입국의 각종 의무를 규정하였다. 특히 경유국은 통  
과화물에 대해 통과절차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요금이나 수수료도 징수하지  
말도록 하여 화물이 영토를 통과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한이 되도록 하였다.

## □ 내용요약

○ 회원국은 통과화물과 관련한 규정 또는 형식, 또는 절차가 가능한 한 덜 무  
역 제한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통과교통 관련  
모든 규정 또는 형식의 적용, 통과교통에 대한 제한, 특정국 통과화물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 통과화물에 대한 통과 교통관련 형식과 서류 및 세관의 통  
제, 통과절차의 운영 등이 포함된다.

○ 통과화물에는 운임 또는 통과에 수반되는 행정적 비용이나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요금을 제외하고는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징수 하지 않아야  
하며, 통과 교통에 대해 담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증 요구수준은 과다하  
지 않아야 한다.

○ 회원국은 고위험을 나타내는 상황 또는 관세법 및 규정의 준수가 보증의  
사용을 통해 보장될 수 없는 경우에만 통과 교통을 위한 세관 호송 또는 세관  
호위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통과와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해설

○ 화물의 역내지역 통과(transit), 즉 GATT 제V조에 대한 내용은 무역원활화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얻지는 못했다. 비록 제안된 내용은 많지만 대부분은 앞의 통관서류와 절차(GATT 제VIII조) 및 투명성(GATT 제X조)에 대한 내용을 화물통과에도 적용시키자는 내용으로 통과에만 적용되는 제안은 별로 없었다. WTO의 Analytical Index에 따르면 GATT 제V조를 이유로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한 건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sup>91)</sup> 대다수 회원국들은 새로운 규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긴급함도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내륙국가나 물류허브, 또는 홍콩과 같은 상업적 무역허브를 제외하면 국가들이 수출입절차에 있어서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국제공급사슬의 발달로 제3국 통과가 과거보다 늘어났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가들에게는 통과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무역원활화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볼 때 원문 작성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국가는 마케도니아, 몽골, 스위스와 스와질란드인데, 이들은 모두 해양을 접하지 않는 내륙국가이다.

○ 내륙국가를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은 통과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외는 EU이다. EU는 일찍부터 관세동맹을 구성하여 역내 무역 및 자본흐름 장벽을 제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독립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가간 차이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다. 일부 EU 국가들은 이러한 차이를 국가주권의 상징 및 각 국가의 필요성 때문에 유지하고자 하지만, 일부 EU 국가들과 EU단일화를 추진하는 관료들은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시키고자하고, 통관절차나 역내운송 및 무역의 자유화에 있어서 차이를 최소화하는 도구로 무역원활화협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EU의 내륙 회원국이나, 큰 항구가 없는 회원국에 수출을 하는 WTO회원국들도 EU의 국가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에 큰 관심을 보였다. EU는 특히 위의 제8조와 제10조제7항과 관련하여 여러 제안을 하였다.

○ 각 회원국들의 초기 제안을 보면 GATT 제X조와 제VIII조와 관련된 내용을

---

91) 2014년 5월 현재.

화물통과 차원에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종 결과물을 보면, 앞의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 제안들은 상당히 많이 제거되었거나 앞부분에 명시적으로 통합되었다. GATT 제V조에서는 통과를 정의하고, 가장 편한 통과노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었으며, 규제와 절차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의 통과화물을 동등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 제11조의 첫 4개 항은 이러한 기본적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1항에 따르면 통과에 관련된 규제와 절차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규제와 절차도 제거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한절차가 무역장벽으로 왜곡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각 회원국이 통과를 정부의 수입사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통과와 관련 부과되는 수수료는 실비와 유사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륙국가들은 일부 국가들이 통과절차를 정부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실비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경우가 있었고, 자국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규제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특히 많이 제시된 사례로 어떤 국가에서는 통과하는 화물트럭에 있어서 자국 운전사의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제1항과 제2항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제3항은 회원국들이 통과화물에 있어서 자발적 제한이나 유사한 사항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역시 회원국 정부가 통과 조건으로 부당한 요건을 비공식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한다. 위의 사례를 본다면, 비록 국가가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서 자국 운전사의 사용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권장”하는 경우, 이도 역시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3항은 이러한 권장을 불허하고 있다.

○ 제4항은 통과화물에 있어서 원산지나 최종 목적지, 통과하였던 국가와 향후 통과할 국가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GATT 제V조의 제5항과 제6항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지만, 취지로 보아 GATT 제V조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진다. 비록 국가별로 차별할 수는 없지만, 무역원활화협정의 다른 내용들과 같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험관리방법에 따라 통과제한이나 검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취할 수 있다.

○ 개정교토협약에서 통과에 대한 내용은 특별부속서 E의 제1장(통과)과 제2장(환적)에서 다루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 제11조의 첫 4개항과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정부록 E 제1장의 내용을 비교하면 무역원활화협정은 개정교토협약에 없는 일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개정교토협약에서는 필요가 없는 경우 통과를 제한하는 법이나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거나(제11조제1항), 수수료나 요금을 징수하지 않겠다거나(제11조제2항), 자발적인 제한을 요구하지 않겠다거나(제11조제3항), 화물의 출발국이나 도착국 또는 경유국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제11조제4항)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개정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E 제1장 표준 3에는 통과화물에 대해서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제시하지 않는다. 단, 무역원활화협정의 제10조제9항 가목이 통과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무역원활화협정은 개정교토협약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 WCO는 이러한 통과 의무를 수행할 때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면 세관사 무실들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고, 신고과정도 쉬워지기 때문에 제11조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관이 정보통신체제 및 자동화 절차를 수립하면, 통과화물의 경우 신고서류의 정보를 사용하여 사전처리와 위험관리를 할 수 있고, 입국과 출국시 화물이 같은지를 확인하기도 쉬워지며 보증금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수출입업자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통관절차 소요시간을 줄이면서 부정부패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실시간 화물추적 시스템까지 도입하면 보안과 법률 및 규제 집행 및 준수율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WCO(2014)는 지적하고 있다.<sup>92)</sup>.

○ 제4항 내지 제10항의 내용은 모두 화물이 회원국의 영역을 통과할 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줄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5항에서는 가능하면 회원국은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통과화물에 대한 시설을 따로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는 통과화물에 대한 불필요한 확인절차를 기피하여 확인 절차를 최소화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과화물은 통과하는 국가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제8항에서는 TBT협정에서 요구하는 규제와 표준인증작업을 적용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항에서는 통과화물은 영토 입국지와 출국지에서만 세관의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의 제7조와 제10조의 여러 조항에서 보았듯이 서류의 사전접수와 심사는 통관절차 소요시간을 줄이는 데에

92) WCO(2014) p.I/28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제9항에서는 통과화물에도 이러한 서류의 사전접수와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에서는 통과화물이 영역 출국지에 도착하는 경우, 신속하게 출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E의 제1장과 제2장이 통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내용과 무역원활화협정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무역원활화협정은 원칙, 개정교토협약은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정교토협약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이 제11조제5항에서 제시한 통과화물용 특별 시설의 유지, 제8항의 기술적 표준 심사 금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무역원활화협정의 제11조제7항과 제10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개정교토협약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E 제1장의 표준 23과 24에 의하면 통과화물이 통과국의 출국 세관사무소에 도착하면 화물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통과절차를 마무리 짓고 지연없이 출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 23에서는 도착지에서는 화물과 화물신고서만을 확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통과 도중 추가적인 검사나 요구사항이 없어야 하고, 모든 기타 절차는 출발 세무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제11조제6항 및 제7항과 유사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

○ 무역원활화협정 제11조제9항에서는 통과화물에 대해서도 사전서류심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개정교토협약에는 없지만, 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E 제1장 6과 7에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화물신고서만으로 통과화물 서류절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협정 모두 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개정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E의 제1장에서는 통과화물과 관련 다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통과화물시 책임자의 설정, 세관봉인(customs seal), 통과화물의 통로선택의 자유<sup>93)</sup>, 그리고 통과절차 소요시한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특별부속서 E의 제2장은 환적을 다루고 있는데, 무역원활화협정의 협상과정에서는 화물의 환적에 대한 제안이 몇 건 접수되었지만 최종협정에서는 환적에 관한 사항은 없다. 반면,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제11조 제11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이를 다루는 내용이 없다.

○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는 통과화물의 보증금에 대한 규정이다. 개정교토협

93) 이 내용은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GATT 제V조에서 다루고 있다.

약에서는 통과화물에 대한 보증금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새롭게 다루는 분야이다. 보증금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시한 원칙은 무역원활화협정의 다른 규정에서 요구하거나 의무화하는 조항과 비슷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제11항에서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과 규제를 준수하기에 필요한 최소한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나 요금, 벌금에 있어서 부과하는 비례의 원칙과 비슷한 맥락이다. 제12항에서는 통과가 완료된 경우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관절차가 끝나면 물품을 신속하게 반출하라는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 제13항에서는 복수의 거래를 포함하는 보증금 제도를 허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원활화협정 제7조제8항 2의 가목(특송화물)에서 서류 단일제출을 허용한 원칙, 그리고 제7조제7항 3의 마목에서 승인된 영업자에게 종합보증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14항에서는 보증과 관련된 법, 규제 및 기타 정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투명성 원칙과 동일하다. 따라서 제11항 내지 제14항은 보증금에 대해서 무역원활화협정의 기본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제15항에서는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이 세관호송이나 호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개정교도협약의 특별부속서 E 제1장의 표준 12와 표준 15에서 부과하는 의무와 유사하다. 제16항은 회원국간 협력에 대하여 모든 WTO 협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통과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력과 조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조항이다. 제17항은 제1조제3항의 단일질의처나 제10조제4항의 싱글윈도우와 유사한 개념으로 통과와 관련된 질의나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는 단일접수처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를 확실히 선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제도(관세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

- 환적 및 복합환적과 관련된 제도(관세법 제140조 내지 제143조)
- 도로차량의 국경출입제도(관세법 제148조 내지 제152조)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통과하는 화물이나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는 화물에 대해 최소의 서류를 요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검사를 하지 않는다. 또한 통과화물에 대해 어떤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우리 정부에 부담이 추가되거나 무역업계에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수출물품을 외국에서 통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제약을 받거나 담보등을 요구하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이 조항으로 인해 이러한 관행이 시정될 경우 수출업체에 편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제12조 : 세관협력

### 1) 제12조제1항. 준수 및 협력을 촉진하는 조치

#### ARTICLE 12: CUSTOMS COOPERATION

##### 1. Measures Promoting Compliance and Cooperation

1.1 Members agree on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traders are aware of their compliance obligations, encouraging voluntary compliance to allow importers to self-correct without penalty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and applying compliance measures to initiate stronger measures for non-compliant traders.<sup>94)</sup>

1.2 Members are encouraged to share information on best practices in managing customs compliance, including through the Committee. Members are encouraged to cooperate in technical guidance or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for the purposes of administering compliance measures and enhancing their effectiveness.

## □ 번역

### 제12조. 세관 협력

#### 1. 준수 및 협력을 촉진하는 조치

1.1 회원국들은 무역업자들이 그들의 준수 의무를 알도록 보장하는 것, 수입자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벌금 없이 스스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자발적 준수를 장려하는 것, 그리고 비준수 무역업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개시하기 위한 준수 조치들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한다.<sup>95)</sup>

1.2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위원회를 통해서 세관 준수를 다루는데 있어 모범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회원국들은 준수 조치들을 집행하고 그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능력 배양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원조에 있어 협력하도록 권장된다.

## □ 취지

○ 이 조항은 무역업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역업자들이 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알 수 있게 보장하고, 오류를 발견할 경우 스스로 정정할 수 있게 하며, 비준수업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통관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출입업자로 하여금 통관절차의 정책목적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선의적인 수출입업자들에게는 배려를 해주고, 악의적인 수출입업자들에 세관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회원국들은 무역업자들이 그들의 준수 의무를 알도록 보장하고, 수입자들이

94) Such activity has the overall objective of lowering the frequency of non-compliance, and consequently reducing the need for exchange of information in pursuit of enforcement.

95) 그러한 활동은 비준수의 빈도를 낮추고, 이에 따라 집행 목적의 정보 교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을 전반적인 목표로 한다.

적절한 상황에서 벌금 없이 스스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자발적 준수를 장려하며, 그리고 비준수 무역업자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하기 위한 준수 조치들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 □ 해설

○ 세관은 국제무역의 중요한 단계인 통관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하지만, 수출입 또는 통과화물과 이들과 관련된 당사자가 요구되는 법과 규제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는 사법경찰과 같은 일종의 수사기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관간 정보를 교류할 때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정책 및 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거시적 정보와 개별 사건, 화물 및 신고자와 관련된 미시적 정보이다. 효과적 세관집행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정보의 교류가 적절하게 활성화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는 거시적 정보의 교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제2항부터 제11항에는 미시적 정보의 교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세관집행에서 서로 협력을 하도록 행정협조협정 체결을 장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거시적, 미시적 정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WCO에서 미시적 정보 교류에 대한 내용은 개정교토협약보다는 Nairobi Convention 같은 다른 협약에서 정보교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거의 모든 WTO협정에서는 각 협정이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회원국간 정책과 정책의 집행에 관련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제12조의 제1.2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무역원활화협정에서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1항에서는 통관절차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준수도를 높이는 것이고, 따라서 수입업자들이 실수를 하였지만 자발적으로 실수를 정정하는 경우, 이들을 최대한 배려해 주고,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무역업자들에 조치를 집중한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2항에서는 무역원활화위원회 회를 통해서 회원국들간 세관 준수를 다루는데 있어 모범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아울러 상호 협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제도(관세법 제255조의 2)
- 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관세법 제255조의 3)
- 세관상호지원협정(조약 20개국, 기관간협정 9개국)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에서 통관과정에서 무역업자들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중시하고 그 준수도에 따라 차별적인 배려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다. 오늘날 대표적인 것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이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정부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거나, 무역업체에 어떤 편익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2) 제12조제2항~11항. 정보의 교환 등

### 2. Exchange of Information

2.1 Upon request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Members shall exchange the information set out in subparagraphs 6.1(b) and/or (c)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an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in identified cases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doubt the truth or accuracy of the declaration.

2.2 Each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details of its contact point for the exchange of this information.

### 3. Verification

A Member shall make a request for information only after it has conducted appropriate verification procedures of an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and after it has inspected the available relevant documentation.

#### **4. Request**

4.1 The requesting Member shall provide the requested Member with a written request, through paper or electronic means in a mutually agreed official language of the WTO or other mutually agreed language, including:

- (a) the matter at issue including, where appropriate and available, the number identifying the export declaration corresponding to the import declaration in question;
- (b) the purpose for which the requesting Member is seeking the information or documents, along with the names and contact details of the persons to whom the request relates, if known;
- (c) where required by the requested Member, confirmation<sup>96)</sup> of the verification where appropriate;
- (d) the specific information or documents requested;
- (e) the identity of the originating office making the request;
- (f) reference to provisions of the requesting Member'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that govern the collection, protection, use, disclosure, retention, and disposal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personal data.

4.2 If the requesting Member is not in a position to comply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4.1, it shall specify this in the request.

#### **5.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5.1 The requesting Member shall, subject to paragraph 5.2:

- (a) hold all information or documents provided by the requested Member strictly in confidence and grant at least the same level of such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as that provided under the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of the requested Member as described by it under subparagraphs 6.1(b) or (c);
- (b) provide information or documents only to the customs authorities dealing with the matter at issue and use the

information or documents solely for the purpose stated in the request unless the requested Member agrees otherwise in writing;

- (c) not disclose the information or document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permission of the requested Member;
- (d) not use any unverified information or documents from the requested Member as the deciding factor towards alleviating the doubt in any given circumstance;
- (e) respect any case-specific conditions set out by the requested Member regarding retention and disposal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documents and personal data; and
- (f) upon request, inform the requested Member of any decisions and actions taken on the matter as a result of the information or documents provided.

5.2 A requesting Member may be unable under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to comply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5.1. If so, the requesting Member shall specify this in the request.

5.3 The requested Member shall treat any request and verification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4 with at least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accorded by the requested Member to its own similar information.

## **6. Provision of Information**

6.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requested Member shall promptly:

- (a) respond in writing, through paper or electronic means;
- (b) provide the specific information as set out in the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or the declaration, to the extent it is available, along with a description of the level of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required of the requesting Member;
- (c) if requested, provide the specific information as set out

in the following documents, or the documents, submitted in support of the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to the extent it is available: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certificate of origin and bill of lading, in the form in which these were filed, whether paper or electronic, along with a description of the level of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required of the requesting Member;

- (d) confirm that the documents provided are true copies;
- (e) provide the information or otherwise respond to the request, to the extent possible,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6.2 The requested Member may require, under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an assurance prior to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hat the specific information will not be used as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judicial proceedings, or in non-customs proceeding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permission of the requested Member. If the requesting Member is not in a position to comply with this requirement, it should specify this to the requested Member.

## **7. Postponement or Refusal of a Request**

7.1 A requested Member may postpone or refuse part or all of a request to provide information, and shall inform the requesting Member of the reasons for doing so, where:

- (a) it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s reflected in the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of the requested Member;
- (b)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prevents the release of the information. In such a case it shall provide the requesting Member with a copy of the relevant, specific reference;
- (c)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or otherwise interfere with an on-going administrative or judicial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 (d) the consent of the importer or exporter is required by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that govern the collection, protection, use, disclosure, retention, and disposal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personal data and that consent is not given; or

- (e) the request for information is receiv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legal requirement of the requested Member for the retention of documents.

7.2 In the circumstances of paragraphs 4.2, 5.2, or 6.2, execution of such a request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Member.

## **8. Reciprocity**

If the requesting Member is of the opinion that it would be unable to comply with a similar request if it was made by the requested Member, or if it has not yet implemented this Article, it shall state that fact in its request. Execution of such a request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Member.

## **9. Administrative Burden**

9.1 The requesting Member shall take into account the associated resource and cost implications for the requested Member in responding to requests for information. The requesting Member shall consider the proportionality between its fiscal interest in pursuing its request and the efforts to be made by the requested Member in providing the information.

9.2 If a requested Member receives an unmanageable number of requests for information or a request for information of unmanageable scope from one or more requesting Member(s) and is unable to meet such requests within a reasonable time, it may request one or more of the requesting Member(s) to prioritize with a view to agreeing on a practical limit within its resource constraints. In the absence of a mutually-agreed approach, the execution of such requests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Member based on the results of its own prioritization.

## **10. Limitations**

A requested Member shall not be required to:

- (a) modify the format of its import or export declarations or procedures;
- (b) call for documents other than those submitted with the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as specified in subparagraph 6.1(c);
- (c) initiate enquiries to obtain the information;
- (d) modify the period of retention of such information;
- (e) introduce paper documentation where electronic format has already been introduced;
- (f) translate the information;
- (g) verify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or
- (h) provide information that would prejudice th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enterprises, public or private.

## **11. Unauthorized Use or Disclosure**

11.1 In the event of any breach of the conditions of use or disclosure of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rticle, the requesting Member that received the information shall promptly communicate the details of such unauthorized use or disclosure to the requested Member that provided the information and:

- (a) take necessary measures to remedy the breach;
- (b)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y future breach;  
and
- (c) notify the requested Member of the measures taken under subparagraphs (a) and (b).

11.2 The requested Member may suspend its obligations to the requesting Member under this Article until the measures set out in paragraph 11.1 have been taken.

## □ 번역

### 2. 정보의 교환

2.1 신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수입 또는 수출 신고의 진위 또는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확인된 사례에 있어 수입 또는 수출 신고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6항 나호 및/또는 다호에 명시된 정보를 교환한다.

2.2 각 회원국은 이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 3. 검증

회원국은 수입 또는 수출 신고의 적절한 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이용 가능한 관련 서류를 검사한 이후에만 정보를 요청한다.

### 4. 요청

4.1 요청 회원국은, 피요청 회원국에게 상호 합의된 WTO 언어 또는 그 밖의 언어로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면 요청서를 제공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 가. 적절하고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수입 신고에 상응하는 수출 신고의 일련번호를 포함한, 문제가 된 사항
- 나. 알려진 경우, 요청과 관련된 인의 이름 및 세부 연락처와 함께, 요청 회원국이 구하는 정보 또는 서류의 목적
- 다. 피요청 회원국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적절한 경우 검증의 확인<sup>96)</sup> 제공
- 라. 요청된 특정 정보 또는 서류;
- 마. 요청하는 기관의 신원

---

96) This may include pertinent information on the verifica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3. Such inform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level of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specified by the Member conducting the verification.

97) 이는 제12조 제3항에 따라 수행된 검증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그 검증을 수행한 회원국에 의해 명시된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을 조건으로 한다.

바. 비밀 정보 및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하는 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의 규정에 대한 언급

4.2 요청 회원국이 제4.1항 각호 중 어떤 것이라도 준수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경우, 이를 요청에 명시한다.

## 5. 보호 및 비밀유지

5.1 요청 회원국은 제5.2항을 조건으로 :

가. 피요청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 또는 서류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고 제6.1.항 나호 및 제6.2항 다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 하에서 제공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비밀 유지를 부여한다.

나. 문제가 된 사항을 다루는 세관 당국에만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하며, 피요청 회원국이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서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 또는 서류를 사용한다.

다. 피요청 회원국의 특정 서면 허가 없이 정보 또는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 또는 서류를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의심을 경감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비밀 정보 또는 서류 및 개인 자료의 보유 및 폐기에 관하여 피요청 회원국이 제시한 모든 구체 사안별 조건을 존중한다.; 그리고

바.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된 정보 또는 서류의 결과로 그 사항에 대해 취해진 모든 결정 및 행동을 피요청 국가에 통보한다.

5.2 요청 회원국이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 하에서 제5.1항 각호 중 하나라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요청 회원국은 이를 요청에 명시한다.

5.3 피요청 회원국은 제4항에 따라 받은 모든 요청 및 검증 정보를, 피요청 회원국이 자국의 유사한 정보에 부여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보호 및 비밀유지 수준으로 다루어야 한다.

## 6. 정보의 제공

6.1 이 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피요청 회원국은 신속하게 :

- 가. 종이 혹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면으로 응답한다.;
- 나. 수입 또는 수출 신고에 제시된 특정한 정보, 또는 신고를, 이용 가능한 한도에서, 요청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의 기술과 함께, 제공한다.
- 다. 요청되는 경우, 이용 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또는 수출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다음의 서류 또는 서류들에 명시된 특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요청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유지 수준의 기술과 함께, 종이든 전자적이든, 제출된 형태의, 상업 송장, 포장목록, 원산지 증명 및 선하증권;
- 라. 제공된 서류가 진짜 사본임을 확인한다
- 마. 가능한 한도에서,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에 달리 응답한다.

6.2 피요청 회원국은, 그 국내법 및 법제도에 따라, 특정한 정보가 피요청 회원국의 특정한 서면 허가 없이 범죄 조사, 사법 소송, 또는 비세관 절차에 증거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정보 제공에 앞서 요구할 수 있다. 요청 회원국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입장인 경우 이를 피요청 회원국에게 특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7. 요청의 연기 또는 거절

7.1 피요청 회원국은, 다음의 경우, 정보 제공 요청의 부분 또는 전부를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요청 회원국에 통보한다.

- 가.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반영된 공익에 반하는 경우
- 나.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가 정보의 반출을 금지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관련된 특정 문헌의 사본을 정보 요청국에 제공한다.
- 다. 정보의 제공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진행 중인 행정적 혹은 사법적 조사, 기소 또는 소송을 달리 방해하는 경우
- 라. 비밀 정보 또는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

- 을하는 국내법 및 법제도에 의해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동의가 요구되고, 그러한 동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 마. 서류 보관을 위한 피요청 회원국의 법적 요건이 만기된 후 정보 요청을 받은 경우

7.2 제4.2항, 제5.2항 또는 6.2항의 상황에서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 8. 상호주의

요청 회원국이 자국의 요청과 유사한 요청을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거나, 또는 이 조를 아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요청에 명시한다.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 9. 행정부담

9.1 요청 회원국은 정보 요청에 응하는 데 있어 피요청 회원국의 행정에 대한 관련 자원 및 비용 영향을 고려한다. 요청 회원국은 그 요청 추구에 따른 재정적 이익과 피요청 회원국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노력 사이의 비례성을 고려한다.

9.2 피요청 회원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청 회원국으로부터 처리하기 힘든 수의 정보 요청 또는 처리하기 힘든 범위의 정보를 요청받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러한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피요청 회원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청 회원국에게 그 자원 제약 내의 실질적 제한에 동의하도록 우선순위를 매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합의된 접근의 부재시,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자국의 우선순위결과에 근거한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 10. 제한

피요청 회원국들은 다음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 가. 피요청 회원국들의 수입 또는 수출 신고 또는 절차 양식의 수정

- 나. 제6항 다호에 명시된 수입 또는 수출 신고와 함께 제출된 서류 이외의 서류 요구
- 다. 정보 획득을 위한 질의 개시
- 라. 그러한 정보의 보유 기간 수정
- 마. 전자적 양식이 이미 도입된 경우 종이 서류의 도입
- 바. 정보의 번역
- 사. 정보의 정확성 검증
- 아.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제공

## 11. 비승인 사용 또는 공개

- 11.1 이 조에 따라 교환된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조건 위반의 경우, 정보를 받은 요청 회원국은 그러한 비승인 사용 또는 공개의 세부사항을 정보를 제공한 피요청 회원국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그리고 ;
- 가. 그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나. 추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 다. 피요청 회원국에게 상기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통보한다.
- 11.2 피요청 회원국은 제11.1항에 명시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이 조에 따라 요청 회원국에 대한 의무를 중지할 수 있다.

### □ 취지

○ 제2항 내지 제11항은 회원국 세관간의 간 수출입신고의 진위 또는 정확성 확인을 위한 정보의 교환 즉, 미시적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 정부는 통관절차 관련 법과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이 충실히 통관절차 관련 법과 규제를 지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여타 회원국에게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여타 회원국들은 이러한 요청을 받을 경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적절하게 질문에 응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 내용요약

○ 제2항 : 회원국들은 수입 또는 수출 신고의 진위 또는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확인된 사례에 있어 수입 또는 수출 신고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 신고에 제시된 특정한 정보, 또는 신고 정보를 교환한다. 아울러 이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 제3항 :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수입 또는 수출신고 내용에 대해 적절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 제4항 :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회원국은 피요청 회원국에게 상호 합의된 WTO 언어 또는 그 밖의 언어로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면요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면요청서에는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또는 서류내용뿐 아니라 그와 같은 정보 또는 서류제공 요청의 목적, 요청기관의 신원과, 비밀 정보 및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하는 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의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여야 한다.

○ 제5항 : 정보와 자료를 요청한 회원국은 피요청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 또는 서류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고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 하에서 제공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요청 회원국도 요청받은 내용과 검증 정보를 자국의 유사한 정보에 부여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보호 및 비밀유지 수준으로 다루어야 한다. 회원국이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는 문제가 된 사항을 다루는 세관 당국에서만 사용하고, 피요청 회원국이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서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 또는 서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피요청 회원국의 특정 서면 허가 없이 정보 또는 서류를 공개할 수 없다.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 또는 서류를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의심을 경감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된 정보 또는 서류의 결과로 그 사항에 대해 취해진 조치의 내용을 피요청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 비밀정보 또는 서류 및 개인 자료의 보유 및 폐기에 관하여는 피요청 회원국이 제시한 모든 구체 사안별 조건을 존중한다.

○ 제6항 : 정보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회원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에 달리 응답한다. 응답은

종이 혹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면으로 하며, 수입 또는 수출 신고에 제시된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청되는 경우,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입 또는 수출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 및 선하증권이 진짜 사본임을 확인하여 제공한다. 이때 요청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의 기술도 함께 제공한다. 피요청 회원국은 정보 제공에 앞서 특정한 정보가 피요청 회원국의 특정한 서면 허가 없이 범죄 조사, 사법 소송, 또는 비세관 절차에 증거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요청 회원국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입장인 경우 이를 피요청 회원국에게 특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제7항 : 피요청 회원국은 ①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반영된 공익에 반하는 경우, ②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가 정보의 반출을 금지하는 경우, ③ 정보의 제공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진행 중인 행정적 혹은 사법적 조사, 기소 또는 소송을 달리 방해하는 경우, ④ 비밀 정보 또는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법제도에 의해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동의가 요구되고, 그러한 동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⑤ 서류 보관을 위한 피요청 회원국의 법적 요건이 만기된 후 정보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내용의 부분 또는 전부를 연기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요청 회원국에 통보한다. 정보와 자료를 요청한 회원국이 제4.2항, 제5.2항 또는 6.2항에서 열거하여 규정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그러한 요청을 집행할 것인지는 피요청 회원국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 제8항 : 정보와 자료를 요청할 때 만일 요청 회원국이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유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쪽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 제9항 : 요청 회원국은 그 요청 추구에 따른 재정적 이익과, 정보 요청에 응하는 데 있어 피요청 회원국의 행정에 대한 관련 자원 및 비용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요청 회원국이 여러 회원국으로부터 처리하기 힘든 수의 정보 요청 또는 처리하기 힘든 범위의 정보를 요청받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러한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피요청 회원국은 요청 회원국들에게 그 자원 제약 내의 실질적 제한에 동의하도록 우선순위를 매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자국의 우선순위 결과에 근거한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으로 한다.

○ 제10항 : 피요청 회원국들은 수입 또는 수출신고 또는 절차 양식의 수정을 요구받거나 수입 또는 수출신고와 함께 제출된 서류 이외의 서류 요구받지 않으며, 정보획득을 위한 질의에 응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정보의 보유 기간을 수정하도록 요구받거나 전자적 양식이 이미 도입된 경우 종이 서류의 도입을 요구받지 않으며, 정보의 번역 또는 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요구받거나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제공을 요구받지 않는다.

○ 제11항 : 교환된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조건 위반의 경우, 정보를 받은 요청 회원국은 그러한 비승인 사용 또는 공개의 세부사항을 정보를 제공한 피요청 회원국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그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추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취해진 조치에 대해 피요청 회원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요청 회원국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이 조에 따라 요청 회원국에 대한 의무를 중지할 수 있다.

○ 제12항 : 무역원활화협정에 의한 세관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또는 교환과 관련된 규정이 양자, 복수국간, 또는 지역 협정에서의 세관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또는 교환과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러한 양자, 복수국간, 또는 지역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 또는 의무를 변경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러한 협정에 따른 세관 정보 및 자료 교환을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 해설

○ 12조의 제2항 내지 제11항은 수출입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별화물 또는 신고자나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회원국의 세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경우, 각 국가 세관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는 조항이다. 제1항에서 언급하였듯이 세관은 일종의 수사기관의 역할을 함으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사적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따라서 수사기관들과 유사하게 정보를 요청할 때 여기에 대한 절차와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제2항(2.1항과 2.2항)에서는 회원국들은 이러한 정보를 교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무조건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게 하였다. 제3항에 따라

확인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제4항에서 제시한 요청형태를 따라야 한다. 요청을 받은 국가(피요청국)은 제6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문서나 전자문서의 형태로 수출입신고서에 있는 내용, 또는 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인증서, 선하증권 등 통관관련 서류로 보고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무역원활화협정은 피요청국에게 상당히 많은 권리를 부여해 주고 있다.

○ 제5항에서는 피요청국이 보내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보호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소한도 요청국의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여하는 수준의 비밀 보호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가 노출될 경우, 제1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6.2항에서는 이 정보의 사용이 허락없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요청국에게 주고 있다.

○ 제7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공공질서나 자국법에 어긋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요청국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제8항과 제9항에 따르면 요청국이 피요청국의 정보요구를 잘 응해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피요청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너무 큰 경우 또는 너무 많은 경우 역시 피요청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항에서는 정보제공에 따른 피요청국의 부담을 제한시켜 주는 각종 조치를 나열하고 있다.

○ 이러한 미시적 정보교환에 따른 규칙은 대다수 FTA에서도 포함되고 있다. 한미FTA에서도 제7.5조제7항에서 신고서 확인을 위한 정보의 교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7.7조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보안 및 비밀성 유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무역원활화협정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대부분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WCO 차원에서는 미시적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개정교토협약에는 규정이 없지만, WCO는 1977년 체결된 WCO Nairobi Convention와 2003년 협상이 완료된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on Customs Matters-Johannesburg Convention에서 이러한 미시적 정보의 교류를 다루고 있다. 또한 WCO는 세계 세관 네트워크 가능성 연구(Feasibility Study on Globally Networked Customs: GNC)에서 정보 공유에 따르는 문제점과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 체제, 정보 기준, 공동운영, 보안, 정보 저장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Utility Block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Utility Block은 정보를 표준화하여 전달하게 하기 때문에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다<sup>98)</sup>. Nairobi Convention의 내용과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피요구국이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다고 보여진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관세법 제255조의 3)
- 세관상호지원협정(조약 20개, 기관간 협정 9개)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다수 국가들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고, 또 주기적으로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세관과 협력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21세기 들어 개발도상국에 대해 세관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이 조항이 정부에 어떤 부담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 3) 제12조제12항. 정보의 교환 등

#### 12. Bilateral and Regional Agreements

12.1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Member from entering into or maintaining a bilateral, plurilateral, or regional agreement for sharing or exchange of customs information and data, including on a secure and rapid basis such as on an automatic basis or in advance of the arrival of the consignment.

12.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altering or affecting a Member's rights or obligations under such bilateral, plurilateral, or regional agreements, or as governing the exchange of customs information and data under such other agreements.

98) WCO (2014) p.I/33

## □ 번역

### 12. 양자 및 지역 협정

12.1 이 조의 어떤 것도 회원국이 자동적인 방식이나 화물도착 이전 방식과 같이 안전하고 신속한 방식을 포함하여 세관 정보 및 자료를 공유 또는 교환하기 위해 양자, 복수국간, 또는 지역 협정을 도입 또는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12.2 이 조의 어떤 것도 그러한 양자, 복수국간, 또는 지역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 또는 의무를 변경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러한 협정에 따른 세관 정보 및 자료 교환을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회원국간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 양자 또는 지역협정을 맺고자 할 때 무역원활화협정이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제12조의 어떤 것도 회원국이 안전하고 신속한 방식을 포함하여 세관 정보 및 자료를 공유 또는 교환하기 위해 양자, 복수국간, 또는 지역 협정을 도입 또는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조의 어떤 것도 그러한 양자, 복수국간, 또는 지역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 또는 의무를 변경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러한 협정에 따른 세관 정보 및 자료 교환을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 해설

○ 무역원활화협정은 더욱 원활한 미시적 정보 교류를 위해서 양자 또는 지역적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력협정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은 아니지만, 무역원활화협정을 빌미로 협력이 약화되는 경우를 막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분석된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관세법 제255조의 3)
- 세관상호지원협정(조약 20개, 기관간 협정 9개)
-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각 FTA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가 FTA를 협상할 때 필요한 경우 무역원활화협정의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정보 교류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4. 제2절(SECTION II)

제13조 내지 제22조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규정

<p>SECTION II</p> <p>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p> <p>ARTICLE 13: GENERAL PRINCIPLES</p> <p>1. The provisions contained in Articles 1 to 12 of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by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which is based on the modalities agreed in Annex D of the July 2004 Framework Agreement (WT/L/579) and in paragraph 33 of and Annex E to th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5)/DEC).</p> <p>2.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sup>99)</sup> should be</p>
--

provided to help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ure and scope. The extent and the timing of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capacitie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Where a developing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continues to lack the necessary capacity,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ed will not be required until implementation capacity has been acquired.

3.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will only be required to undertake commitment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ir individual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or their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capabilities.

4. These principles shall be applied through the provisions set out in Section II.

#### **ARTICLE 14: Categories of provisions**

1. There are three categories of provisions:

(a) Category A contains provisions that a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designates for implementation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in the cas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within one year after entry into force, as provided in Article 15.

(b) Category B contains provisions that a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designates for implementation on a date after a transitional period of time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s provided in Article 16.

(c) Category C contains provisions that a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designates for implementation on a date after a transitional period of time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requiring the acquisition of implementation capacity through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as provided for in Article 16.

2. Each developing country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self-designate, on an individual basis, the provisions it is including under each of the Categories A, B and C.

#### **ARTICLE 15: NO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CATEGORY A**

1.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implement its Category A commitments. Those commitments designated under Category A will thereby be mad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2.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may notify the Committee of the provisions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A for up to one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commitments designated under Category A will thereby be mad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 **ARTICLE 16: NOTIFICATION OF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OF CATEGORY B AND CATEGORY C**

1.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that a developing country Member has not designated in Category A, the Member may delay implem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set out in this Article.

##### **Developing Country Member Category B**

(a)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provisions that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B and their corresponding indicative dates for implementation.<sup>100)</sup>

(b)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its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B. If a developing country Member, before this deadline, believes it requires additional time to notify its definitive dates, the Member may request that the Committee extend the period sufficient to notify its dates.

##### **Developing Country Member Category C**

(c)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provisions that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C and their corresponding indica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For transparency purposes, notifications submitted shall include information on th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hat the Member requires in order to implement.<sup>101)</sup>

- (d) Within one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relevant donor Members, taking into account any existing arrangements already in place, notifications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22 and information submitted pursuant to subparagraph (c) above, shall provide information to the Committee on the arrangements maintained or entered into that are necessary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o enable implementation of Category C.<sup>102)</sup> The participa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promptly inform the Committee of such arrangements. The Committee shall also invite non-Member donors to provide information on existing or concluded arrangements.
- (e) Within 18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stipulated in subparagraph (d), donor Members and respective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inform the Committee of the progress in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Each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at the same time, notify its list of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2. With respect to those provisions that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has not designated under Category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may delay implem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set forth in this Article.

####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Category B

- (a)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its Category B provisions and may notify their corresponding indica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of these provisions, taking into account maximum flexibilities

f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 (b)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date stipulated under subparagraph (a) above, each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to confirm designations of provisions and notify its dates for implementation. I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before this deadline, believes it requires additional time to notify its definitive dates, the Member may request that the Committee extend the period sufficiently to notify its dates.

####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Category C

- (c) For transparency purposes and to facilitate arrangements with donors, one year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provisions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C, taking into account maximum flexibilities f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 (d) One year after the date stipulated in subparagraph (c) abov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notify information on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hat the Member requires in order to implement.<sup>103)</sup>
- (e)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under subparagraph (d) abov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relevant donor Members, taking into account information submitted pursuant to subparagraph (d) above, shall provide information to the Committee on the arrangements maintained or entered into that are necessary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o enable implementation of Category C.<sup>104)</sup> The participating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promptly inform the Committee of such arrangements. Th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at the same time, notify indica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of corresponding Category C commitments covered by the assistance and support arrangements. The Committee shall also invite non-Member donors to provide information on existing and concluded arrangements.
- (f) No later than 18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stipulated in subparagraph (e), relevant donor Members and respectiv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inform the Committee of the progress in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Each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at the same time, notify the Committee of its list of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3.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submitting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within the deadlines set out in paragraphs 1 and 2 because of the lack of donor support or lack of progress in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should notify the Committee as early as possible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ose deadlines. Members agree to cooperate to assist in addressing such difficulties,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special problems facing the Member concerned. The Committee shall, as appropriate, take action to address the difficulties including, where necessary, by extending the deadlines for the Member concerned to notify its definitive dates.

4. Three months before the deadline stipulated in subparagraphs 1(b) or (e), or in the cas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ubparagraphs 2(b) or (f), the Secretariat shall remind a Member if that Member has not notified a definitive date for implementation of provisions that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B or C. If the Member does not invoke paragraph 3, or in the case of a developing country Member subparagraph 1(b), or in the cas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ubparagraph 2(b), to extend the deadline and still does not notify a definitive date for implementation, the Member shall implement the provisions within one year after the deadline stipulated in subparagraphs 1(b) or (e), or in the cas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ubparagraphs 2(b) or (f), or extended by paragraph 3.

5. No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dates for notification of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of Category B and Category C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2, or 3, the Committee shall take note of the annexes containing each Member's definitive dates for implementation of Category B and Category C provisions, including any dates set under paragraph 4, thereby making these annexe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17: EARLY WARNING MECHANISM: EXTENSION OF  
IMPLEMENTATION DATES FOR PROVISIONS IN CATEGORIES B AND  
C**

1.

(a) A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that considers itself to be experiencing difficulty in implementing a provision that it has designated in Category B or Category C by the definitive date established under subparagraphs 1(b) or (e) of Article 16, or in the cas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ubparagraphs 2(b) or (f) of Article 16, should notify the Committee.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notify the Committee no later than 120 day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implementation dat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notify the Committee no later than 90 days before such date.

(b) The notification to the Committee shall indicate the new date by which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expects to be able to implement the provision concerned. The notification shall also indicate the reasons for the expected delay in implementation. Such reasons may include the need for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not earlier anticipated or additional assistance and support to help build capacity.

2. Where a developing country Member's request for additional time for implementation does not exceed 18 months 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request for additional time does not exceed 3 years, the requesting Member is entitled to such additional time without any further action by the Committee.

3. Where a developing country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considers that it requires a first extension longer than that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r a second or any subsequent extension, it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a request for an extension containing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subparagraph 1(b) no later than 120 days in respect of a developing country Member and 90 days in respect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riginal definitive implementation date or that date as subsequently extended.

4. The Committee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granting requests for extension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Member submitting the request. These circumstances may include difficulties and delays in obtaining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 **ARTICLE 18: IMPLEMENTATION OF CATEGORY B AND CATEGORY C**

1.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13, if a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having fulfilled the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 1 or 2 of Article 16 and in Article 17, and where an extension requested has not been granted or where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otherwise experiences unforeseen circumstances that prevent an extension being granted under Article 17, self-assesses that its capacity to implement a provision under Category C continues to be lacking, that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its inability to implement the relevant provision.

2.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an Expert Group immediately, and in any case no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Committee receives the notification from the relevant developing country Member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The Expert Group will examine the issue and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Committee within 120 days of its composition.

3. The Expert Group shall be composed of five independent persons that are highly qualified in the fields of trade facilitation and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he composition of the Expert Group shall ensure balance between nationals from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y Members. Where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is involved, the Expert Group shall include at least one national from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If the Committee cannot agree on the composition of the Expert Group within 20 days of its establishment, the Director-General,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 of the Committee, shall determine the composition of the Expert Group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paragraph.

4. The Expert Group shall consider the Member's self-assessment of lack of capacity and shall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Committee. When considering the Expert Group's recommendation concerning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the Committee shall, as appropriate, take action that will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sustainable implementation capacity.

5. The Member shall not be subject to proceedings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on this issue from the time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notifies the Committee of its inability to implement the relevant provision until the first meeting of the Committee after it receives the recommendation of the Expert Group. At that meeting,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the recommendation of the Expert Group. F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the proceedings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shall not apply to the respective provision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to the Committee of its inability to implement the provision until the Committee makes a decision on the issue, or within 24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first Committee meeting set out above, whichever is earlier.

6. Where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loses its ability to implement a Category C commitment, it may inform the Committee and follow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Article**.

#### **ARTICLE 19: SHIFTING BETWEEN CATEGORIES B AND C**

1.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who have notified—provisions under Categories B and C may shift provisions between such categories through the submission of a notification to the Committee. Where a Member proposes to shift a provision from Category B to Category C, the Member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assistance and support required to build capacity.

2. In the event that additional time is required to implement a provision shifted from Category B to Category C, the Member may:

(a) use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including the opportunity

for an automatic extension; or

- (b) request an examination by the Committee of the Member's request for extra time to implement the provision and, if necessary, for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a review and recommendation by the Expert Group under Article 18; or
- (c) in the cas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any new implementation date of more than four years after the original date notified under Category B shall require approval by the Committee. In addition,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continue to have recourse to Article 17. It is understood that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s required for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so shifting.

#### **ARTICLE 20: GRACE PERIOD FOR THE APPLICATION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1. For a period of two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Articles XXII and XXIII of GATT 1994 as elaborated and applied by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shall not apply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against a developing country Member concerning any provision that the Member has designated in Category A.
2. For a period of six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Articles XXII and XXIII of GATT 1994 as elaborated and applied by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shall not apply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against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concerning any provision that the Member has designated in Category A.
3. For a period of eight years after implementation of a provision under Category B or C by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XXII and XXIII of GATT 1994 as elaborated and applied by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shall not apply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against that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concerning that provision.

4. Notwithstanding the grace period for the application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fore making a request for consultations pursuant to Articles XXII or XXIII of GATT 1994, and at all stages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with regard to a measure of a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 a Member shall give particular consideration to the special situation of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In this regard, Members shall exercise due restraint in raising matters under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volving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5. Each Member shall, upon request, during the grace period allowed under this Article,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to other Members for discussion with respect to any issue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 **ARTICLE 21: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1. Donor Members agree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o developing country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on mutually agreed terms either bilaterally or through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objective is to assist developing country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Section I of this Agreement.

2. Given the special needs of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targeted assistance and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th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o as to help them build sustainable capacity to implement their commitments. Through the relevant development cooperation mechanisms and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echnical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development partners shall endeavour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in a way that does not compromise existing development priorities.

3. Members shall endeavour to apply the following principles for providing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 (a) take account of the overall developmental framework of recipient countries and regions and, where relevant and appropriate, ongoing reform an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 (b) include, where relevant and appropriate, activities to address regional and sub-regional challenges and promote regional and sub-regional integration;
- (c) ensure that ongoing trade facilitation reform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are factored into assistance activities;
- (d) promote coordination between and among Members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including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to ensure maximum effectiveness of and results from this assistance. To this end:
  - (i) coordination, primarily in the country or region where the assistance is to be provided, between partner Members and donors and amo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s should aim to avoid overlap and duplication in assistance programs and inconsistencies in reform activities through close coordination of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nterventions;
  - (ii) f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the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assistance for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a part of this coordination process; and
  - (iii) Members should also promote internal coordination between their trade and development officials, both in capitals and in Geneva,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echnical assistance.
- (e) encourage use of existing in-country and regional coordination structures such as roundtables and consultative groups to coordinate and monitor implementation activities; and
- (f) encourage developing country Members to provide

capacity building to other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consider supporting such activities, where possible.

4. The Committee shall hold at least one dedicated session per year to:

- (a) discuss any problem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provisions or sub-parts of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b) review progress in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ncluding any developing 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not receiving adequat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 (c) share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n ongoing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and implementation programs, including challenges and successes;
- (d) review donor notifications as set forth in Article 22; and
- (e) review the operation of paragraph 2.

#### **ARTICLE 22: INFORMATION ON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O BE SUBMITTED TO THE COMMITTEE**

1. To provide transparency to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on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for implementation of Section I, each donor Member assis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at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nually thereaf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its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that was disbursed in the preceding 12 months and, where available, that is committed in the next 12 months<sup>105</sup>):

- (a) a description of th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 (b) the status and amount committed/disbursed;

- (c) procedures for disbursement of the assistance and support;
- (d) the beneficiary Member or, where necessary, the region; and
- (e) the implementing agency in the Member providing assistance and support.

The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in the format specified in Annex

1. In the case o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the “OECD”) Members, the information submitted can be based on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Developing country Members declaring themselves in a position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are encourag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above.

2. Donor Members assis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 (a) contact points of their agencies responsible for providing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Section I of this Agreement including, where practicable, information on such contact points within the country or region where the assistance and support is to be provided; and
- (b) information on the process and mechanisms for requesting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Developing country Members declaring themselves in a position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are encourag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above.

3.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intending to avail themselves of trade facilitation-related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information on contact point(s) of the office(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and prioritizing such assistance and support.

4. Members may provide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through internet references and shall update the information as necessary. The Secretariat shall make all such information publicly available.

5. The Committee shall invite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OEC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the WCO, United Nations Regional Commissions, the World Bank, or their subsidiary bodies,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and other agencies of cooperation to provid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4.

## □ 번역

### 제2절 :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규정

#### 제13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의 제1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은, 2004년 7월의 기본골격 협정 (WT/L/579) 부속서 D 및 홍콩 각료 선언(WT/MIN(05)/DEC) 제33항 및 부속서 E에서 합의된 세부 원칙에 근거한 이 장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 의해 이행된다.

99)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may take the form of technical, financial, or any other mutually agreed form of assistance provided.

100) Notifications submitted may also include such further information as the notifying Member deems appropriate. Members are encourag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omestic agency or entity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101) Members may also include information on national trade facilitation implementation plans or projects, the domestic agency or entity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and the donors with which the Member may have an arrangement in place to provide assistance.

102) Such arrangements will be on mutually agreed terms, either bilaterally or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sistent with paragraph 3 of Article 21.

103) Members may also include information on national trade facilitation implementation plans or projects, the domestic agency or entity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and the donors with which the Member may have an arrangement in place to provide assistance.

104) Such arrangements will be on mutually agreed terms, either bilaterally or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sistent with paragraph 3 of Article 21.

105) The information provided will reflect the demand driven nature of the provision of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2. 능력 배양<sup>106)</sup>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은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 성격 및 범위에 따라, 제공된다.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한도 및 시기는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이행 능력과 관계된다.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필요한 능력을 계속해서 결여하는 경우, 해당 규정(들)의 이행은 이행 능력이 획득될 때까지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그들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 필요 또는 그들의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능력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만 약속을 하도록 요구된다.
4. 이 원칙들은 제2절에 기술된 규정들을 통해 적용된다.

#### 제14조. 규정의 유형

1.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규정이 존재한다.
  - 가. A유형은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시 이행을 지정한 규정,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효 후 1년 이내 이행을 지정한 규정을 포함한다.
  - 나. B유형은,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회원국이나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 과도 기간 후의 일자에 이행을 지정한 규정을 포함한다.
  - 다. C유형은,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회원국이나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 과도 기간 후의 일자에 이행을 지정하고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통한 이행 능력 획득을 요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2. 각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개별적으로, 각 A, B 및 C 유형에 포함시킬 규정들을 스스로 지정한다.

---

106)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은 기술, 재정, 또는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모든 지원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 A유형의 통보 및 이행

1. 이 협정의 발효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의 A유형 의무를 이행한다. A유형으로 지정한 의무들은 이에 이 협정의 불가분한 일부가 될 것이다.
2.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까지 A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A유형으로 지정된 각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의무는 이에 이 협정의 불가분한 일부가 될 것이다.

## 제16조. B유형 및 C유형 확정이행일의 통보

1. 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하지 않은 규정들에 대해, 그 회원국은 이 항에 기술된 과정에 따라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 개발도상회원국 B유형

- 가. 이 협정의 발효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B유형으로 지정한 규정 및 이에 상응하는 잠정 이행을 위원회에 통보한다.<sup>107)</sup>
- 나.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B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의 확정 이행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각 개발도상회원국이, 이 시한 전에, 자국의 확정 이행을 통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에 이행일 통보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개발도상회원국 C유형

- 다. 이 협정의 발효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 및 이에 상응하는 잠정 이행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투명성 목적을 위해, 제출된 통보는 그 회원국이 이행을 위해 요구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sup>108)</sup>

107) 제출된 통보는 통보하는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정보 역시 포함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이행의 책임이 있는 국내 기관/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108) 회원국들은 국내의 무역원활화 이행 계획 또는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국내 기관/실체;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이 협약을 체결한 공여국에 관한 정보 역시 포함시킬 수 있다.

- 라.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개발도상회원국 및 관련 공여회원국은, 이미 존재하는 모든 기존의 협약들, 제22조에 따른 통보 및 다호에 따른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여, C유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중이거나 발효한 협약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sup>109)</sup> 참여중인 개발도상회원국은 그러한 협약을 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린다. 위원회는 기존의 또는 타결된 협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회원국 공여국 역시 초청한다.
- 마. 라호에 명시된 정보의 제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공여회원국 및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을 위원회에 알린다.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동시에, 확정이행일 목록을 통보한다.

2.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하지 않은 규정들에 대해,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이 항에 기술된 과정에 따라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 최빈개발도상회원국 B유형

-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한 최대한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자국의 B유형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하며 이에 상응하는 이러한 규정들의 잠정 이행을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 나. 상기 가호에 명시된 통보일 후 2년 이내에, 각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위원회에 규정의 지정을 통보하고 이행을 통보한다. 만일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이 시한 전에, 자국의 확정이행일을 통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에 이행일 통보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최빈개발도상회원국 C유형

- 다. 투명성 목적에서 그리고 공여국과의 협약을 촉진하기 위해, 이 협정의 발효 1년 후에 각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한 최대한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자국이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sup>109)</sup> 그러한 협약은, 제9.3항에 합치하게,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해, 상호 합의된 조건에 근거할 것이다.

- 라. 상기 다호에 명시된 날로부터 1년 후에,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이행을 위해 그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보한다.<sup>110)</sup>
- 마. 라호에 따른 통보 후 2년 이내에, 최빈개발도상회원국 및 관련 공여 회원국은, 상기 라호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여, C유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중이거나 발효한 협약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참여중인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그러한 협약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공한다.<sup>111)</sup>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동시에, 원조 협약에 의해 해당되는 C유형 의무에 상응하는 잠정이행일을 통보한다. 위원회는 기존의 또는 타결된 협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회원국 공여국 역시 초청한다.
- 바. 마호에 명시된 정보 제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관련 공여 회원국 및 해당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을 위원회에 알린다. 각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동시에, 확정이행일 목록을 통보한다.

3. 공여국의 지원 부족 또는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 부족으로 인해 1항 및 2항에 기술된 기한 내에 확정이행일을 통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 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그러한 기한의 만료 이전에 가능한 빨리 위원회에 통보한다. 회원국들은, 해당 회원국이 당면한 특정 상황 및 특정 문제를 고려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다루는 것을 돕기 위해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회원국이 확정 이행일을 통보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경우, 그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 행동을 취한다.

4. 1항 나호 또는 1항 다호,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2항 나호 또는 2항 바호에 명시된 기한 3개월 전에, 사무국은 회원국이 B 또는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의 확정 이행일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회원국에게 이를 상기시킨다. 그 회원국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3항 또는 4항 나호,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4항 나호를 원용하지 않고 확정이행일 역시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그 회원국은 4항 나호 또는 4항 마호, 또는 최빈개발도상 회원국의 경우 4항 나호 또는 4항 바호에 명시된 기한, 또는 4항에 의해

110) 회원국들은 국내의 무역원활화 이행 계획 또는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국내 기관/실체;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이 협약을 체결한 공여국에 관한 정보 역시 포함시킬 수 있다.

111) 그러한 협약은, 제9.3항에 합치하게,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해, 상호 합의된 조건에 근거할 것이다.

연장된 기한 후 1년 이내에 그 규정을 이행한다.

5. 1호, 2호 또는 3호에 따른 B유형 및 C유형의 확정이행일 통보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4호에 다른 모든 일자를 포함하여, 각 회원국의 B유형 및 C유형 규정의 확정이행일을 포함한 부속서를 작성하며, 이에 이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한 일부가 된다.

## 제17조. 조기 정보 매커니즘 : B유형 및 C유형 규정 이행일의 연장

1.
  - 가. 자국이 B유형 또는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을 1항 나호 또는 1항 마호,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2항 나호 또는 2항 바호에 따라 설정한 확정이행일까지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이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은 이행일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이행일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
  - 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해당 규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새로운 날짜를 나타낸다. 그 통보는 또한 이행 지연이 예상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그러한 이유는 이전에 예상되지 못한 원조의 필요 또는 능력 배양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원조를 포함할 수 있다.
2. 개발도상회원국의 추가적인 이행 시간 요청이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추가적인 시간 요청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요청 회원국은 위원회의 추가적인 행동 없이 그러한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한다.
3.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2항에 규정된 것보다 긴 첫 번째 연장 또는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연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원래의 확정이행일 또는 이후에 연장된 날짜의 만료 120일 이전까지, 최빈개발도상국의 경우 90일 이전까지, 1항 나호에 기술된 정보를 포함한 연장 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요청을 제출하는 회원국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요청을 부여하는데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원조 획득의 어려움 및 지연을 포함할 수 있다.

## 제18조. B유형 및 C유형의 이행

1. 제16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7조에 명시된 절차를 충족하고, 요청된 연장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제13조의 2항에 따라 부여되는 연장을 방해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달리 경험하고 있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C유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능력이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관련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2. 무역원활화 위원회는 즉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전문가 그룹을 설치한다. 전문가 그룹은 그 문제를 조사하고 그 구성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 권고한다.
3. 전문가 그룹은 무역원활화 및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분야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춘, 5명의 독립된 인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그룹의 구성은 선진회원국 및 개발도상회원국 국적 간의 균형을 보장한다.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된 경우, 전문가 그룹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최빈개발도상회원국 사람을 포함한다. 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의 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이항의 조건에 따라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결정한다.
4. 전문가 그룹은 능력 부족에 대한 회원국의 자가 평가를 고려하고 무역원활화위원회에 권고한다.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지속가능한 이행 능력 획득을 촉진하는 행동을 취한다.
5. 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 때로부터 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받은 후 첫 번째 회의까지 그 회원국은 그 문제에 관해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 회의에서, 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고려한다.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해당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 날로부터 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또는 상기 명시된 첫 번째 위원회 회의 후 24개월 이내 중 더 빠른 시기까지 분쟁해결양해는 해당 규정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C유형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 국가는 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이 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 제19조. B유형 및 C유형간 이동

1. B유형 및 C유형 규정을 통보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위원회에 대한 통보 제출을 통해 그러한 유형의 규정을 이동시킬 수 있다. 회원국이 어떤 규정을 B유형에서 C유형으로 이동시킬 것을 제안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요구되는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어떤 규정을 B유형에서 C유형으로 이동시킨 결과 그 규정의 이행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그 회원국은
  - 가. 자동 연장 기회를 포함하여, 제17조의 규정들을 사용 할 수 있다.
  - 나. 그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추가 시간 및,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검토 및 권고 가능성을 포함한,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다.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B유형에 따라 통보된 원래 날짜 이후 4년 이상의 새로운 이행일은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추가적으로,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제17조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은 그러한 이동을 하는 최빈개발도상국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 제20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유예기간

1.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동안,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해 구

체화되고 적용되는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A 유형으로 지정한 모든 규정에 관해 그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분쟁 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6년 동안,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해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모든 규정에 관해 그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분쟁 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 의한 B유형 및 C유형 규정의 이행 후 8년 동안,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해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그러한 규정에 관해 그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분쟁 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기 전에, 그리고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조치와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회원국은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특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최빈개발도상회원국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른 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적절히 자제한다.
5. 각 회원국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 항에 따라 허용되는 유예기간동안,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적절한 논의 기회를 그 밖의 회원국들에게 제공한다.

## 제21조.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의 제공

1. 공여 회원국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을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그 목적은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 제1절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2.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특정 필요를 고려하여, 특정 원조 및 지원은 최빈개

발도상회원국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공된다. 관련 개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그리고 제9.3항에 언급된 기술 원조 및 능력배양 원칙과 일관성 있게, 개발 협력자들은 기존의 개발 우선순위를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분야에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한다.

3. 회원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가. 수혜 회원국 및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프레임워크 및, 관련되고 적절한 경우, 진행중인 개혁 및 기술 원조 프로그램을 고려

나. 관련되고 적절한 경우, 지역 및 하부지역 도전을 다루고 지역 및 하부지역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

다. 민간 분야의 진행중인 무역원활화 개혁 활동이 원조 활동에 고려되도록 보장

라. 원조에 따른 최대한의 효과 및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간 그리고 지역 경제 공동체를 포함한 그 밖의 관련 기관과의 조정 촉진

1) 주로 원조가 제공될 국가 또는 지역에서, 협력국 및 공여국 간의, 그리고 양자 및 다자 공여국간의, 조정은 기술 원조 및 능력 배양 개입의 긴밀한 조정을 통해 개혁 활동에서의 원조 프로그램의 중복 및 비일관성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

2)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 이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강화된 통합 프레임워크(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적용

3) 회원국들은 또한, 본부와 제네바 양쪽에서, 협정 이행 및 기술 원조에 있어 그들의 무역 및 개발 공무원간의 내부 조정을 촉진

마. 이행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해 원탁회의 및 자문 그룹과 같은 기존의 국가 내 및 지역적 조정 구조의 사용을 장려

바. 개발도상회원국이 그 밖의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게 능력 배양을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

4. 위원회는 다음을 위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의 전용 세션을 개최한다.

가. 규정 또는 규정의 일부의 이행 관련 문제 논의

나. 적당한 기술원조 및 능력 배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 지원 및 능력배양 제공의 진전 검토
- 다. 도전 및 성공을 포함하여, 진행중인 원조 및 이행 프로그램에 관한 경험 및 정보 공유
- 라. 제22조에 명시된 공여자의 통보 검토
- 마. 제2항의 운영 검토

## 제22조. 위원회에 제출된 원조에 관한 정보

1. 제1절의 이행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에 관해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을 원조하는 각 공여 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시 및 그 후 매년, 지난 12개월동안 지출된, 가능한 경우, 향후 12개월동안 지출이 약속된,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sup>112)</sup>
  - 가.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기술
  - 나. 약속된/지출된 상태 및 금액
  - 다. 원조 및 지원의 지출 절차
  - 라. 수혜국, 또는, 필요한 경우, 수혜지역 ; 그리고
  - 마.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회원국의 이행 기관

정보는 부속서1에 명시된 형태로 제공된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제출된 정보는 OECD 통계보고지침(Credit Reporting System)으로부터의 관련 정보에 근거할 수 있다. 자국이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선언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상기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2.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을 원조하는 공여 회원국은 위원회에 다음을 제출한다 :
  - 가. 실현가능한 경우, 원조 및 지원이 제공될 국가 또는 지역 내의 그러한 접촉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제1절의 규정 이행과 관련된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책임지는 기관의 접촉선
  - 나. 원조 및 지원 요청을 위한 과정 및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

112) 제공된 정보는 기술 원조 제공의 수요 견인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3. 무역원활화 관련 원조 및 지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 개발도상회원국은 그러한 원조 및 지원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무소의 접촉선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회원국은 제2항 및 제3항의 정보를 인터넷 참조를 통해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된 정보를 갱신한다. 사무국은 그러한 모든 정보를 공표한다.
5.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제4항에 언급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MF, OECD, UNCTAD, WCO, UN 지역 이사회, 세계은행, 또는 그 보조 기구, 그리고 지역 개발 은행과 같은)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 및 그 밖의 협력 기관을 초청한다.

## □ 취지

○ 제2절(제14조 내지 제22조)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 적용할 예외적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기술협력 및 지원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지원국과 수여국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였다.

## □ 내용요약

○ 제13조 : 이 협정의 제1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은 이 장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 의해 이행된다.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필요한 능력을 계속해서 결여하는 경우, 해당 규정(들)의 이행은 이행 능력이 획득될 때까지 요구되지 아니한다.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그들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 필요 또는 그들의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능력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만 약속을 하도록 요구된다.

○ 제14조 :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해 A, B, C유형이 정해져 있으며,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이들 유형에 포함시킬 규정들을 스스로 지정한다.

가. A유형 :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시 이행을 지정한 규정,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발효 후 1년 이내

이행을 지정한 규정

나. B유형 : 개발도상회원국이나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 과도 기간 후의 일자에 이행을 지정한 규정

다. C유형 : 개발도상회원국이나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 과도 기간 후의 일자에 이행을 지정하고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통한 이행 능력 획득을 요하는 규정

○ 제15조 : 이 협정 발효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의 A유형 의무를 이행한다.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까지 A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하지 않은 규정들에 대해 그 회원국은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 제16조 : 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하지 않은 규정들에 대해 그 회원국은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 B 또는 C유형으로서 협정에 기술된 과정에 따라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 제17조 : 자국이 B유형 또는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을 정해진 확정이행일 까지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조기경보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규정이행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 :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이 C유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능력이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관련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하여 그 문제를 조사하고, 전문가그룹의 권고를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지속가능한 이행능력을 촉진하는 행동을 취한다.

○ 제19조 : B유형 및 C유형 규정을 통보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위원회에 대한 통보제출을 통해 그 유형의 규정을 이동시킬 수 있다.

○ 제20조 : 이 협정 발효 후 2년(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6년) 동안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해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모든 규정에 관해 그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분쟁 해결에 적용되지 않는다.

○ 제21조 :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이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회원국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을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위원회는 원조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의 전용 세션을 개최한다.

○ 제22조 : 원조 및 지원의 제공에 관해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을 원조하는 각 공여 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시 및 그 후 매년, 지난 12개월 동안 지출된, 가능한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 지출이 약속된,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조 및 지원이 제공될 국가 또는 지역 내의 그러한 접촉선과 원조 및 지원 제공을 책임지는 기관의 접촉선과 원조 및 지원 요청을 위한 과정 및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해설

○ 제1절의 제7조와 제10조가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핵심이라면, 제2절의 내용은 다른 WTO협정과 다른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WTO가 도하라운드 이후 협상에서 새로운 이슈들을 다룬다면 제2절과 유사한 의무와 권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애틀 각료회의 전후 무역원활화가 도하라운드의 이슈로 포함될지의 여부를 논의할 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간 WTO 각종 협정에 대한 견해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선진국은 무역장벽의 제거 및 자유무역화가 선진국 자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적 시장개방을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WTO 시장개방은 선진국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며, 자국에게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별 이득이 없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큰 부담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적 시장개방을 반대하거나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 특히 선진국이 UR에서 MFA협정의 철회 및 농산품 시장의 추가 개방을 약속하였지만, MFA의 철회나 농산품 시장 확장이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 UR 이후 즉시 발효된 TRIPS협정은 개발도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집행의무를

강화시킴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집행비용 및 부담을 증가시키고, AIDS나 말라리아 독감 약품의 비용도 증가시켰다. 이에 대해 선진국이 약속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UR에서 합의한 협정에서 제시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협정 도입기간(특별대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무역원활화 및 여타 싱가포르 이슈가 뉴라운드 에 포함되는 데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이 폭발하였고 그것이 여기에서 뉴라운드 합의가 실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이었다.

○ 4개의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은 주로 선진국 위주의 주제로 인식되었다. 무역과 투자는 1990년대 말 OECD MAI(다자투자협정)에서 일부 다루어진 주제였지만, 일부 선진국들이 다른 국가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WTO에서도 협상의 진전이 의심되었던 이슈였다. 무역과 경쟁정책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이 협상시작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미국의 경우 경쟁정책이 WTO 차원에서 규정되는 경우, 반덤핑조치를 사용하기가 더욱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포함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은 제대로 된 경쟁정책 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해석 및 집행력, 반독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보였다. 따라서 이 두 이슈는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을 위한 이슈라는 인식이 있었다.

○ 세 번째 싱가포르 이슈인 정부조달 투명성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조달시장의 투명성 이슈만 다루고 시장개방은 다루지 못하도록 합의하였지만, 협상준비과정에서 선진국은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는, 즉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정부조달마저도 투명성협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일부 투명성 내용은 주로 선진국이 참여하고 있는 복수국간협정인 WTO 정부조달협정의 내용과 유사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정부조달 투명성이 개발도상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선진국들이 투명성협정을 정부조달시장개방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시 정부조달의 투명성이 뉴라운드 과제로 포함되는 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 이와 관련, 무역원활화는 확실히 개발도상국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처음부터 인식되었다. 단, 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은 항구와 공항의 인프

라 및 물질적 통관절차에 대한 조건이 엄격한 경우, 자본과 장비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무역원활화협정의 협상을 추진한다면 UR 협상의 협정들과는 달리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혜가 단순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넘어 선진국의 구체적인 기술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UR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대가로 약속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원활화협정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선진국에게는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선진국들은 세계은행이나 ODA 및 양자협상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지원, 특히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을 협정에서 의무화시키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 무역원활화협정 제2절의 최종 내용은 이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를 절충한 결과물이다. 기존 WTO 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들에게 일정한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정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 기존 협정과 같이 협정의 각종 의무를 즉시 발효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A유형과 일정 유예기간 이후 발효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B유형으로 분리시키지만, 기존협정과는 달리 개발도상국들에게 A유형과 B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제14조). 또한, 개발도상국들과 최빈개발도상국들에게 일부 의무(C유형)는 적합한 지원을 받아야만 발효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유형C는 이전 UR협정에서는 볼 수 없는 혁신적인 제안이라 할 수 있다.

○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에게 WTO 협정의 규정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하라운드 준비과정과 협상초기에 다수 제시되었다. UR협정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유예기간이 일반적으로 너무 짧고, 국가의 발전수준에 따라 상당히 더 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세계은행의 Bernard Hoekman은 WTO 협정의 의무를 주요 의무와 부수 의무로 분리하고, 모든 국가들은 주요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발도상국은 자국 판단 하에 부수 의무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UR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113)</sup>, 선진국들도 무역원활화 협상 중 무역원활화 규정은 국가의 수준과 규정의 어려움에 따라 다양한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개정교토협약에서도 일반부록의 규정은

113) Hoekman (2004a)와 (2004b). Stiglitz and Charlton (2005) p.104에서 재인용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지만, 특별부록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 따라서 2항에서 개발도상국들과 최빈개발도상국들에게 협정의 내용을 서로 다른 유예기간을 가진 A, B, C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부 내용은 지원이 있어야만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시킨 것은 여타 WTO 협정에서 볼 수 없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협정의 각 규정을 유형 ABC로 각각 분류한 후 이를 정부조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유형A항으로 규정되는 조치들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구체적 일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들은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유형B와 C로 분류된 조항들과 발효시기를 무역원활화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형C의 경우 필요한 지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들에게 B유형과 C유형 조치들의 발효시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집행하기 전 추가적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발도상국을 이 무역원활화위원회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이 개발도상국의 경우 18개월 이내, 최빈개발도상국의 경우 3년 이내라면 연장은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이 이상의 연장기간이 필요하거나, C유형 조치에 대해서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전문가 그룹이 이를 검토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발도상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정하면 연장기간을 인정하거나 지원부족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하여 권고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유형C 조치를 유형B 조치로 이동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제출하면 유형B 조치를 유형C 조치로 이동할 수 있다.

○ 무역원활화협정의 협상 초기에서는 협정이 분쟁해결절차(DSM)의 적용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선진국은 DSM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부담을 염려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반대하고, 선진국의 지원약속도 DSM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물론 선진국들은 무역원활화 지원이 DSM에 포함되기는 반대하였다. 협정 제1절에서는 자체에서 DSM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제2절 제20조에서는 DSM 적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약간 특이한 점은 여타 WTO협정에서는 그 협정이 DSM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포함시키지만,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DSM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항을 최종규정에 간단

하게 포함시키고, 협정의 본문 부분에서는 DSM 적용에 대한 예외사항이나 유예사항 및 DSM 사용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는 것이다.

○ 제20조는 UR의 농산품협정과 같이 무역원활화협정에서도 회원국간 DSM의 사용을 자제하는 평화조항(peace clause)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일정기간동안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 DSM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농산품은 일부 시장개방분야와 국내보조금 문제에만 평화조항을 제한한 반면, 제20조에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의 거의 모든 내용을 평화조항의 적용대상으로 두고 있다. 단, 농산품협정의 평화조약 기간은 9년인 반면, 무역원활화협정의 평화조약기간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A유형 조치는 2년이고, 최빈개발도상국의 경우 A유형 조치는 6년, B와 C유형 조치는 8년이다.

○ 제2절의 마지막 부분인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UR협정들과 비교할 때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요구사항도 다소 구체적이지만, 선진국 회원국들에게 부여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다른 UR협정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제21조에서는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러한 지원은 각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UR협정은 이러한 원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리고 협정운영 회의 등에서 수여국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국제기구나 지역(개발)기구의 중요성과 그들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도 역시 여타 UR협정에서 구체적 또는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에서 다소 특이한 점이 있다면 무역원활화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지원과 관련된 최소한 1년에 1번씩 검토회의를 해야한다는 의무이며, 이러한 검토를 위해 각 회원국들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 및 정보창구를 규정한다는 것이다.(제22조). 따라서 제22조의 내용은 다른 UR협정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지원에 대한 혁신적인 내용은 선진국들의 지원이 있어야만 집행의 의무가 있는 유형C 개념의 도입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공적개발원조제도(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KOICA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제2절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중에서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다소 애매하다. 경제통계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사가 짧고, 특히 농업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에 대해서 다소 불확실한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자신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원활화협정만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있는 전자통관 제도 및 전자정보 공표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Indicator이나 WCO 반출시간 리포트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통관절차 시간 및 유형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요구하는 거의 모든 조건들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므로 다른 WTO 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이행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 또 한가지 우리나라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경제지원을 받았던 국가에서 지원을 주는 국가로 바뀌었다고 국제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국제개발지원을 총괄하고 투명성을 감독하는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도 가입하였다. 따라서 무역원활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지원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지원을 주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앞서서 지원을 주는 국가가 될 것을 모든 회원국들은 바라고 있다.

○ 일단 우리나라의 해외직접지원(ODA)의 실적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의 홍보수준이나 외국이 바라는 정도보다는 실적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와 <표 6>을 보면 비록 증가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ODA는 GNI의 0.14%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OECD DAC의 권고인 0.7%에 크게 미달한다. 또한, 이 비중은 여타 OECD DAC 수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속해있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1인당 GDP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부터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의 수준과 유사하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비중을 유지하였다).

<표 5>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현황 (순지출 기준, 미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ODA	802.3	816.0	1173.8	1324.6	1597.5
양자간 원조비중(%)	539.2 (67.2)	581.1 (66.1)	900.6 (76.7)	989.6 (74.7)	1183.2 (74.1)
무상원조 비중(%)	368.7 (68.4)	367.0 (68.1)	573.9 (63.7)	575.0 (58.1)	714.9 (60.4)
유상원조 비중(%)	170.6 (31.6)	214.1 (39.7)	326.7 (36.3)	414.6 (41.9)	468.3 (39.6)
다자간원조 비중(%)	263.1 (32.8)	234.9 (28.8)	273.2 (23.3)	335.0 (25.3)	414.3 (25.9)
ODA/GNI(%)	0.09	0.1	0.12	0.12	0.14

<자료> 국무조정실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1.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1.jsp))

<표 6> 일부 OECD DAC 국가들의 ODA/GNI 비중

Country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호주	0.32	0.32	0.29	0.32	0.34	0.36
캐나다	0.29	0.33	0.3	0.34	0.32	0.32
덴마크	0.81	0.82	0.88	0.91	0.85	0.84
프랑스	0.38	0.39	0.47	0.5	0.46	0.46
독일	0.37	0.38	0.35	0.39	0.39	0.38
그리스	0.16	0.21	0.19	0.17	0.15	0.13
아일랜드	0.55	0.59	0.54	0.52	0.51	0.48
이탈리아	0.19	0.22	0.16	0.15	0.2	0.13
일본	0.17	0.19	0.18	0.2	0.18	0.17
한국	0.07	0.09	0.1	0.12	0.12	0.14
네덜란드	0.81	0.8	0.82	0.81	0.75	0.71
포르투갈	0.22	0.27	0.23	0.29	0.31	0.27
스페인	0.37	0.45	0.46	0.43	0.29	0.15
스웨덴	0.93	0.98	1.12	0.97	1.02	0.99
스위스	0.37	0.42	0.44	0.39	0.45	0.45
영국	0.36	0.43	0.51	0.57	0.56	0.56
미국	0.16	0.18	0.21	0.21	0.2	0.19

<자료> UNStats <http://unstats.un.org/unsd/mdg/SeriesDetail.aspx?srid=568>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우리나라의 ODA수준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치에 비해 수준 미달이라고 볼 수 있다. 분야별 ODA를

<표 7>로 보면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를 포함하는 통상정책 및 규제분야에 2014년 8백만 달러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총 ODA의 0.7% 수준이다. 이것은 OECD DAC 회원국들의 비중보다는 훨씬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ODA에서 절대적인 금액은 적지만, 금액 중 많은 부분을 통상정책 분야에 할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금액이 8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늘릴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표 7> 우리나라 분야별 ODA 현황 (순지출기준, 미 백만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539.2	581.1	900.6	989.6	1,183.20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238.5	278.5	395.9	416.3	558.7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124.1	152.7	250.2	308.2	308.8
교통 및 물류	75.6	77.4	117.7	229.8	210.3
통신	46.1	59.6	63.4	40	47.4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0.9	0.5	2.4	1.9	1.6
생산 (산업) 부문	80.4	61.2	64.6	77.2	96.1
통상정책 및 규제	17.7	8.5	2	7.4	8
환경보호	7.2	8.7	14.4	16.9	42.2
다부문	17.4	29.2	104.6	56	73.4
물자지원/	1.5	0.1	-	1.9	2
일반프로그램원조	-0.3	0	-	-0.2	-0.2
부채 관련 지원	10.3	0	2.7	-	-
인도적 지원	24	17	17.9	24.1	16.6
행정비용	31.5	27.8	38.4	53.6	59.4
기타	4.2	5.9	12.3	35.3	26

<자료> 국무조정실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2.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2.jsp)

○ 결국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와 관련 ODA 금액을 늘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ODA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이익증가보다는 개발도상국 지원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목표를 ODA의 주요목표로 할 수는 없지만,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윈-윈(win-win)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sup>114)</sup>. 먼저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 ODA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목적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가적 자금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을 받도록 설득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

114) 아래 일부 내용은 이창수 외 (2004) pp.111-119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 WTO 차원에서 무역원활화 관련 ODA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역원활화협정의 무난한 도입 및 운영이 될 것이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 차원에서 목표는 자국 통관절차의 현대화 및 통관절차 소요 시간 감소, 그리고 안전성의 증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목표는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상대국인 경우 통관절차 소요시간 감소, 그리고 우리나라 통관절차 기준의 국제화,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 등을 들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목표 중 다소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이다. 국제기준 및 OECD DAC 기준에 따르면 ODA는 수여국의 경제개발 및 후생증가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계 국가들은 ODA를 통해서 기부국의 수출을 늘리려는 행위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OECD DAC 기준으로 보면 자국상품을 사겠다는 조건으로 주는 지원을 묶인 지원(tied-aid)라고 하는데, 이러한 묶인 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ODA는 수익적 목적의 지원이 아니므로 기부적인 요소가 커야 한다. 즉, 무상으로 지원하던지 아주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고, 지원으로 인한 기부국의 이득은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노골적으로 ODA를 우리나라 시스템 수출지원에 사용한다면 이는 선진국들의 비난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비난도 받을 소지가 있다.

○ 따라서 ODA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을 추진하는 경우, 이는 개발도상국과 충분한 협약 후, 서로가 win-win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상호이득을 여타 국가들에게 인식시키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여개발도상국과 충분한 협의 후 무상으로 우리나라 전자시스템과 관련된 하드웨어(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기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최빈개발도상국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정부 차원에서는 무상으로 장비와 프로그램을 기부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비와 프로그램의 사용도를 높여 제3국에 대한 장비와 프로그램 수출을 도울 수 있고<sup>115)</sup>, 장비를 받은 국가가 향후 시스템의 확장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업체들이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장비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기부하려면 관련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115) 정부 조달에서는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해외로부터 장비를 수입 구매할 때 여타 국가들에서의 사용도를 검토하고, 일정한 숫자 이상의 국가에서 그 장비를 사용해야만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기부하지 않고 유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유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한국산 장비나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금이 여타 국가산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상지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우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시스템이 낙찰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가 지원할 때 너무 자국 수출의 증대에만 급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다자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ODA의 많은 활동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 공무원의 교육과 워크숍이고 무역원활화에도 가장 많은 활동은 교육과 워크숍이다. 이러한 교육이 무역원활화와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특히 전자통관 시스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표준이 국제화되거나 우리나라장비 및 프로그램 수출에 기여하는 바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 워크숍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인재들로 하여금 친한(親韓) 인사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ODA와 관련해 늘 유념해야 할 것은 ODA는 수여 개발도상국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ODA를 사용한다면, 국제적 의심 및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들마저도 우리나라의 속뜻을 의심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던지,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우리나라를 경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ODA 기부국은 자국 이해관계의 추진을 위해서 ODA를 사용하고 있다. 단, 노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ODA를 통하여 무역원활화를 추진할 때 양자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다자 프로그램의 참여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이 무엇을 필요한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ODA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수출 및 이에 따른 실익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ODA를 일종의 홍보 및 광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장비 및 프로그램의 무상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 제3절(SECTION III)

### 제23조 : 기관협정

**SECTION III**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3: INSTITUTIONAL ARRANGEMENTS**

**1.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1.1 A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is hereby established.

1.2 The Committee shall be open for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and shall elect its own Chairperson. The Committee shall meet as needed and envisaged by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ut no less than once a year, for the purpose of affording Members the opportunity to consult on any matte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furtherance of its objectives. The Committee shall carry out such responsibilities as assigned to it under this Agreement or by the Members.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1.3 The Committee may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may be required. All such bodies shall report to the Committee.

1.4 The Committee shall develop procedures for the sharing by Members of relevant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as appropriate.

1.5 The Committee shall maintain close contact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trade facilitation, such as the WCO, with the objective of securing the best available advice for the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is Agreement and in order to ensure that unnecessary duplication of effort is avoided. To this end, the Committee may invite representatives of such organizations or their subsidiary bodies to:

- (a)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and

(b) discuss specific matter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1.6 The Committee shall review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four years from its entry into force, and periodically thereafter.

1.7 Members are encouraged to raise before the Committee questions relating to issues on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1.8 The Committee shall encourage and facilitate ad hoc discussions among Members on specific issues under this Agreement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promptly.

## **2. National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Each Member shall establish and/or maintain a national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or designate an existing mechanism to facilitate both domestic 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 번역**

## **제23조. 기관협정**

1.1 무역원활화위원회가 이에 설립된다.

1.2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참석을 위해 개방되며, 고유한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의한 필요 및 예상에 따라, 연 1회 이상, 회원국에게 이 협정의 운영 또는 그 목표 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최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또는 회원국에 의해 부여된 그러한 책임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고유한 절차 규칙을 설립한다.

1.3 위원회는 필요시 보조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보조기구는 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4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회원국들이 관련 정보 및 모범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1.5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 및 집행에 있어 최고의 이용 가능한 조언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의 회피를 보장할 목적으로, 세계관세기구와 같은, 무역원활화 분야의 그 밖의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그러한 기구 또는 그 보조기구의 대표자들을 다음을 위해 초청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회의 참석; 그리고

나. 이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관한 논의

1.6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4년째에, 그리고 그 후 주기적으로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한다.

1.7 회원국들은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과 관련된 사안을 위원회에 제기하도록 권장된다.

1.8 위원회는 신속하게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따른 특정한 사안에 관한 회원국간의 비상설 논의를 권장하고 촉진한다.

## 2.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

각 회원국은 무역원활화에 관한 국별 위원회를 설립 및/또는 유지하고 또는 이 협정 규정의 국내적 조정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존의 메커니즘을 지정한다.

### □ 취지

○ 이 조항은 이 협정의 운영을 위해 WTO에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립하고, 회원국별로는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립함을 명시하고, 아울러 이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 내용요약

- WTO에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고유한 위원장을 선출하고, 고유한 절차규칙을 정하며, 연 1회 이상 개최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 및 집행과 관련한 조언과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의 회피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와 같은 무역원활화 분야의 그 밖의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한다.
- 위원회는 협정 발효로부터 4년째에, 그리고 그 후 주기적으로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한다. 회원국들은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과 관련된 사안을 위원회에 제기하도록 권장되며,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특정한 사안에 관한 회원국간의 비상설 논의를 권장하고 촉진한다.
- 각 회원국은 무역원활화에 관한 국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협정 규정의 국내적 조정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존의 메커니즘을 지정한다.

## □ 해설

- WTO의 모든 협정은 협정의 원활한 운영과 일관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정의 운영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를 다루기 위해서 그 협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위원회를 설립한다. 무역원활화협정 제23조제1항의 내용은 여타 WTO 협정들에서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여기서 약간 특이한 점을 본다면, 제1.5항에서는 WCO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1.8항에는 협정의 발효 4년 후, 그리고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이 협정의 운영과 집행을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점이다.
- WCO의 참여는 통관절차에 있어서 WCO의 전문성 및 경험을 인정하는 것으로 관세평가협정 등에도 WCO의 참여가 있었지만 무역원활화의 주된 내용이 세관업무와 관련된다는 점이 고려되어 WCO의 참여를 강조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4년 후 검토는 무역원활화협정이 여타 WTO협정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행정적인 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정 운영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다. 여타 WTO협정 중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만큼 정부에 구체적이고 규제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협정은 복수간협정인 정부조달협정밖에 없는데, 정부조달협정도 5년 후 검토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었다<sup>116)</sup>.

○ 한편, 무역원활화는 각 국가 세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국가별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립하여 통관절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통관절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없음(무역원활화위원회의 신설 필요)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또 앞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경험이 있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선도국 입장에 있기 때문에 WTO의 다른 어느 위원회나 어느 영역에서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조항으로 인해 우리 정부에 추가 발생하는 부담은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 설립규정과 관련한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치다. 이 위원회가 하여야 할 핵심 업무는 통관절차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이 있으므로, 통관을 책임지는 부처에 동 위원회가 설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24조 : 최종규정

ARTICLE 24: FINAL PROVISIONS
------------------------------

116) 정부조달협정(1994년) XXIV조 3.7(b)항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term "Member" is deemed to includ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Member.
2. All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e binding on all Members.
3. Members shall implement this Agreement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that choose to use the provisions of Section II shall implement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Section II.
4. A Member which accepts this Agreement after its entry into force shall implement its Category B and C commitments counting the relevant periods from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5. Members of a customs union or a regional economic arrangement may adopt regional approaches to assis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regional bodies.
6. Notwithstanding the general interpretative note to Annex 1A to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diminishing the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GATT 1994. In addition,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diminish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7. All exceptions and exemptions<sup>117)</sup> under the GATT 1994 shall apply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aivers applicable to the GATT 1994 or any part thereof, granted according to Article IX:3 and Article IX:4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any amendments thereto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8. The provisions of Articles XXII and XXIII of GATT 1994 as elaborated and applied by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shall apply to consultations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9. Reservations may not be entered in respect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Members.

10. The Category A commitments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annexed to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5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11. The Category B and C commitments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taken note of by the Committee and annexed to this Agreement pursuant to paragraph 5 of Article 16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 □ 번역

### 최종규정

1.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다.
3. 회원국은 이 협정을 그 발효일로부터 이행한다. 제2절의 규정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이 협정을 제2절에 따라 이행한다.
4. 이 협정을 그 발효 후에 수락하는 회원국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관련 기간을 기산하여 B유형 및 C 유형 의무를 이행한다.

---

117) This includes Articles V:7 and X:1 of the GATT 1994 and the Ad note to Article VIII of the GATT 1994.

5. 관세동맹 또는 지역 경제 협정의 회원국은 이 협정상 의무의 이행을 돕기 위해 지역 기구의 설립 및 사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지역적 접근을 채택할 수 있다.
6. 부속서 1A에 대한 일반적인 주해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어떤 것도 GATT 1994상의 회원국의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추가적으로, 이 협정의 어떤 것도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GATT 1994상의 모든 예외 및 면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해 적용된다.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부여되는, GATT 1994 또는 그 일부에 적용가능한 의무면제 및 이 협정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마라케쉬 협정에 대한 개정은, 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된다.
8.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해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GATT 1994 제 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달리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상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대해 적용된다.
9. 그 밖의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이 협정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는 삽입될 수 없다.
10. 제2절 제3.1항 및 제3.2항에 따라 이 협정에 부속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A유형 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한다.
11. 제2절 제4.5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기록되고 이 협정에 부속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의 B유형 및 C유형 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1 : 제10.1항에 따른 통보 형식

공여국 회원 :

통보 대상 기간 :

기술 및 재정 원조 및 능력 배양자원의 설명	약속된/지출된 상대 및 총량	수혜 국가/지역 (필요한 경우)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의 시행기관	원조 지출절차

## □ 취지

○ 이 조항은 무역원활화협정의 발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정의 발효와 이행에 있어서 절차적 사항 및 법적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아울러 무역원활화협정은 분쟁해결절차(DSM)의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 □ 내용요약

○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고, 회원국은 이 협정을 그 발효일로부터 이행하여야 한다.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발도상회원국은 제2절에 따라 이행한다.

○ 이 협정의 어떤 것도 GATT 1994상의 회원국의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아니한다. GATT 1994상의 모든 예외 및 면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해 적용된다.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해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GATT 1994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달리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상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대해 적용된다.

## □ 해설

○ UR협정 및 WTO와 관련된 각종 협정에서 최종규정은 협정의 발효와 운영

을 위하여 비록 내용은 없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 발효를 위한 행정적 절차,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들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조항은 WTO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 부여된 의무 등이 본 협정에서도 적용된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구체화시키는 내용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항은 특별히 문제를 삼거나 해설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사항들은 다소 이례적이다. 제5항에 의하면 관세동맹이나 지역별 경제협력체에 소속한 회원국들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동맹 또는 협력체별 차원에서 이 협정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 협정의 협상 중 일부 회원국들은 관세동맹이나 지역별 경제협력체 차원에서 공통된 투명성 및 정보의 공표 의무, 질의처와 싱글윈도우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최종 협정문에서는 관세동맹과 경제협력체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5항은 이러한 제안을 한 회원국들의 제안을 고려해 주는 조항이라고 하겠다.

○ 제8항은 무역원활화협정이 DSM의 적용을 받는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조항이다. 다른 UR협정을 보면, 그 협정이 DSM의 적용을 받는다는 부분은 최종 규정보다는 협정의 본문 내에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DSM 적용에 대한 예외사항이나 특기사항을 기술하는데,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예외사항이나 특기사항을 먼저 개발도상국 특혜사항과 같이 기술하고, 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DSM 적용 여부에 대한 조항은 최종 규정의 하나로 삽입시켰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DSM 적용 여부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 관련되는 우리 제도

○ 없음

## □ 기대효과(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 협상을 주도해 온 국가이니 만큼 충실히 무역원활화협정을 발효시키고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참고자료>

- 김상겸, 박인원 (2001)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1-05
- 김상겸, 박성훈, 박순찬, 박인원 (2006)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과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6-05
- 이명현, 정재호, 김재식(2002) 『WTO 무역원활화 규범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이창수, 임혜준, 박지현, 양준석 (2004)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4-07
- 양준석 (2004) 「WTO의 통관절차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적 함의」 (2004) 『무역학회지』 제29권 3호 2004. 6. 한국무역학회 pp. 59~80
- (2005), 「WTO의 무역원활화 GATT X조 투명성 논의와 정책적 함의」 『무역학회지』 제30권 4호 2005. 8. 한국무역학회 pp. 53~75
- (2006b)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 (2006) 『산업경영연구』 14권, 가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6년 12월,
- (2006c), 「WTO 협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제투명성의 개념과 조치」 (2006) 『무역학회지』 제31권 제4호 2006년 8월
- 임혜준(2011), 「DDA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안의 주요 의제와 쟁점」 (2011) 『무역학회지』 제36권 제1호 2011년 2월
- 정재완(2005), 『국경절차에 대한 가치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관세학회지』 제6권 제3호 2005년 8월
- APEC-OECD (2005) “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 Australia, Brazil and New Zealand (2012) “Trade Facilitation Measures for Perishable Goods”, WTO 문서 TN/TF/W/184, December 5. 2012.
- Bingham, Tom (2011) *The Rule of Law*, London, Penguin Books
- EC (European Communities) (1989) “Cost 306 Final Report”
- Economist, The (2013), “Doha Delivers” Dec. 9, 2013  
<http://www.economist.com/blogs/freeexchange/2013/12/world>

-trade-organisation

- European Communities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2006) “Pre-shipment Inspections” WTO document TN/TF/W/108 June 6, 2006.
- Hoekman, Bernard (2004a) “Making the WTO More Supportive of Development” mimeo, World Bank
- Hoekman, Bernard (2004b) *Operationalizing the Concept of Policy Space in the WTO*, World Bank Policy Brief 4, Washington DC, World Bank
- India(2006b) “Proposals on GATT Article X” WTO document TN/TF/W/78 Feb. 13, 2006 WTO 문서 TN/TF/W/78
- India(2006c) “Proposal on GATT Article VIII” WTO document TN/TF/W/121, July 4, 2006
- India(2006d) “Proposal on GATT Article X” WTO document TN/TF/W/122, July 4, 2006
- Mongolia, Norway, South Africa and Switzerland (2007) “The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WTO document, TN/TF/W/131/Rev.1 Dec. 14, 2007
- Neufield, Nora (2014) “The Long and Winding Road: How WTO Members Finally Reached 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Staff Working Paper ERSD-2104-08, April 7, 2014
- OECD(2001) “Business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TD/TC/WP(2001)21, Paris, OECD.p June 6, 2001
- OECD (2002) “Transparency and Simplification Approaches to Border Procedures: Refle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GATT Article X Related Proposals in Selected Countries,” TD/TC/WP(2002) 36/FINAL, OECD. Paris
- OECD (2014)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 Korea” <http://www.oecd.org/korea/korea-oecd-trade-facilitation-indicators-april-2014.pdf>
- Republic of Korea (2005a) “Communications from Korea: Cla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Article VIII of the GATT: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WTO document TN/TF/W/18 March 15. 2005

- (2005b) “Communications from Korea: Post-Clearance Audit in Korea” WTO document TN/TF/W/55 July 25, 2005
- Sohn, Chan-Hyun and Junsok Yang (2003) “Trade Facilitation Measures in the WTO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Chapter 8 i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Perspectives from the ESCAP Region* Studies in Trade and Investment 51, United Nations, New York
- South Centre (2013) “How Far Does the Trade Facilitation Negotiation Text (Rev.16) Go Beyond the WCO Revised Kyoto Convention (RKC)?”, Analytical Note SC/TDP/AN/TF/2 June.
- Staples, Brian Rankin (2002), “Trade Facilitation: Improving the Invisible Infrastructure,” in Bernard Hoekman, Aaditya Mattoo, and Philip English eds. (2002) *Development, Trade and the WTO: A Handbook*,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Stiglitz, Joseph E. and Andrew Charlton (2005) *Fair Trade for A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UN ESCAP (2002) *Trade Facilitation and the WTO, ITD Trade Facilitation Seminar Series*. 2002년 10월 21-22일 방콕 태국에서 개최된 Workshop on Trade Facilitation and the WTO 세미나에서 배포된 자료집,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Pacific.
- US NTCID (1971) (US National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Documentation) “Paperwork or Profit\$? in International Trade (US NCITD)
- Wilson, John S., Catherine Mann, Tsunehiro Otsuki (2004) “Assessing the Potential Benefit of Trade Facilitation: A Global Perspectiv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3443, World Bank, Feb, 10, 2004.
- WCO (2014)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Role of Information Management in Implementing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Permanent Technical Committee Document No. PM0358E1a April 30, 2014
- WTO(2002a) “Article VIII of the GATT 1994 Scope and Application,” G/C/W/391, WTO, 9 July 2002.

- WTO(2002b) "Article V of the GATT 1994 Scope and Application," G/C/W/408, WTO, 10 September 2002.
- WTO(2005) "Article X of GATT 1994 – Scope and Application," TN/TF/W/4, 2005.
- WTO(2006) "WTO Negotiations on Trade Facilitation: Compilation of Members' Proposals" WTO document TN/TF/W/43/Rev.10 August 11, 2006
- WTO(2009) "WTO Negotiations on Trade Facilitation: Compilation of Members' Proposals" WTO document TN/TF/W/43/Rev.19 June 30, 2009
-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12) "Guidelines for Post-Clearance Audit (PCA) Volume 1" World Customs Organization, June.
- Yang, Junsok (2009a) "Case Studies on Regulation Reform in APEC Countries: Study on Korean Customs and Border-Related Trade Reforms" World Bank and APEC, abridged to "Korea Customs and Border-Related Trade Reforms" (2009) a case study in Deepak Bhattasali, Mary C. Hallward-Driemeier, Yue Li, et al. in *The Ease of Doing Business in APEC: The Impact of Regulatory Reforms*, APEC Economic Committee and the World Bank pp.81-97
- (2009b)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djustments to Information Technology in Trade Facilitation: The South Korean Experience (2009), Asian Pacific Research and Training Network on Trade, Working Paper No. 61., Jan. 2009
- Yasui, Tadashi (2010) "Benefits of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World Customs Organization